연구보고 213 / 1990. 12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면 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이 정 환(부연구위원)
윤 원 근(책임연구원)
이 병 기(연 구 원)
김 정 연(연 구 원)
이 인 희(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간 정주공간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밀어닥쳐 농어촌의 장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농림수산업의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일도 시급하지만 농촌을 삶의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농어촌의 정주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구유출의 가속화로 농어촌을 지켜나갈 인적 기반마저 붕괴되고있는 현실에서 산업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농어민도 다같은 국민으로서 도시에 못지않게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에서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403개 면을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53개 면에 대한 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농림수산부는 나머지 794개 면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 정주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규모와 그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면 단위 정주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농촌공간의 실상을 진단해 보고 그 재편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면 단위 정주권 개발의 정책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을 지니면서 평야지대에 속한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농어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거·생산·생활공간 3측면으로 나누어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보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앞으로 정주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 분야의 학문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1990. 12.

院長　許 信 行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면 단위 농어촌의 정주체계와 개발권역 설정
1. 면 단위 농어촌의 정주체계 ····· 4
2. 사례지역(周德面)의 지역구조 ····· 10
3. 면단위 정주권의 개발권역 설정 ····· 20

제 3 장 주거공간 실태와 개선방향
1. 주거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 29
2.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64

제 4 장 생산공간 실태와 정비방안
1. 생산공간과 생산활동 실태 ····· 73
2. 생산공간 정비 과제 ····· 85
3. 생산공간 정비 방안 ····· 93

제 5 장 생활환경시설 정비
1. 개발 실태와 문제점 ····· 102
2. 개발 대상시설의 범위와 정비방향 ····· 120
3. 생활환경 부문별 시설 정비방안 ····· 129

제 6 장 정주권 개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1. 개발정책의 평가 ····· 158
2. 정책 개선방향 ····· 164

제 7 장 요약 및 결론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중원군 중심지별 기능지수 ····· 7
표 2-2 중원군의 정주체계 ····· 8
표 2-3 주덕면의 취락계층 ····· 10
표 2-4 중원군과 주덕면의 행정구역 구성 ····· 11
표 2-5 가구 규모별 마을 분포 ····· 14
표 2-6 인구 규모별 마을 분포 ····· 14
표 2-7 주덕면의 인구 변화 ····· 17
표 2-8 주덕면의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 18
표 2-9 주덕면의 행정리별 연령대 인구 분포 ····· 19
표 2-10자연부락의 규모별 분포 ····· 21
표 2-11 주덕면의 법정리별 현황 ····· 25

제 3 장

표 3-1 주덕면 주택 건축연도 ····· 32
표 3-2 주택 건축 연도, 1980 ····· 32
표 3-3 주덕면의 소득·직업·학력·연령별 주택 건축연도 ····· 34
표 3-4 주덕면의 가구주 연령·학력·직업·소득별 주택 점유구조·· 36
표 3-5 주덕면의 가구주 연령·학력·직업·소득별 주택 형태 ····· 37
표 3-6 주덕면 주택의 지붕 형태 ····· 38
표 3-7 주덕면 주택의 기둥·벽 재료 ····· 38
표 3-8 주덕면 가구주의 직업별 부속 건물 ····· 39
표 3-9 주덕면 주택의 대지 규모 ····· 39
표 3-10 주덕면 주택의 건축 면적 ····· 40
표 3-11 주덕면 주택의 부엌시설 현황 ····· 41
표 3-12 주덕면 주택의 화장실 형태 ····· 41
표 3-13 주덕면 주택의 목욕탕 및 온수 공급시설 현황 ····· 41
표 3-14 주택 편익시설 ····· 42
표 3-15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부엌시설 현황·· 42

표 3－16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화장실 형태 …… 43
표 3－17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온수 공급 시설 …… 45
표 3－18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목욕탕 시설 현황 …… 46
표 3－19 주덕면 주택의 난방 방법 …… 47
표 3－20 주덕면 주택의 취사연료 …… 47
표 3－21 정주체계별 주택 건축 연수 …… 48
표 3－22 정주체계별 주택 점유 형태 …… 49
표 3－23 정주체계별 주택 형태 …… 50
표 3－24 정주체계별 지붕 형태 …… 50
표 3－25 정주체계별 기둥·벽 재료 …… 51
표 3－26 정주체계별 부속건물 (농기구, 창고, 축사) …… 51
표 3－27 정주체계별 대지규모 …… 52
표 3－28 정주체계별 주택 건축 면적 …… 52
표 3－29 정주체계별 주택 편익시설 …… 54
표 3－30 기초 편익시설 수준별 해당 마을 …… 54
표 3－31 행정리별 기초 편익시설 수준과의 상관분석 ……55
표 3－32 정주체계별 난방방법 …… 57
표 3－33 정주체계별 취사연료 …… 57
표 3－34 마을별 빈방 비율 및 공가수 …… 59
표 3－35 현재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 …… 60
표 3－36 신축을 한다면 그 이유는 …… 61
표 3－37 고치고 싶은 곳이 없다면 그 이유는 …… 61
표 3－38 주변마을과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 62
표 3－39 농촌주택 개선 추진 실적 …… 66
표 3－40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제 감면 기준 …… 68
표 3－41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 취락 구조 개선의 입지별
특성, 1981～88 …… 70

제 4 장

표 4-1 주덕면의 토지 이용 현황 ····· 74
표 4-2 주덕면 경지정리 현황 ····· 75
표 4-3 주덕면 농업생산(경종)활동 변화 추이 ····· 77
표 4-4 사례지역 농업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 ····· 79
표 4-5 연간 노동 투입시간 분석 ····· 80
표 4-6 사례지역의 품목별·마을별 연간 노동시간 분석표 ····· 81
표 4-7 사례지역의 월별·품목별 노동 투하시간 분석표 ····· 83
표 4-8 미작과 전작간의 단위당 노동투하시간 비교 : 창전리 ··· 84
표 4-9 경작지 분포의 공간범위 ····· 87
표 4-10 구획의 장단변 비에 따른 포장·작업 효율 ····· 88
표 4-11 필지당 규모 ····· 89
표 4-12 농가당 평균 경작 필지수 ····· 91
표 4-13 농업기계화의 효과 분석 ····· 95
표 4-14 차등적 경지 정리 기준 : 예시 ····· 96
표 4-15 사례지역의 경지조건 현황 ····· 97
표 4-16 창전리의 차등적 경지정리 수요 ····· 98
표 4-17 사례지역의 타 영농권 출작 현황 ····· 99

제 5 장

표 5-1 도·농간의 주요 생활환경 격차비교, 1988 ····· 103
표 5-2 부문별로 가장 발전된 군과 낙후된 군 ····· 105
표 5-3 도로계층별 포장수준, 1988 ····· 106
표 5-4 비법정도로의 개발실태 : 주덕면 사례, 1990 ····· 107
표 5-5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 ····· 108
표 5-6 도로, 교통조건에 대한 불편도 인식
: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때 ·····108
표 5-7 정기 노선 버스 이용상의 불편도 인식 ····· 108
표 5-8 경자동차 구입 의사 ····· 109
표 5-9 경자동차 구입시기 ····· 109
표 5-10 배후 농촌의 간이 급수시설 현황 : 주택면사례 ····· 110

표 5-11 급수시설 유형별 주민 의식 ····· 111
표 5-12 농가의 생활하수 배출 형태 : 주덕면 사례 ····· 113
표 5-13 배후마을의 하수관지 정비실태 : 주덕면 사례 ····· 113
표 5-14 농촌 쓰레기의 구성 ····· 115
표 5-15 비수거 지역의 쓰레기 처리 방법 ····· 116
표 5-16 농촌지역의 정주단위간 중심성 격차 ····· 117
표 5-17 마을단위 공동 이용 시설의 배치(주덕면 사례) ····· 119
표 5-18 마을회관 이용 빈도(주덕면 사례) ····· 120
표 5-19 상품 및 서비스시설 유형별 이용 형태 ····· 121
표 5-20 형태에 의한 농촌시설의 분류 ····· 123
표 5-21 형태에 의한 서비스(시설)의 분류 ····· 123
표 5-22 농촌교통의 특성과 도로와의 관계 ····· 131
표 5-23 마을의 형태와 도로 정비 방법 ····· 136
표 5-24 각 기법별 가중치 부여 결과 비교 ····· 139
표 5-25 도로개발 우선 순위 평가표(Ⅰ) ····· 139
표 5-26 개발 대상 노선의 순위 결정표(Ⅱ) ····· 140
표 5-27 배후 농촌마을의 특성에 따른 간이 급수 시설 개발 방향 ····· 141
표 5-28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례 분야별 프로그램 ····· 155
표 5-29 중심지 계층별 시설 배치 ····· 157

제 6 장

표 6-1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분포 현황 ····· 160
표 6-2 16개 시범사업 사업비 내역 ····· 164
표 6-3 부처별 정주권 관련사업 지원기준 ····· 165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중원군의 정기시장 및 일상용품 구매 ····· 7
그림 2-2 주덕면의 정주체계 ····· 9
그림 2-3 주덕면의 지형지세 ····· 11
그림 2-4 주덕면의 토지이용 : 용도지역 ····· 13
그림 2-5 주덕면의 마을규모별 분포 ····· 15
그림 2-6 마을 유형 ····· 16
그림 2-7 주덕면의 인구구성 변화 ····· 20
그림 2-8 주덕면의 법정리별 인구전망 ····· 26
그림 2-9 주덕면 개발권역 ····· 27

제 3 장

그림 3-1 주덕면의 가구주 현황 ····· 31
그림 3-2 주덕면 행정리별 기초 편익시설 수준 ····· 56
그림 3-3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추이 ····· 65

제 4 장

그림 4-1 주덕면의 생산공간 현황 ····· 74
그림 4-2 주덕면의 농업여건 변화 추이 ····· 76
그림 4-3 사례지역의 월별 노동력 수요 ····· 82
그림 4-4 사례지역의 경지조건 ····· 90
그림 4-5 경작지 분포도 ····· 92
그림 4-6 창전4리와 1리간의 교환 대상 경지 분포도(예시) ····· 100

제 5 장

그림 5-1 지역별 개발격차 비교 ····· 104
그림 5-2 농촌 하위도로 개발실태 : 주덕면사례, 1990 ····· 106
그림 5-3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추세, 1981~88 ····· 114

그림 5-4 농촌도로의 계층체계 ····· 132
그림 5-5 농촌간선도로망의 구성 ····· 133
그림 5-6 마을 도로의 정비 방법 ····· 135
그림 5-7 농촌 교통계획 과정 ····· 137
그림 5-8 광역 간이 급수시설 모형 ····· 142
그림 5-9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하수도 시설 투자 절차 ··· 143
그림 5-10 배후 농촌의 하수처리 개념도 ····· 144
그림 5-11 자갈 및 토양정화법과 모관침윤 트랜치법의 구조 ··· 145
그림 5-12 농촌 쓰레기 수거체계 모형 ····· 147
그림 5-13 수거서비스 제공 형태 ····· 148
그림 5-14 롤론 박스 교환 방식도 ····· 148
그림 5-15 쓰레기 분리 수거처리 체계도 ····· 149
그림 5-16 농촌지역의 생활편익시설의 악화 ····· 150
그림 5-17 중심지 계층별 기능분담 개념도 ····· 151

제 6 장

그림 6-1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 체계 ····· 161
그림 6-2 정주권 개발 관련사업의 행정조직 체계 ····· 162

빈 면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人間의 定住空間이라는 측면에서 본 農漁村의 問題는 우선 都市에 비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生活環境水準으로 말미암아 定住性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個別住宅의 質的 水準에서 부터 生活基盤의 下部構造와 서비스 施設水準 및 그것에 이르는 接近性에 이르기까지 生活環境全般에 걸쳐 그 質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은 農漁村人口의 大量流出과 그에 따른 中心施設과 機能의 上向偏重現狀을 심화시켜 農漁村의 住民生活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동시에 그간의 社會·經濟的 與件變化에 따라 需要가 감퇴되어 소멸되고 있는 機能과 施設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施設과 機能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現在의 農漁村空間은 전통적 농경사회의 여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歷史的 産物이기 때문에 現代的인 住民生活을 담는 生活空

間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面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自動車普及과 機械化營農 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늘어날 産業社會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限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住民生活과 그것을 담는 定住空間間에는 더 큰 모순과 괴리현상을 심화시키고 住民의 不便度를 더욱 누중시켜 갈 것이다.

또한 최근에 政策化되어 추진되고 있는 農業經營規模擴大와 定住圈開發 등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政策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農漁村을 대상으로 하는 政策環境의 급속한 變化에 비추어 그 對象地域인 農漁村空間에 대한 經驗的 硏究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面單位 農漁村空間에 대한 硏究는 여러 側面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必要性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硏究目的

本 硏究는 앞에서 언급한 必要性에 따라 面單位 農漁村의 定住體系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面單位 農村空間의 새로운 再編方向을 모색하는 準據의 틀을 제시하는 데 重点을 두고 다음과 같은 3가지 硏究目的을 설정하였다.

첫째, 社會經濟的 與件變化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農漁村空間을 居住, 生産, 生活空間의 3側面으로 區分하여 그 構造的 特性을 파악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農漁村의 地域問題를 진단한다.

둘째, 人口構造變化와 自動車普及 및 機械化營農 등 與件變化를 염두에 두고 農地流動化와 農場制整備, 農業振興地域指定 등 새로운 農漁村政策環境變化를 감안하여 農漁村空間의 再編方向을 모색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定住圈 開發事業의 推進施策을 평가하여 改善方案을 찾아내고 이를 정리하여 政策代案으로 제시한다.

3. 研究範圍와 方法

이 報告書에서 행한 研究範圍는 研究過程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된 農村空間研究을 참고하였지만 實際研究의 수행은 面單位農村에 空間的 範圍를 한정시키고 忠淸北道 中源郡 周德面을 事例地域으로 하여 研究를 수행하였다. 本 研究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해 住宅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住居空間과 農耕地分布와 所有構造 및 마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生産空間, 그리고 下部構造와 生活環境施設을 중심으로 한 生活空間의 3側面으로 區分하여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研究方法으로는 먼저 住居空間의 實態를 알아보기 위해 個別 住宅과 家口主에 대한 일반사항을 全家口를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행하였다. 여기서 총2000매 이상의 質問紙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1891매 중 유효하다고 판단된 1865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生産空間의 實態分析은 面事務所에 비치된 農地原簿와 現地踏査를 통해 얻어진 結果를 地圖化하고 地圖化分析을 통해 정리된 內容을 중심으로 다시 現場에서 住民과의 面談을 거쳐 확인하는 節次를 밟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下部構造와 生活環境整備는 面單位 定住圈開發의 事業對象範圍에 중점을 두고 統計와 現地踏査, 그리고 住民과의 面談은 물론 기존의 先行研究資料를 모두 檢討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整備方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現在 시행되고 있는 定住圈開發의 政策評價는 16個 示範事業 推進內容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問題点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統計的 分析과 數理的 方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資料處理의 客觀度를 높이려고 노력한 것은 물론이다.

第 2 章

面單位 農漁村의 定住體系와 開發圈域 設定

1. 面單位 農漁村의 定住體系

가. 農漁村 定住體系와 面單位 下位 定住體系

農漁村의 地域範圍를 住民의 日常生活을 중시한 都·農統合的 立場에서 본 定住生活範圍를 볼 때 대체로 마을 → 중심취락 → 중심도읍 → 중심도시로 이어지는 4段階의 階層體系를 보이고 있다(李正渙 外 1989, 32－46). 여기서 階層이 높아질수록 각 계층간의 거리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中心地 理論의 階層體系에 따른 包攝原理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中心地 階層體系와 背後의 下位聚落들이 포섭되고 있는 樣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平野地域은 Ⅰ계층 중심지인 中心都市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Ⅱ계층 중심지인 中心都邑의 기능이 약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山間地域은 반대로 Ⅰ계층 중심지가 Ⅱ계층 중심지의 기능과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中心都

市로서 가져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島嶼地域은 Ⅰ계층 중심지는 평야지역과 비슷하고 Ⅱ계층 중심지는 산간지역의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어 양면성을 모두 나타내는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Ⅲ계층 중심지로 내려가면 平野地域과 島嶼地域에서는 보다 높은 上位 階層 中心地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데 비해 山間地域은 그 값의 차이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연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 지닌 地形, 水系, 道路網, 耕地와 聚落의 平面的 分布 등 지역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山間地域은 接近性의 불리로 구매와 시설이용의 빈도가 낮아지며 지역적 자족성이 높다. 또한 地形的 制約이 크고 人口密度가 희박하기 때문에 중심지의 규모가 작고 多核的인 中心地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平野地域은 人口密度가 높고 接近性이 양호하기 때문에 구매와 시설이용의 빈도가 높아지며 中心地의 規模도 山間地域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島嶼地域은 타지역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취락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발달해 있어 Ⅰ계층 중심지의 影響圈이 매우 넓은 만큼 Ⅱ, Ⅲ계층 中心地의 機能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農漁村의 定住體系를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地域的 特性과 주어진 與件, 定住體系上의 位相과 役割, 그리고 背後地域 住民의 中心地 利用規模와 利用實態 등 住民生活圈을 고려하여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育成施策이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定住生活圈單位에서 4段階의 階層體系를 보이는 定住체계와 面單位로 내려오면 마을 → 중심취락 → 면소재지로 이어지는 3段階階層 또는 마을에서 중심취락(면소재지)으로 바로 연결되는 2段階의 定住體系로 압축되게 된다. 여기서 前者와 後者의 차이는 面所在地가 갖는 定住生活圈上의 位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面單位 下位 定住體系는 일반적으로 그 地域이 지닌 自然地理的 條件과 位置的 性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平野地域과 山間地

域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平野地域에서는 中心都邑에 속하는 位相을 지닌 面所在地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山間地域은 대부분의 面所在地가 規模는 크지 않지만 中心機能이 잘 발달해 있고 반대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中心機能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호전되고 住民의 機動性이 증대되어 갈수록 거리마찰효과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일 수록 下位 中心地가 쇠퇴되는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나. 事例地域(周德面)의 定住體系

1 周德面의 相對的 地位

周德面은 中原郡의 13個 面 중의 하나로서 面所在地의 中心機能指數가 가장 높은 所在地이다〈표 2-1〉. 따라서 周德面은 물론 인접한 新尼面 까지를 포섭하고 있는 中心地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즉 中原郡의 13個面중 忠州市에 접한 6個面은 忠州市에 직접 포섭되는 忠州大定住區에 속하고 나머지 7個面이 4個의 小定住區를 형성하고 있는데 周德小定住人口는 9,387名의 인구를 포섭하여 中原郡 인구의 14%를 점하는 定住單位를 구성하고 있다〈표 2-2〉.

定住體系 設定에서 나타난 結果는 定期市場 利用과 日常用品 購買圈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 설정된 定住體系와 住民生活圈이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中原郡의 定期市場과 日常用品 購買圈

(a) 중원군 정기시장 이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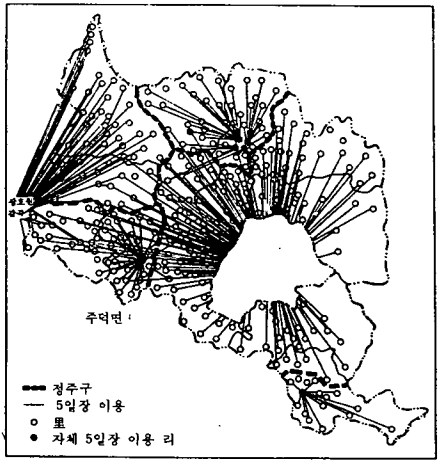

b) 중원군의 일상용품 구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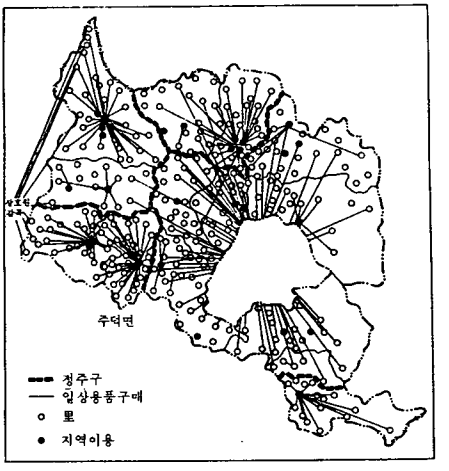

표 2－1 中原郡 中心地別 機能指數

중심지명	기능지수(FI)	중심지명	기능지수(FI)
살 미	275.75	가 금	179.7
상 모	1,175.76	금 가	121.76
이 류	357.01	동 량	436.03
주 덕	1,964.05	삼 척	585.85
신 니	868.23	엄 정	891.03
노 은	972.55	소 태	149.23
앙 성	1,222.27	계	9,199.82

표 2-2 中原郡의 定住體系

정주생활권 중심도시	정주구	해 당 면	포섭인구
충 주	충주(대)	가금, 금가, 산척, 동량, 살미, 이류면(6)	31,047
	엄정(소)	엄정, 소태면(2)	9,873
	앙성(소)	앙성, 노은면(2)	10,545
	주덕(소)	주덕, 신니면(2)	9,873
	상모(소)	상모면(1)	7,104

[2] 周德面의 定住體系 設定

事例地域인 周德面의 定住體系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統計資料의 수집이 용이한 行政里를 調査의 基本單位로 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面所在地와 같이 同一地點에 위치하면서 人口增加로 인해 분할되어 여러個의 行政里로 區分된 地域은 하나의 定住地 單位로 보고 결합하여 分析單位로 삼음으로써 地域單位를 일부 조정하였다.

定住體系의 設定을 定住地 單位로 조사된 서비스 시설수를 기초로 대이비스(Davies)의 機能指數法을 이용하여 각 單位地域의 中心性을 측정하였다. 그 結果 아래와 같은 3段階의 階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표 2-3〉.

여기서 Ⅰ階層은 總 379個의 施設數를 가진 신양 1, 2, 4, 5리와 신촌리로 구성된 面所在地로서 주덕면의 기초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階層은 창전 4·5리와 풍덕리 및 승동리로 구성된 2個의 定住地로서 中心聚落이 갖는 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을은 정미소, 문방구, 식료품점, 이발소 등 배후마을이 가지지 못하는 일부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Ⅲ階層은 계막 등 6個 마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미소와 소규모 잡화점 등 일부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이 있는 마을과 청양 등 19個 마을에서처럼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마저 볼 수 없는 마을로 구분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배후마을로 간주될 수 있는 마을 群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2〉.

그림 2-2 周德面의 定住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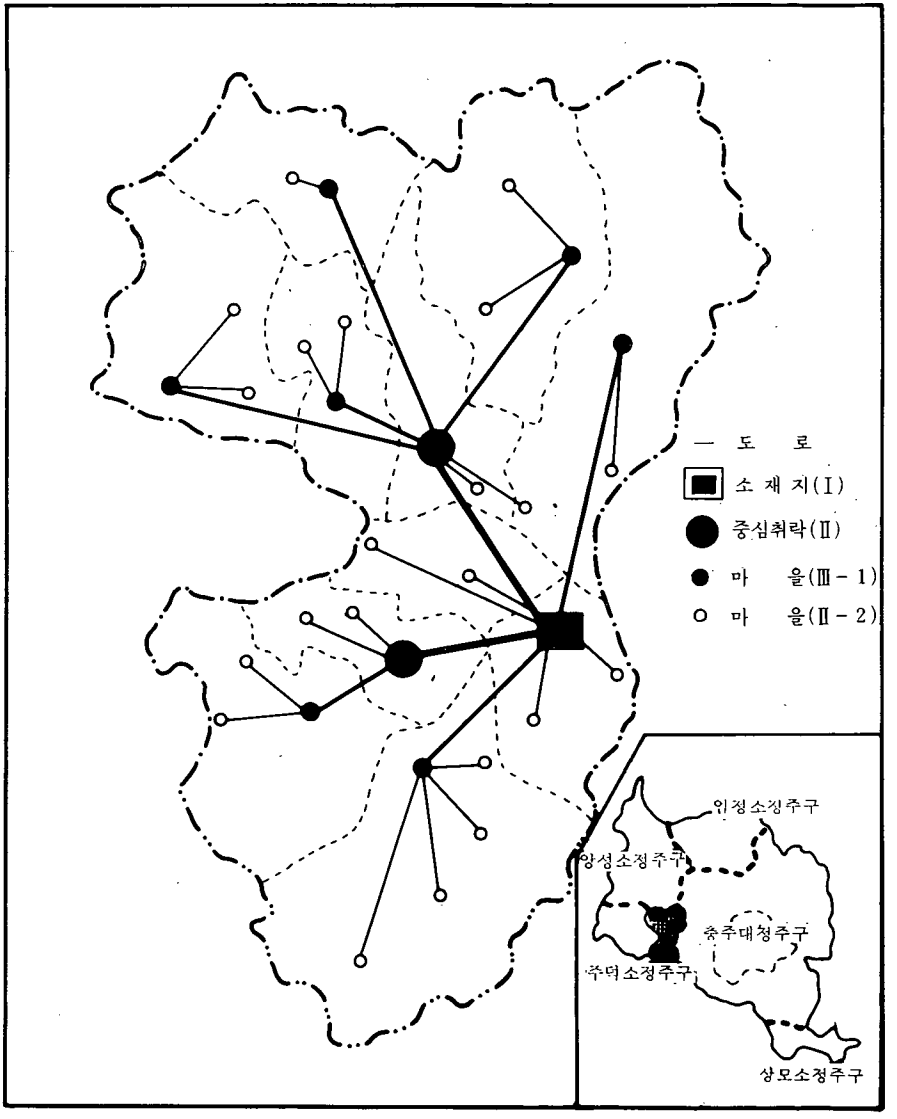

표 2-3 周德面의 聚落階層

계 층	수	해 당 마 을	기능지수	기능체수
Ⅰ	1	면소재지(신양1·2·4·5), 신촌	7207.38	379
Ⅱ	2	창전4·5, 제내(풍덕, 승동)	269.14－120.02	14－8
Ⅲ－1	6	계막, 원당우, 맹동, 원사락, 봉천, 능촌	22.75－19.52	6－4
Ⅲ－2	19	청양, 창전1, 원대곡, 묵동, 원화곡 조동, 원장록, 동산미, 석우, 미락, 신양3, 음동, 제내, 창동, 삼방, 마치, 원신중, 매남, 유동	14.95－4.95	5－2

2. 사례지역(周德面)의 地域構造

가. 一般現況

[1] 行政區域 位置

周德面은 1990년末 現在 總面積 45.98㎢로서 中原郡 面積의 5.1%를 차지하여 비교적 좁은 面積을 가지나 人口는 9,017人으로 中原郡 人口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同面은 現在 모두 11개 法定里와 35個 行政里, 그리고 53個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4〉.

周德面의 關係的 位置는 中原郡의 南西部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울과 淸州方面에서 忠州市로 진입하는 관문에 해당되는 交通要衝地에 위치하고 있다. 忠州로부터 14㎞ 地點에 위치한 이 地域은 앞으로 건설될 여주-구미간 中部內陸高速道路의 인터체인지 설치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도로망에 인접하게 되어 더욱 유리한 立地條

표 2－4 中原郡 과 周德面의 行政區域 構成

구 분	면 적 (㎢)	가 구	인 구	하 위 행 정 단 위				
				면	법정부락	행정부락	자연부락	반
중원군	899.43 (100.0)	18,440 (100.0)	73,869 (100.0)	13 (100.0)	137 (100.0)	331 (100.0)	758 (100.0)	906 (100.0)
주덕면	45.98 (5.1)	2,279 (12.4)	9,017 (12.2)	1 (7.7)	11 (8.0)	11 (8.0)	53 (7.0)	99 (10.9)

그림 2－3 周德面의 地形地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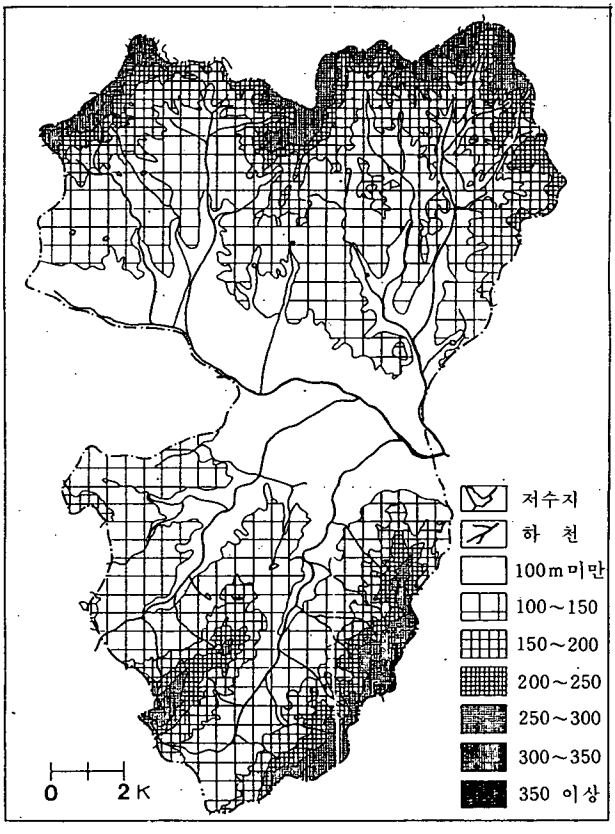

件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리한 立地潛在力에 힘입어 현재 農工地區가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淸州－忠州를 연결하는 內陸工業벨트帶에 속함은 물론 工業背後都市로 育成될 計劃까지 가지고 있어 發展潛在力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地域이기도 하다.

2 自然地理的 條件과 土地利用

周德面은 南漢江 支流인 堯度川이 面의 中央部를 관통하여 이 강을 경계로 水北과 水南으로 自然的 地理區가 크게 양분되고 있으며 南北이 대칭적인 지형, 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의 중앙부에는 넓은 平野가 발달하고 北部와 南東部에 치우쳐서는 300－500m에 해당하는 丘陵性山地가 위치하며 이들 山地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小河川을 끼고 발달한 계곡을 따라 農耕地와 聚落이 분포하고 있다. 聚落은 대체로 100－150m의 고도에 크고 작은 自然部落單位로 산재하고 있다〈그림 2－3〉.

周德面의 土地利用 現況을 用度地域에 따라 구분해 보면 面所在地는 都市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都市計劃區域에 해당되고, 제내리, 덕연리, 신촌리, 원신중리, 창전리, 삼방리 등 6개 地域은 聚落地域으로 지정되어 있다. 面의 中央部를 따라 발달한 平野部와 河谷을 따라서는 耕地地域이 분포하며 北部와 南東部 地域의 山地를 따라서는 森林保全地域이 분포한다. 農耕地와 森林保全地域사이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하는 곳곳에는 開發促進地域이 불규칙하게 산재하고 있다〈그림 2－4〉. 周德面의 耕地率은 41%로서 그 중 畓率이 59%를 차지해 平野地帶에 속하며 南과 北의 溪谷部를 따라서는 谷間畓과 그 주변에 田이 산재하여 平野와 山間地의 中間地帶的 性格을 띠는 特性도 보이고 있다.

그림 2－4 周德面의 土地利用：用度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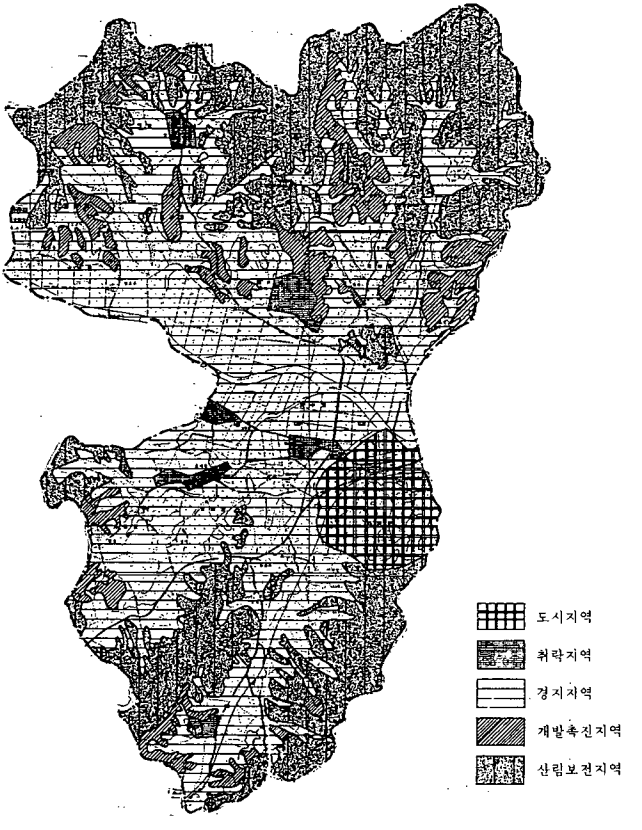

나. 마을 규모와 유형

[1] 마을 規模

周德面의 마을 規模를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35個 行政里를 單位로 구분해 보면, 우선 家口規模에서는 60戶미만의 마을이 65%를 차지하고 100戶미만의 마을은 9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표 2－5>.

人口規模로는 250人미만의 마을이 35個 마을 중 24個 마을을 차지해 거의 70%에 가까운 마을이 250人 미만으로 되어 있다<表 2－6>.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面單位의 行政里 구성이 대체로 家口로는 100戶미만이고, 人口로는 300人 미만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面單位 마을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面所在地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그 인접지인 신양리, 마치, 신촌리에 面 全體人口의 38.4%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외에 北東部의 원화곡 北面部의 창동, 南面部의 창전5리와 동산미 그리고 남부의 청양 등의 300명 규모의 비교적 큰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5〉.

그러나 面의 南과 北의 谷間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마을의 대부분은 人口規模가 매우 적은 小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150m의 비

표 2-5 家口規模別 마을 分布

범 위	빈 도 수		범 위	빈 도 수	
	중원군	주덕면		중원군	주덕면
20가구미만	11	-	100 - 119	9	-
20 - 39	108	12	120 - 139	7	1
40 - 59	112	11	140 - 160	1	1
60 - 79	52	6	160가구 이상	8	2
80 - 99	19	2	계	327	35

표 2-6 人口規模別 마을 分布

범 위	빈 도 수		범 위	빈 도 수	
	중원군	주덕면		중원군	주덕면
50인 미만	-	-	300 - 349	17	4
50 - 99	43	3	350 - 399	14	-
100 - 149	70	6	400 - 449	7	1
150 - 199	82	7	450 - 499	6	1
200 - 249	45	8	500인이상	12	3
250 - 299	31	2	계	327	35

교적 높은 고도에 입지하고 있다.

[3] 마을 類型

周德面의 35個 行政里를 대상으로 조사한 25個 變數를 사용하여 要因分析한 결과 모두 7個 類型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6〉.

이에 따르면 面所在地의 마을들은 非農業型에 속하며 中央部의 넓은 平野地帶에 위치한 석우, 원당우, 지내, 봉천, 원장록, 승동, 원신중, 계막리 등은 순수한 畜作地帶에 속하고 있다. 그외에 水北의 谷間에 위치한 마을들은 채소, 특용작물 및 田作으로 특화되어 있고, 水南의 마을들은 대부분 축산과 과수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他

그림 2-5 周德面의 마을 規模別 分布,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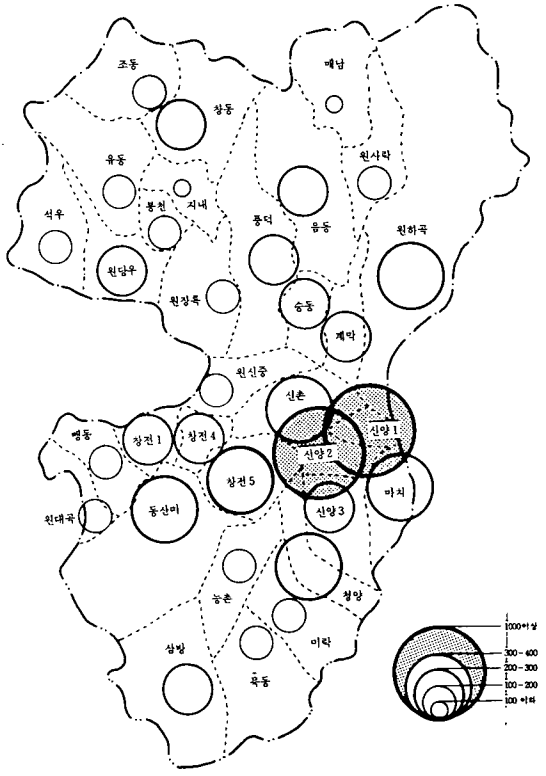

그림 2-6 마을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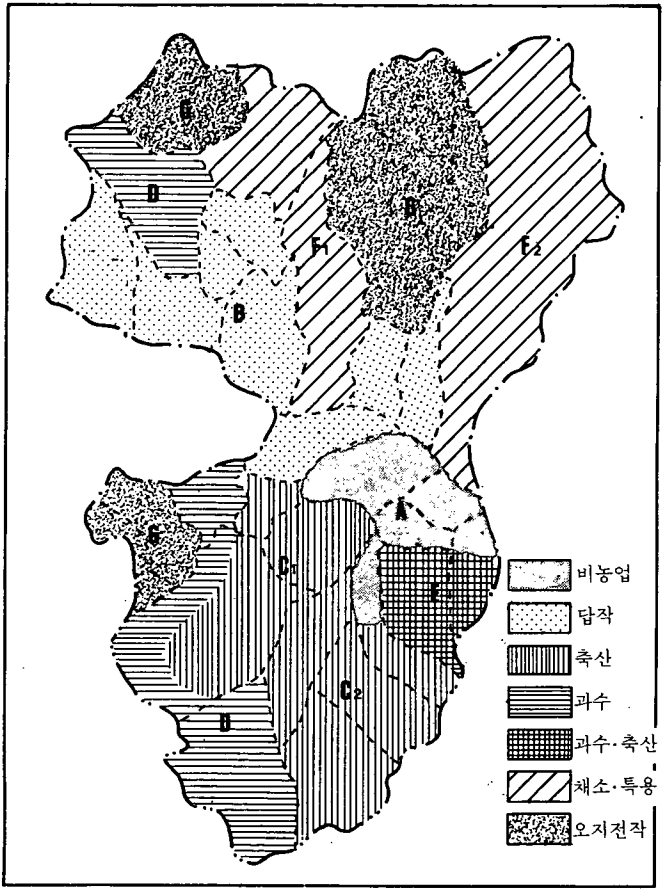

地域에 비해 전체적으로 平野畜作地帶에 속하면서도 다양한 地域特化作用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地域特性을 보여주고 있다.

나. 人口 變化와 構造

[1] 人口 變化

周德面의 總人口는 1930年 7,246에서 1970年에는 12,472人, 그리고

1975年에는 12,693人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1975年을 頂點으로 人口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1年에는 11,097人, 1986年에는 9,733人으로 줄어들었고 1989年 現在 9,017人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最高値를 기록한 1975年이후 지난 25年間 29%의 人口減少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 추세는 최근으로 올 수록 그 폭이 줄어 들고 있다. 즉 1981年에서 1986年까지는 年平均 −3.4%의 감소를 보였으나 1986年에서 1989年까지의 기간에는 −1.97%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표 2−7〉.

이에 따라 80年代 前半에는 總 32個 行政里중 16個리가 −4.0%를 넘는 絶對減少를 보였고, 이 기간중 人口增加를 보인 부락은 창전5리, 신양리, 원신중의 3個里뿐이었으나 80년대 後半에 오면서 −4.0%이상의 絶對減少 지역은 4개리로 줄었고 人口增加地域도 5개리로 증가하게 되었다.

2 人口 構造

周德面의 性別, 年齡別 人口構成比를 비교해 보면, 0～14歲의 幼少年層이 23.5%, 15～29歲의 靑年層이 27.4%, 30～64歲의 壯年層이 39.4%, 그리고 65歲 이상의 老年層이 9.7%를 점하고 있다〈표 2−8〉. 이를 性別로 보면 특히 15～24歲까지의 人口構成에서 性別 不均衡現象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農村靑年의 結婚難과 같은 社會問題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7 周德面의 人口變化

단위:명

연 도	인 구	연 도	인 구	연 도	인 구
1930	7,246	1975	12,693	1986	9,733
1970	12,427	1981	11,097	1989	9,017

자료:「조선국세조사」, 1930.
중원군,「통계연보」;「인구센서스」.

다음으로 人口構造의 變化를 살펴보면 1981年과 1989年 사이의 變化에서 幼少年層과 靑年層의 人口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데 비해 60歲 이상의 老年層은 큰 變動이 없는 年齡帶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즉, 1981年의 幼少年層(0~14세)은 總人口의 42.3%를 차지하였으나 1986年에는 37%로 감소되고 1989年에는 33.6%로 감소하여 왔다. 또한 靑年層(15~29歲)은 1981年 16.7%에서 1986年에는 15.3%, 그리고 1989年에는 13%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壯年層(30~65세)은 1981年 33.4%에서 1986年에는 38.7%로 그리고 1989年에는 40.4%로 構成比가 증가하였고 老年層(65歲이상)은 1981年 7.5%에서 1986年 9%로, 1989年에는 12.5%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人口高齡化의 진행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모든 마을에서 같은 樣相을 보여 주고 있으나 面所在地나 規模가 큰 마을의 경우에는 비교적 老齡化의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規模가 적고 農家比率이 높은 마을일 수록 老齡化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9〉. 따라서 이러

표 2-8 周德面의 年齡別, 性別 人口 分布, 1989

연 령	남	여	계	비 율	연 령	남	여	계	비 율
0 - 4	271	250	521	5.8	45 - 49	257	273	530	5.9
5 - 9	389	356	745	8.3	50 - 54	275	307	582	6.4
10 - 14	428	424	852	9.4	55 - 59	216	290	506	5.6
15 - 19	644	417	1061	11.8	60 - 64	189	236	425	4.7
20 - 24	442	268	710	7.9	65 - 69	169	204	373	4.1
25 - 29	367	324	691	7.7	70 - 74	102	123	225	2.5
30 - 34	343	303	646	7.2	75 - 79	75	78	153	1.7
35 - 39	234	229	463	5.1	80이상	38	93	131	1.4
40 - 44	194	209	403	4.5	계	4633	4384	9017	100.0

표 2-9 周德面 行政里別 年齡帶 人口 分布

단위: %

지 역	1981				1986				1989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인층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인층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인층
창전 5	37.8	21.9	34.7	5.6	39.7	20.0	35.5	4.7	35.1	21.1	36.3	7.4
창전 4	43.4	13.5	32.1	11.0	40.9	13.2	35.4	10.5	35.1	11.8	41.2	11.8
창전 1	38.7	16.7	37.7	7.0	36.6	16.8	40.3	6.3	30.8	21.5	39.3	8.5
동산미	43.4	12.9	34.9	8.8	36.7	16.9	37.0	9.4	36.0	16.4	35.7	11.9
맹동	46.8	12.7	33.2	7.3	34.9	10.5	41.4	13.2	32.1	8.2	41.8	17.9
원대곡	37.1	15.7	33.7	13.5	30.9	13.0	43.9	12.2	32.5	10.0	42.5	15.0
청양	40.1	16.3	30.6	12.9	41.3	15.9	36.2	6.5	54.7	22.4	18.2	4.7
미락	48.9	10.9	34.8	5.4	45.3	11.3	35.8	7.5	40.4	5.9	45.6	8.1
능촌	34.5	17.4	40.9	7.2	29.6	15.3	43.4	11.6	29.2	12.3	41.5	17.0
묵동	38.0	15.3	38.0	8.7	29.3	20.3	39.8	10.5	23.9	11.5	44.2	20.4
삼방	40.2	17.8	37.1	4.9	37.1	13.3	10.9	8.7	35.4	9.2	43.8	11.5
마치	49.1	15.8	31.4	3.7	42.0	14.3	36.4	7.3	36.1	14.8	40.3	8.8
신양 1	44.5	16.6	33.8	5.1	39.4	19.5	35.1	6.0	36.1	17.1	40.4	6.4
신양 2	43.9	18.0	32.8	5.4	40.5	18.5	35.2	5.9	35.9	19.6	38.4	6.0
신양 3	42.9	18.0	31.4	7.7	40.7	13.6	38.0	7.7	32.2	16.3	37.0	14.4
신촌	43.8	17.5	31.7	7.0	41.9	17.6	32.7	7.8	37.8	19.2	34.2	8.8
원신중	41.6	19.1	33.5	5.7	35.2	20.0	35.7	9.0	29.3	12.7	41.3	16.7
개막	41.2	21.1	29.6	8.2	33.5	22.7	35.1	8.7	35.6	14.9	38.1	11.4
원하곡	45.5	13.9	36.0	4.6	43.5	13.3	36.9	6.3	38.5	10.9	44.0	6.6
원사락	46.6	12.2	36.1	5.1	39.4	15.5	35.4	9.7	34.8	8.5	44.5	12.2
매남	48.3	13.1	28.3	10.3	34.7	16.5	36.4	12.4	35.2	6.8	43.2	14.8
음동	42.0	23.3	29.7	5.0	33.3	20.8	38.3	7.5	32.4	15.9	40.6	11.1
숭동	47.2	13.4	29.1	10.4	40.5	10.3	36.9	12.3	36.2	12.8	37.9	13.2
풍덕	38.3	21.5	28.7	11.5	32.6	14.2	40.8	12.3	30.8	12.0	44.0	13.2
원장록	43.3	15.3	30.2	11.2	35.1	13.7	40.5	10.7	29.7	13.8	43.5	13.0
봉천	45.8	15.1	33.9	5.2	38.5	10.6	42.2	8.7	35.5	10.5	44.1	9.9
지내	42.1	13.5	38.3	6.0	33.0	11.0	48.6	7.3	25.0	11.4	46.6	17.0
창동	37.8	16.9	34.4	10.9	36.5	12.4	43.1	8.0	24.7	11.6	32.8	30.9
조동	41.5	17.6	35.8	5.2	41.5	6.8	43.5	8.2	32.5	10.6	39.8	17.1
원당우	42.1	16.4	32.7	8.8	38.0	15.4	36.9	9.7	33.8	14.2	40.2	11.9
유동	40.9	19.0	34.4	5.7	26.1	25.1	36.7	12.1	27.4	21.2	40.8	10.6
석우	38.3	26.8	28.5	6.4	37.0	11.0	42.8	9.2	30.5	7.8	50.4	11.3
평균	42.3	16.7	33.4	7.5	37.0	15.3	38.7	9.0	33.6	13.5	40.4	12.5

자료: 각연도 상주인구조사.

그림 2-7 周德面의 人口構成 變化,19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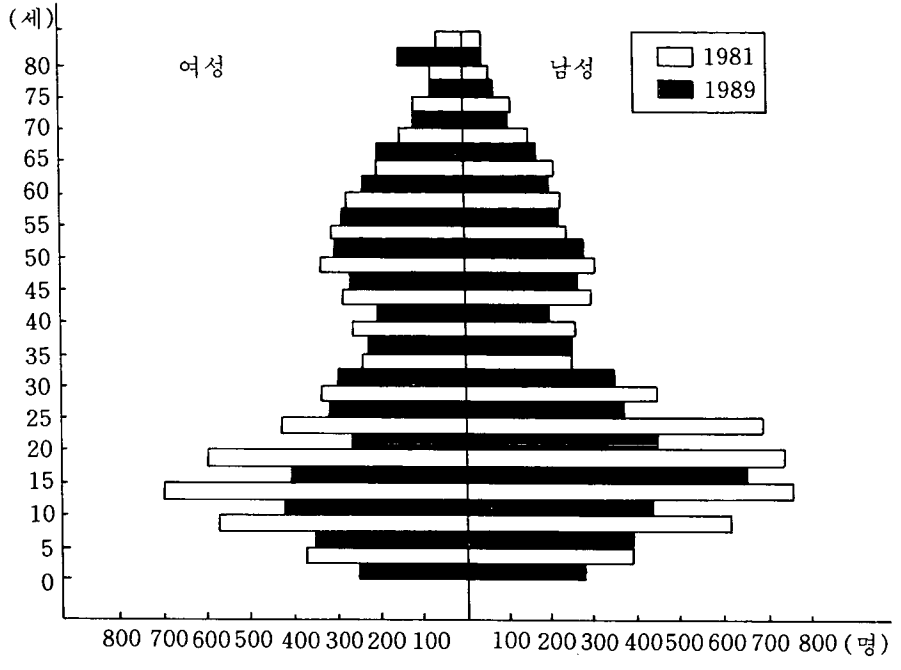

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적고 순수한 耕種農業中心의 農家로 구성된 순수 農村마을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面單位 定住圈의 開發圈域 設定

가. 圈域 設定의 前提

효율적인 面單位 定住圈의 조성을 위해 그 開發의 對象이 되는 地域

單位를 어느정도의 規模와 範域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現在의 空間組職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變化의 與件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面單位라는 순수한 農村地域에 미치게 될 중요한 要因부터 검토하는 것이 圈域設定의 前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營農規模 擴大

政府에서는 1990년 現在 農家 1戶當 耕地面積 1.2*ha*水準을 專業農의 경우 2000년까지 3.5*ha*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農家所得과 競爭力 向上을 위해서는 家族勞動 中心의 生産方式을 機械化로 대체시켜 商業的 專業農을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농업기계화를 가정할 때 機種의 결합형태별 損益分岐點은 트랙타(小)+이앙기(4조)+바인더型 및 트랙타(大)+이앙기(4조)+콤바인(3조)의 경우 각각 3.5*ha*와 7.0*ha*가 된다는 硏究報告(履重雄 外, 1988)에서 專業農의 戶當 耕地面積이 최소한 3*ha*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營農規模의 擴大를 상정한다면 現在 존재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空間範圍는 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마을 規模 擴大

현재 우리나라에는 68,000여개의 自然部落이 존재하나 거의 대부분이 小規模 村落으로서 30戶미만의 自然部落이 50%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것도 平野地域에 비해 山間地域은 더욱 작은 規模를 나타내고 불규칙하게 산재한 모습을 띠고 있다.

1989년 現在 忠淸北道 中原郡의 6個面을 사례 조사해 본 결과 150個 行政里에 299個 自然部落이 존재하고 있다. 1個 自然部落은 平均28家口에 108명의 人口規模를 가지고 있으나 그 偏差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

표 2－10 自然部落의 規模別 分布

(中原郡의 6個面 事例)

호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빈도	70	80	52	37	20	15	6	4	4	－	11
(%)	(23.4)	(26.8)	(17.4)	(12.4)	(6.7)	(5.0)	(2.0)	(1.3)	(1.3)	(0)	(3.7)

났다. 즉, 標準偏差가 家口로는 30戶에 이르고 人口로는 121名을 나타내었다. 自然部落의 規模는 例를 들어 동량면 음양지리 속실부락의 1家口 3名에서 동량면 장선리 다리골은 2家口 4名에 지나지 않은 部落이 있는가 하면 상모면의 온천1구는 290家口에 1,227名의 人口를 지닌 自然部落도 있어 그 規模가 천차만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99個 自然部落 중에서 20戶 미만의 마을이 150個에 이르러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30戶미만은 모두 202個 마을에 이르러 6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0家口 이상의 마을은 11個 부락으로서 3.7%에 불과한 실정이다〈表 2－10〉.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村聚落은 대부분 과거 家族生計 위주의 農耕時代에 自生的으로 발생된 聚落으로 規模가 작고 고립, 분산된 모습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늘날 生活圈과 營農規模가 확대되고 있고 自動車 普及과 기계화 營農이 진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聚落의 單位規模를 절대적으로 擴大시켜야 할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下部構造 投資費用 問題

現在의 農村空間組職을 그대로 둔 채 生活環境 改善에 필요한 下部構造를 整備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動線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投資費用도 비례해서 증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道路鋪裝과 上下水道建設 그리고 下水處理와 쓰레기, 분뇨 收去問題 등 生活環境基盤이 農村地域에서 아직도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

기 때문에 이러한 下部構造의 改善費用이 엄청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農村地域에 自然部落單位로 흩어져 산재하고 있는 마을 單位를 聚落이 갖는 規模의 經濟性을 전제로 하여 空間再編을 추구하면서 道路, 上下水道, 聚落構造改善 등 下部構造와 住居環境基盤을 이상적인 農村定住體系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擴充, 整備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開發圈域 設定

우리나라의 農村聚落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歷史를 지닌 自然發生的인 實體라는 점 때문에 주어진 前提로 받아들임으로써 農村開發의 對象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일단 檢討를 해보면 農村空間이 갖는 가장 큰 限界는 마을의 小規模에 따른 不經濟性에 근본적인 要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問題狀況을 극복하고 未來指向的인 바람직한 農村空間再編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촌마을의 規模를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정도가 되는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規模의 算定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適正 規模 算定

마을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變數로는 우선 첫째, 共同利用施設이나 公共서비스機能의 立地가 성립될 수 있는 最小限의 規模(threshold value)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어느 정도의 共同體 意識을 가질 수 있는 面對面에 의한 關係가 성립되는 範圍(contact field) 內에 있어야 하며 셋째, 現實的 空間構造를 가급적 수용하는 範圍內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範圍內에서 앞으로 農村社會가 취하게 될 營農方式과 부합되는 가

운데 未來指向的인 空間組職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을 規模에 대한 先行硏究의 한例를 보면, 단위마을의 最小適正規模로 日用雜貨店의 유지가능인구규모는 300名 내외의 60戶를 전후한 마을로 보고되고 있다(鄭淳午, 1987, 213). 그리고 通作距離의 限界를 半徑(R)으로 해서 마을의 背後面積(A)을 유추해 보면 $A=\pi R^2$이 된다. 여기서 面積중에서 農耕地 比率을 r, 戶當耕作面積을 a 非農家率을 b로 할 때 聚落規模(戶數) $S=ra(1=b)/a$로 표시된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77;16－18). 이 式에서 耕地率을 30%, 農家 對 非農家의 比率을 대략 7:3으로 보면 農家 1戶當 非農家 比率은 0.43이다. 또한 通作距離限界인 半徑(R)을 1.5㎞로 적용해 보면 背後面積(A)은 약 2.12㎢가 되고 1戶當境地面積을 3*ha*로 적용하면 農家好手는 약 70戶가 된다. 여기에 非農家를 고려하면 마을의 總家口數는 100戶 內外(경우에 따라서는 80－120호)로 산정된다(金世烈 外, 1990, 15－42).

위의 模型을 사례지역인 周德面에 적용할 경우 53個 自然部落과 35個 行政里單位는 너무도 적절하지 못한 面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人口數와 마을 空間範圍의 양측면에서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絶對人口數가 적고 마을간 偏差가 심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與件變化 收容과 投資의 效率性에 있어서도 많은 問題가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가장 適正한 規模로는 몇 개의 自然部落과 行政里를 묶은 보다 확대된 마을로 볼 수 있는 11個 法定里 單位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우선 自然部落과 行政里單位는 現在에도 規模가 작고 그 偏差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人口減少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을 수가 많은 데 비해 法定里單位로 확대하면 그러한 要素가 모두 상쇄될 뿐만 아니라 人口數에서나 마을規模에서 最小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음으로 專業農 育成과 營農規模의 擴大 및 機械化를 촉진시키는 空間範圍로 적절하다는 점이다. 그밖에 面對面關係의 共同體意識을 살릴 수 있고 投資의 效率性을 제고하는 데에도

표 2-11 周德面의 法定里別 現況

리명	인구	가 구			면 적(ha)					마을 반경 (km)
		계	농가	비농가	계	논	밭	산림	기타	
창전	891	206	141	65	251.8	96.8	92	35	28	0.89
대곡	561	137	134	3	393.6	77.6	111	173	32	1.12
삼청	933	217	198	19	836.3	121.3	167	484	64	1.63
신양	3,254	831	311	520	591.2	198.2	85	225	83	1.37
신중	594	133	76	57	72.8	46.8	9	1	16	0.48
화곡	539	131	126	5	547.8	92.8	85	332	38	1.32
사락	522	125	111	14	655.4	90.4	83	433	49	1.44
제내	494	134	133	1	247	118	60	48	20	0.89
장록	429	101	100	1	381.8	110.8	41	196	34	1.10
덕연	401	102	95	7	359	62	76	190	31	1.07
당수	565	143	138	5	390.3	125.3	67	165	33	1.11
계	9,183	2,260		697 (30.8%)	4,727	1,140	876	2,283	428	3.88 평균 (1.17)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적한 제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法定里를 基礎單位로 空間 再編

現在 周德面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段階의 階層構造를 갖는 定住體系를 구성하면서 11個 法定里와 35個 行政里 및 53個 自然部落이 重層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대부분의 面單位는 2段階의 階層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交通與件이 호전되고 自動車 普及과 機械化 營農이 진전되면 絶代距離 槪念보다는 接近性의 槪念이 더욱 중요한 要素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所在地와 背後마을의 2段階로 定住體系의 階層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배후마을의 基礎單位는 周德面의 11個의 法定里를 근간으로

그림 2-8 周德面 法定里의 人口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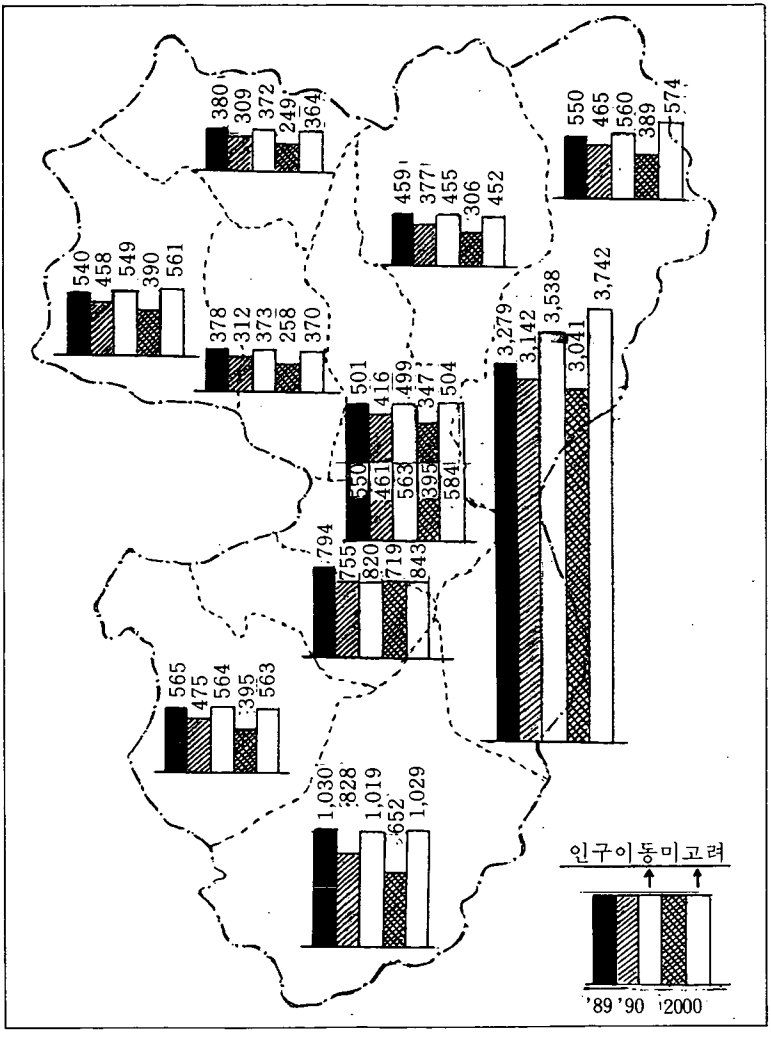

空間再編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家口 및 人口規模가 각기 100家口에 400人 이상을 차지해 최소한 規模의 經濟性을 확보하면서 共同體意識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營農規模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空間範圍로서도 평균 1.17㎞의 半

그림 2-9 周德面의 開發圈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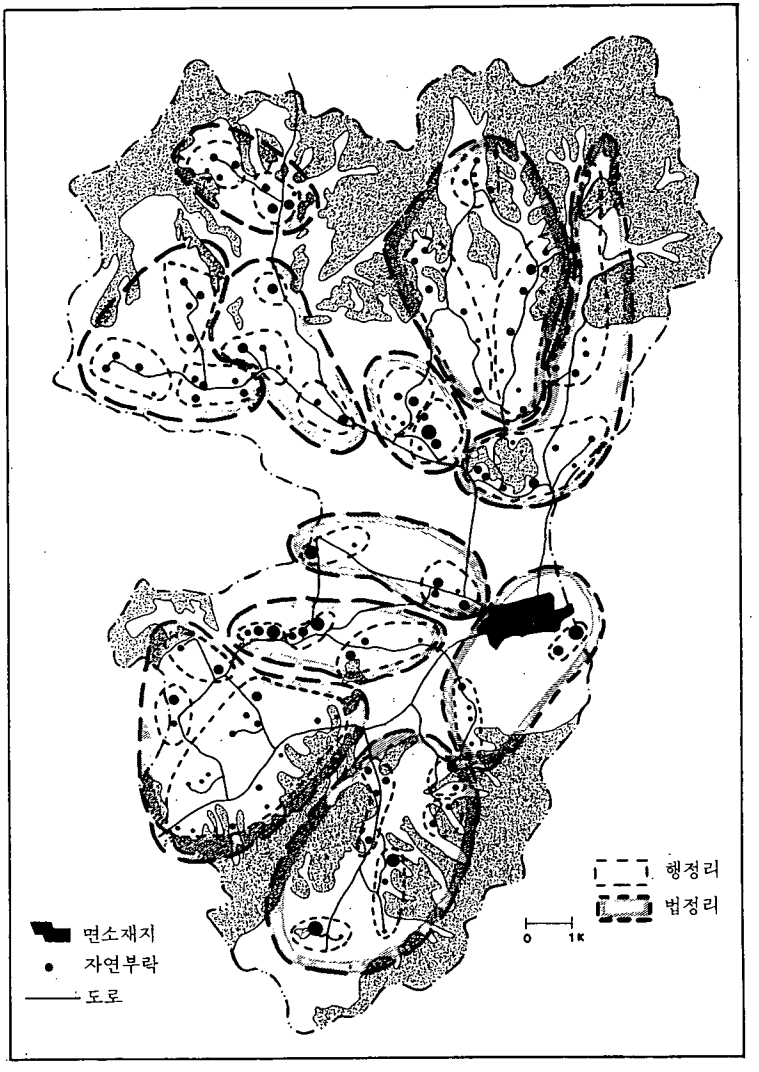

徑을 가져 問題가 없게 된다〈표 2-11〉.

동시에 현재의 人口規模 水準에서나 현재의 人口移動率을 감안한 앞으로의 人口變化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所在地이외의 마을單位(法定里) 人口가 1995年에는 平均 486名이 되며, 2000年에도 412名이 되어 400名

이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人口移動率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1995年에는 577名, 2000年에는 584名이 되어 500名 이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8〉.

面單位 定住圈은 순수한 背後農村地域으로서 生産과 生活活動이 同一空間에서 일어나는 特性과 小規模로 분산입지하고 있는 現實的인 低密度性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개될 産業社會의 要求에 맞는 空間再編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現在의 定住體系를 3段階에서 2段階로 축소하고 확대된 마을 共同體로서 機械化 時代의 協同營農에 적합한 空間範圍로 볼 수 있는 法定里單位를 마을의 基礎單位로 開發圈域을 설정하여 農村空間의 再編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9〉.

그리고 面單位 定住圈은 郡單位定住生活圈에 기능적으로 統合될 수 있도록 接近性 向上과 相互依存的인 空間體系 형성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郡單位 定住生活圈計劃에서는 農村間의 重層的 構造를 중시하여 效率的인 結節地域 構造形成을 통해 機能的 地域統合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面單位 定住圈에서는 마을間 衡平性과 삶의 質을 고르게 向上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均衡的인 等質空間이 形成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 3 章

住居空間 實態와 改善方向

1. 住居空間의 實態와 問題点

가. 序言

농촌 주거공간의 개념은 광의로는 개별 주택을 의미하는 주거 영역과, 마을내의 기본 공동시설을 의미하는 주변 영역과 일상적인 인간활동과 관련되는 정주영역을 포괄(吉阪隆正 1981, 148)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개별 주택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주택의 개념도 첫째는 농촌에 소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서의 의미와 둘째는 농촌에 소재하는 거주 목적의 모든 주택으로서의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하성규·윤원근 1989, 106). 전자의 개념은 농촌 공업이나 농촌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포괄하지 못하며, 농업 중에서도 일반 농업 종사자와는 주택 구조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택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후자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농촌의 주택공간은 생활공간과 축사, 창고 등의 작업공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형태나 기능상으로 도시 주택보다 더 복잡한 양태를 가지고 있다. 농촌의 전통적인 주생활은 일상생활과 작업공간이 혼용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작업공간이 주가되고 생활공간은 종이 될 때도 있었다. 기능적 분류로 본 농촌 주택은 생활공간과 생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공간은 거주 공간(방), 가사 공간(부엌)과 위생 공간(화장실, 목욕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 공간은 수장 공간인 창고, 작업 공간인 축사로 나누어 진다(경상북도 1990, 18-19).

이러한 농촌 주택 공간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제반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영농 구조, 에너지 이용체계, 주민생활권등의 변화는 농촌 빈집, 인구 감소 및 노령화, 기계농의 확대, 난방·취사연료의 변화 등을 유발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촌 주거공간은 산업사회에서 농촌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되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나. 個別 住宅 實態

[1] 가구주 현황

사례지역인 중원군 주덕면의 주택 실태 조사에서[1] 나타난 가구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4.1%, 30-39세가 21.3%, 40-49세가 19.1%, 50-59세가 27.3%, 60세 이상이 28.2%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

1) 주택실태조사는 중원군 주덕면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1990년 10월 설문지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총 행정리 단위의 마을 35마을 중 33마을, 총 대상가구 2,279가구중 1,865가구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MULTREG를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별 표본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Missing Data를 처리하는데서 기인된 것이다.

는 남성 가구주가 86.7%, 여성 가구주가 13.3%이다. 학력별로는 국졸 이하가 58.0%, 중졸이 21.4%, 고졸이 16.7%, 전문대졸 이상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 농업이 50.6%, 농업 노동이 14.7%, 과수·축산·임업이 4.8%로서 농업 종사자가 70.1%로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농업이 29.9%를 차지한다. 소득별로는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가 59.8%, 500~800만원이 27.3%, 800~2,000만원이 12.3%, 2,000만원 이상은 0.6%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1〉

그림 3-1 **주덕면의 가구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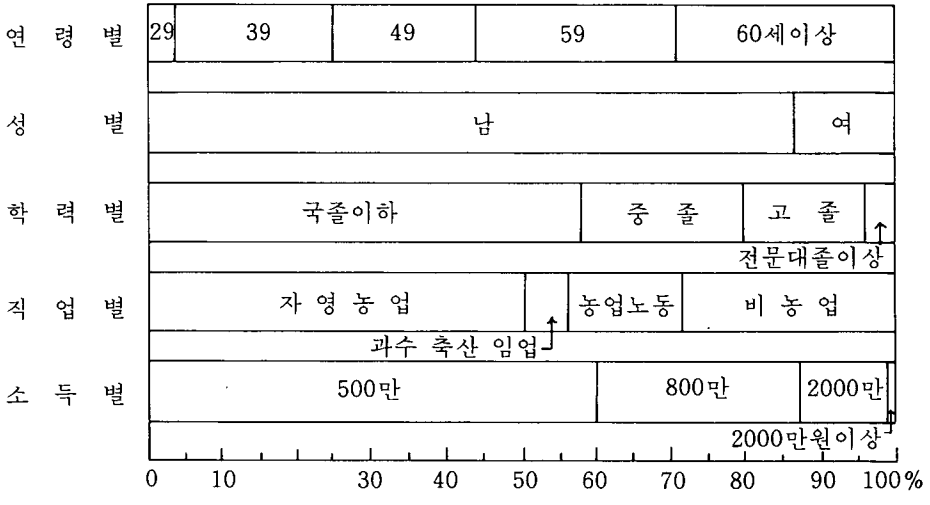

2 주택 건축연수

주덕면의 주택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조사가구 중 1950년 이전이 35.5%, 1951~60이 16.5%로서 52%가 30년 이상된 주택임을 나타내고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은 18.1%에 불과하다〈표 3-1〉. 이러한 비율은 1980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 1959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이 전체 군 단위 지역의 주택중 과반수가 넘는 59.4%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표 3-2〉. 그리고 농촌 주택은 도시 주택에 비해서 건축연수가 훨씬 오래되었으며, 이는 농촌 주택이 도시 주택보다 노후 주택이 많다

는 것을 의미하고 주택 개량을 더 필요로 한다.

농촌 주택의 건축연수와 가구주의 연령과의 관계는 〈표 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의 경우 연령별 주택 보유 가구주의 비율이 30세미만은 22.6%, 31-39세는 38.3%, 40-49세는 50.7%, 50-59세는 54.4%, 60-64세는 64.8%, 65세 이상은 62.9%를 나타내어, 연령이 높아질 수록 건축연수가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81년 이후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30세미만이 45.2%, 31-39세가 31.6%, 40-49세가 18.7%, 50-59세가 13.3%, 60-64세가 9.9%, 65세 이상은 8.9%의 보유비율을 나타내어, 가

표 3-1 주덕면 주택 건축연도

단위: 동, %

	빈 도	비 율
1950년 이전	618	35.5
1951~60	288	16.5
1961~70	204	11.7
1971~80	317	18.2
1981년 이후	316	18.1
계	1743	100.0

표 3-2 주택 건축연도(전국 : 1980)

단위: 동, %

	계	1950년이전	50~59	60~69	70~80
전국	5,318,880	1,390,555	838,912	967,712	2,121,701
	(100.0)	(26.1)	(15.8)	(18.2)	(39.8)
시부	2,468,209	280,304	254,177	534,564	1,399,164
	(100.0)	(11.4)	(10.3)	(21.7)	(56.5)
군부	2,850,671	1,110,251	584,735	433,148	722,537
	(100.0)	(38.9)	(20.5)	(15.2)	(25.4)

자료 :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교적 최근에 건축한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택 건축연도와 가구주의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60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은 가구주의 학력이 국졸 이하는 60.1%, 중졸은 50.3%, 고졸은 31.1%, 전문대졸은 18.5%, 대졸 이상은 46.1%의 보유비율을 나타내어, 학력이 국졸이나 중졸인 가구주의 노후주택 보유비율이 고졸 이상인 가구주의 그것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81년이후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가구주의 학력이 국졸 이하는 10.1%, 중졸은 21.7%, 고졸은 37.1%, 전문대졸은 51.9%, 대졸 이상은 26.3%를 나타내어 노후주택의 보유비율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3-3>.

주택 건축연도와 가구주의 직업과의 관계는 1960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자영농업은 60.5%, 농업노동은 61.0%, 비농업은 29.0%의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1981년이후에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자영농업은 10.2%, 농업노동은 11.2%, 비농업은 42.5%의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농업이나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에 비하여 노후주택의 보유비율이 높고, 최근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가구별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연수와의 관계이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1960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의 보유비율이 높고, 1981년 이후에 건축한 주택의 보유비율이 낮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업에 종사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비교적 최근에 지은 신축 주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표 3-3 주덕면의 소득·직업·학력·연령별 주택 건축연도

단위 : 동, %

	30세미만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1950년이전	8(12.9)	83(23.2)	108(32.6)	191(39.2)	98(44.1)	129(46.1)	617(35.5)
1951-60	6(9.7)	54(15.1)	60(18.1)	74(15.2)	46(20.7)	47(16.8)	287(16.5)
1961-70	11(17.7)	39(10.9)	36(10.9)	59(12.1)	23(10.4)	36(12.9)	204(11.7)
1971-80	9(14.5)	69(19.3)	65(19.6)	98(20.1)	33(14.9)	43(15.4)	317(18.2)
1981년이후	28(45.2)	113(31.6)	62(18.7)	65(13.3)	22(9.9)	25(8.9)	315(18.1)
계	62(100.0)	358(100.0)	331(100.0)	487(100.0)	222(100.0)	280(100.0)	1740(100.0)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1950년이전	421(41.7)	123(33.8)	54(18.9)	2(7.4)	13(34.2)	613(35.5)
1951-60	186(18.4)	60(16.5)	35(12.2)	3(11.1)	3(11.9)	287(16.6)
1961-70	136(13.5)	31(8.5)	27(9.4)	7(25.9)	2(5.3)	203(11.8)
1971-80	165(16.3)	71(19.5)	64(22.4)	1(3.7)	10(26.3)	311(18.0)
1981년이후	102(10.1)	79(21.7)	106(37.1)	14(51.9)	10(26.3)	311(18.0)
계	1010(100.0)	364(100.0)	286(100.0)	27(100.0)	38(100.0)	1725(100.0)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 농 업*	기 타	계
1950년이전	387(42.9)	93(38.6)	14(16.7)	71(20.4)	43(32.6)	608(35.6)
1951-60	160(17.6)	54(22.4)	16(19.0)	30(8.6)	23(17.4)	283(16.6)
1961-70	109(12.1)	34(14.1)	14(16.7)	27(8.8)	18(13.6)	202(11.8)
1971-80	155(17.2)	33(13.7)	19(22.6)	72(20.7)	29(22.0)	308(18.0)
1981년이후	92(10.2)	27(11.2)	21(25.6)	148(42.5)	19(14.4)	307(18.0)
계	903(100.0)	241(100.0)	84(100.0)	348(100.0)	132(100.0)	1708(100.0)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1950년이전	408(41.3)	131(27.5)	58(25.4)	597(35.3)
1951-60	183(18.5)	71(14.9)	27(11.8)	281(16.6)
1961-70	132(13.3)	49(10.3)	19(8.3)	200(11.8)
1971-80	158(16.0)	100(21.0)	50(21.9)	308(18.2)
1981년이후	108(10.9)	125(26.3)	74(32.5)	307(18.1)
계	989(100.0)	476(100.0)	228(100.0)	1693(100.0)

* 비농업은 상업, 회사원,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제조업노동등을 의미함.

[3] 주택 점유 구조

주택 점유 구조는 자가의 비율이 80.4%, 임차(독채 10.9%, 곁방 8.7%)는 19.7%를 차지하여, 다른 농촌지역에 비하여 임차의 비율이 약간 높다고 생각된다(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자가를 제외한 전세, 월세, 무상의 비율은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가구주의 연령, 학력, 직업과 관련시켜 살펴 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업별로는 농업보다는 비농업에 종사할수록 임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4〉. 그러나 가구의 소득과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4] 주택 형태

주덕면의 주택 형태는 전통적인 한옥이 75.6%로서 주종을 이루고, 개량형 양옥이 18.8%를 차지하며, 일반 농촌지역에서 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는 아파트도 5.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3-5〉.

아파트와 양옥에 거주하는 비율은 연령별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별로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업별로는 농업보다는 비농업에 종사할수록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5〉.

주덕면 주택의 지붕형태를 살펴보면 기와가 39.8%, 스레트가 39.3%로서 조사 주택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표 3-6〉. 그리고 주덕면 주택의 기둥·벽재료는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조·흙벽이 46.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벽돌이 22.5%, 시멘트 블럭이 19.3%, 철근 콘크리트가 12.0%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주덕면의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별 주택점유 구조.

단위: 등, %

	연령						
	30세미만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자가	36(48.6)	268(68.9)	277(79.1)	435(87.1)	199(87.3)	249(87.4)	1464(80.4)
임차(독채)	22(29.7)	55(14.1)	39(11.1)	43(8.7)	16(7.0)	24(8.4)	109(10.9)
임차(곁방)	16(21.6)	66(17.0)	34(9.7)	18(3.6)	13(5.7)	12(4.2)	159(8.7)
계	74(100.0)	389(100.0)	350(100.0)	496(100.0)	228(100.0)	285(100.0)	1822(100.0)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자가	876(83.7)	312(81.0)	216(70.6)	13(46.4)	33(82.5)	1450(80.3)
임차(독채)	101(9.7)	31(8.1)	49(16.0)	10(35.7)	7(17.5)	198(11.0)
임차(곁방)	69(6.6)	42(10.9)	41(13.4)	5(17.9)	-	157(8.7)
계	1046(100.0)	385(100.0)	306(100.0)	28(100.0)	40(100.0)	1805(100.0)

	직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농업	기타	계
자가	829(90.9)	193(74.2)	75(87.2)	246(63.4)	99(69.7)	1442(40.6)
임차(독채)	60(6.6)	33(12.7)	9(10.5)	74(19.1)	17(12.0)	193(10.8)
임차(곁방)	23(2.5)	34(13.1)	2(2.3)	68(17.5)	26(18.3)	153(8.6)
계	912(100.0)	260(100.0)	86(100.0)	388(100.0)	142(100.0)	1788(100.0)

	소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자가	839(79.9)	402(82.3)	186(10.7)	1427(80.8)
임차(독채)	101(9.6)	52(10.7)	34(15.0)	187(10.6)
임차(곁방)	110(10.5)	34(6.9)	7(3.1)	151(8.6)
계	1056(100.0)	488(100.0)	227(100.0)	1765(100.0)

표 3-5 주덕면의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주택형태

단위: 등, %

	연령						
	30세미만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한 옥	33(45.8)	235(61.2)	248(73.2)	400(81.3)	185(84.9)	250(88.7)	135(75.6)
양 옥	17(23.6)	97(25.3)	75(22.1)	87(17.7)	32(14.7)	28(9.9)	236(18.8)
아파트	22(30.6)	52(13.5)	16(4.7)	5(1.0)	1(0.4)	4(1.4)	100(5.6)
계	72(100.0)	384(100.0)	339(100.0)	492(100.0)	218(100.0)	282(100.0)	1787(100.0)

	학력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한 옥	890(86.5)	267(71.4)	150(50.2)	11(39.3)	22(51.2)	1340(75.6)
양 옥	131(12.7)	88(23.5)	91(30.4)	7(25.0)	17(39.5)	334(18.8)
아파트	7(0.7)	19(5.1)	58(19.4)	4(9.3)	4(7.3)	98(5.5)
계	1028(100.0)	374(100.0)	299(100.0)	43(100.0)	43(100.0)	1772(100.0)

	직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 농 업	기 타	계
한 옥	791(87.5)	228(88.4)	57(67.9)	147(39.7)	102(73.4)	1325(75.5)
양 옥	110(12.2)	27(10.5)	25(29.8)	133(35.9)	35(25.2)	330(18.8)
아파트	3(0.3)	3(1.1)	2(2.3)	90(24.3)	2(1.4)	100(5.7)
계	904(100.0)	258(100.0)	84(100.0)	370(100.0)	139(100.0)	1755(100.0)

	소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한 옥	870(84.6)	317(66.1)	123(54.4)	1310(75.5)
양 옥	147(14.3)	103(21.1)	75(33.2)	325(18.7)
아파트	11(1.1)	60(12.5)	28(12.4)	99(5.7)
계	1028(100.0)	480(100.0)	226(100.0)	1734(100.0)

표 3-6 주덕면 주택의 지붕형태

단위: 동, %

	빈 도	비 율
초 가	18	1.0
함 석	49	2.7
스 레 트	719	39.3
콘크리트	314	17.2
기 와	729	39.8
계	1,829	100.0

표 3-7 주덕면 주택의 기둥·벽 재료

단위: 동, %

	빈 도	비 율
철근·콘크리트	218	12.0
벽 돌	409	22.5
시 멘 트 블 럭	350	19.3
목 조 · 흙 벽	840	46.2
계	1,817	100.0

다음으로 농기구고, 창고, 축사 등의 부속사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47.6%인데 비해 부속사가 없는 주택은 52.4%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그것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부속사가 있는 비율은 과수·축산·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가 75%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농업(60.0%), 농업노동(41.3%), 기타직업(35.5%), 비농업(17.0%)의 순으로 나타난다. 농촌 주택하면 당위론적으로 부속사를 먼저 연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조사에서 부속사가 없는 주택이 과반수가 넘고, 또 가장 부속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도 부속사가 없는 주택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1농가당 1개 부속사씩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표 3-8 주덕면 가구주의 직업별 부속건물

단위: 동, %

	있 다	없 다	계
자 영 농 업	540(60.0)	359(40.0)	899(100.0)
농 업 노 동	102(41.3)	145(58.7)	247(100.0)
과수·축산·임업	63(75.0)	21(25.0)	84(100.0)
비 농 업	58(17.0)	284(83.0)	342(100.0)
기 타	44(35.5)	80(64.5)	124(100.0)
계	807(47.6)	889(52.4)	1696(100.0)

5 주택규모

주덕면 주택의 대지규모는 70평 이상이 42.0%, 30-69평이 24.5%, 20-29평이 20.0%, 10-19평이 10.1%, 10평 미만이 3.4%를 나타내고 있다〈표 3-9〉. 주택의 건축면적은 18-25평 규모가 50.1%로서 가장 높고, 26평 이상은 15.0%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18평 미만이 34.9%를 차지하여 이중 10평 미만도 10.3%나 되고 있다〈표 3-10〉.

주덕면의 10평 미만 주택의 비율은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전국 군 단위지역의 경우 9평 미만의 주택이 234,751(8.5%)나 되었다는 사실과 거의 부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세농가의 3칸주택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표 3-9 주덕면 주택의 대지규모

단위: 동, %

	빈 도	비 율
10평 미만	58	3.4
10-19	174	10.1
20-29	344	20.0
30-69	422	24.5
70평 이상	722	42.0
계	1720	100.0

표 3－10 주덕면 주택의 건축면적

단위: 동, %

	빈 도	비 율
10평 미만	178	10.3
10－17	423	24.6
18－25	861	50.1
26－39	158	9.2
40평 이상	99	5.8
계	1,719	100.0

6 주택 편익시설

주덕면 주택의 편익시설을 살펴보면 부엌은 재래식이 67.5%, 개량입식이 32.5%이고, 화장실은 재래식이 78.3%, 옥외개량이 9.5%, 수세식이 12.2%이며, 목욕탕은 있는 경우가 20.7%, 없는 경우가 79.3%이며, 온수공급시설은 있는 경우가 15.5%, 없는 경우가 84.5%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및 온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의 비율을 평균한 값을 「주거환경 기초 편익시설 수준」이라고 한다(하성규·윤원근 1989, 108). 이 경우 주덕면은 20.2%로서 1985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 전국 군단위의 기초 편익수준인 9.3%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5년도의 도시지역 기초 편익시설 수준(54.1%)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열악하다.

기초 편익시설과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을 연관시켜 살펴보면, 개량입식부엌의 보유는 연령별로는 31－39세가 44.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65세이상이 19.4%로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학력별로는 대학이상이 67.5%로서 가장 높다. 직업별로는 비농업이 54.9%로서 가장 높고, 과수·축산·임업의 경우도 비농업에 못지 않게 50.6%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농업노동의 경우가 18.2%로서 가장 낮다. 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이 56.6%로서 가장 높다.

표 3-11 주덕면 주택의 부엌 시설 현황

단위: 동, %

	빈 도	비 율
재 래 식	1192	67.5
개량입식	574	32.5
계	1766	100.0

표 3-12 주덕면 주택의 화장실 형태

단위: 동, %

	빈 도	비 율
재 래 식	1433	78.3
옥 외 개 량	174	9.5
옥내수세식	203	11.1
옥외수세식	21	1.1
계	1,831	100.0

표 3-13 주덕면주택의 목욕탕 및 온수공급시설현황

단위: 동, %

	목욕탕		온수공급시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377	20.7	278	15.5
없다.	1443	79.3	1519	84.5
계	1820	100.0	1797	100.0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는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가구주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60-64세 연령에서 가장 낮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업의 가구주에서 가장 높이 나타나고 국졸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비농업의 경우가 42.5%이고 다른 직업의 경우는 극히 적게 나타난다. 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온수 공급시설이 있는 경우의 비율은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으며, 직업별로는 비농업이 37.4%, 과수·축산·임업이 21.2%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소득별로는

800만원이 33.6%로서 가장 높다.

목욕탕시설이 있는 비율은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학력별로는 고졸이, 직업별로는 비농업이, 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개량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및 온수공급 시설이 있는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농업에 종사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3-14 주택 편익시설

단위: 동, %

	계	부엌시설		변소시설		목욕시설			주거환경기초 편익시설수준*
		입식	재래식	수세식	재래식	온수	비온수	없음	
전국	6,104,210 (100.0%)	2,109,124 (34.6%)	3,995,086 (65.4%)	2,018,513 (33.1%)	4,085,697 (66.9%)	1,220,716 (20.0%)	855,579 (14.0%)	4,027,905 (66.0%)	33.9%
시부	3,349,327 (100.0%)	1,840,653 (55.0%)	1,508,674 (45.0%)	1,820,792 (54.4%)	1,528,535 (45.6%)	1,098,749 (32.8%)	675,402 (20.2%)	1,575,176 (47.0%)	54.1%
군부	2,754,883 (100.0%)	268,471 (9.7%)	2,486,412 (90.3%)	197,721 (7.2%)	2,557,172 (92.8%)	121,977 (4.4%)	180,177 (6.5%)	2,452,729 (89.0%)	9.3%

*「주거 환경 기초 편익시설 수준」은 각 시설의 개량 비율(입식, 수세식, 온수)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하성규. 윤원근(1989).

표 3-15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부엌시설 현황

(단위 : 동, %)

	연령						
	30세이하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재래식	41(56.9)	206(55.7)	207(61.8)	342(70.7)	166(75.1)	225(80.6)	1187(67.4)
개량입식	31(43.1)	164(44.3)	128(38.2)	142(29.3)	55(24.9)	54(19.4)	574(32.6)
계	72(100.0)	370(100.0)	335(100.0)	484(100.0)	221(100.0)	279(100.0)	1761(100.0)

	학			력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재 래 식	796(77.7)	225(60.8)	133(46.2)	13(48.1)	13(37.5)	1180(67.5)
개량입식	228(22.3)	145(39.2)	155(53.8)	14(51.9)	27(67.5)	569(32.5)
계	1024(100.0)	370(100.0)	288(100.0)	27(100.0)	40(100.0)	1749(100.0)

	직			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 농 업	기 타	계
재 래 식	647(72.9)	211(81.8)	41(49.4)	162(45.1)	108(75.0)	1169(67.5)
개량입식	240(27.1)	47(18.2)	42(50.6)	197(54.9)	36(25.0)	562(32.5)
계	887(100.0)	258(100.0)	831(100.0)	359(100.0)	144(100.0)	173(100.0)

	소 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재 래 식	797(78.1)	261(55.8)	95(43.4)	1153(67.5)
개량입식	223(21.9)	207(44.2)	124(56.6)	554(32.5)
계	1020(100.0)	468(100.0)	219(100.0)	1707(100.0)

표 3－16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화장실 형태

단위: 동, %

	연				령		
	30세이하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재 래 식	39(54.2)	252(64.3)	261(75.2)	427(85.5)	198(86.5)	253(88.1)	1430(78.2)
옥외개량	7(9.7)	49(12.5)	29(11.3)	37(7.4)	22(9.6)	20(6.9)	174(9.5)
수 세 식	26(36.1)	91(23.2)	47(13.5)	37(7.4)	9(3.9)	14(5.0)	224(12.3)
계	72(100.0)	392(100.0)	347(100.0)	501(100.0)	229(100.0)	287(100.0)	1828(100.0)

	학			력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재 래 식	927(88.3)	285(74.2)	168(54.7)	14(50.0)	24(57.1)	1418(78.3)
옥외개량	82(7.8)	43(11.2)	38(12.4)	2(7.1)	7(16.7)	172(9.5)
수 세 식	41(3.9)	56(14.6)	101(32.9)	12(42.9)	11(26.2)	221(9.5)
계	1050(100.0)	384(100.0)	307(100.0)	28(100.0)	42(100.0)	1811(100.0)

구 분	직			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 농 업	기 타	계
재 래 식	822(88.0)	237(90.1)	62(71.3)	188(48.7)	112(77.8)	1401(78.2)
옥외개량	86(9.4)	16(6.1)	17(19.5)	34(8.8)	18(12.5)	171(9.6)
수 세 식	23(2.6)	10(3.8)	8(9.2)	164(42.5)	14(9.7)	219(12.2)
계	911(100.0)	263(100.0)	87(100.0)	386(100.0)	144(100.0)	1791(100.0)

	소 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재 래 식	914(86.9)	327(67.0)	140(61.7)	1381(74.6)
옥외개량	90(8.6)	62(12.7)	18(7.9)	170(13.2)
수 세 식	48(4.5)	99(20.3)	69(30.4)	216(12.2)
계	1052(100.0)	486(100.0)	227(100.0)	1767(100.0)

표 3-17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온수공급시설

단위: 동, %

	연령						
	30세이하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있다	26(37.1)	96(25.2)	56(16.4)	53(10.8)	21(9.5)	26(9.1)	278(15.3)
없다	44(62.9)	285(74.8)	286(83.6)	433(89.2)	200(90.5)	260(90.9)	1514(84.7)
계	70(100.0)	381(100.0)	342(100.0)	492(100.0)	221(100.0)	286(100.0)	1792(100.0)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있다	81(7.8)	60(15.1)	100(33.4)	15(55.6)	19(44.2)	275(16.0)
없다	951(92.2)	320(84.2)	199(66.6)	12(44.4)	24(55.8)	1506(84.0)
계	1032(100.0)	380(100.0)	299(100.0)	27(100.0)	43(100.0)	1781(100.0)

	직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농업	기타	계
있다	79(8.8)	17(6.4)	18(21.2)	139(37.4)	21(14.7)	274(15.6)
없다	816(91.2)	249(93.6)	67(78.8)	233(62.6)	122(85.3)	1487(84.4)
계	895(100.0)	266(100.0)	85(100.0)	372(100.0)	143(100.0)	1761(100.0)

	소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있다	73(7.1)	122(25.1)	76(33.6)	271(15.6)
없다	954(92.9)	364(74.9)	150(66.4)	1468(84.4)
계	1027(100.0)	486(100.0)	226(100.0)	1739(100.0)

표 3-18 주덕면 가구주의 연령·학력·직업·소득별 목욕탕시설 현황

단위: 동, %

	연령						
	30세이하	31-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계
있다	28(40.6)	116(30.1)	76(21.9)	83(16.7)	39(17.2)	35(12.1)	377(20.8)
없다	41(59.4)	269(69.9)	271(78.1)	413(83.3)	188(82.8)	256(87.9)	1438(79.2)
계	69(100.0)	385(100.0)	347(100.0)	496(100.0)	227(100.0)	291(100.0)	1815(100.0)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있다	126(12.1)	93(24.2)	120(49.7)	13(48.4)	21(48.8)	373(20.7)
없다	919(87.9)	292(75.8)	182(60.3)	14(51.6)	22(51.2)	1429(79.3)
계	1045(100.0)	385(100.0)	302(100.0)	27(100.0)	43(100.0)	1802(100.0)

	직업					
	자영농업	농업노동	과수·축산·임업	비농업	기타	계
있다	134(14.8)	29(10.8)	27(31.1)	158(41.8)	25(17.4)	373(21.0)
없다	771(85.2)	240(89.2)	66(68.9)	220(58.2)	119(82.6)	1410(79.0)
계	905(100.0)	269(100.0)	87(100.0)	378(100.0)	144(100.0)	1783(100.0)

	소득			
	500만원이하	500-800만원	800만원이상	계
있다	117(11.2)	160(32.9)	89(39.2)	366(20.8)
없다	929(88.9)	326(67.1)	138(60.8)	1393(79.2)
계	1046(100.0)	486(100.0)	227(100.0)	1759(100.0)

7 주택의 난방 및 취사

주덕면 주택의 난방은 연탄 보일러가 65.3%로서 가장 높고, 장작(화목)이 12.4%, 석유 보일러가 11.6%, 연탄 아궁이가 10.4%를 차지한다. 연탄 보일러와 연탄 아궁이에 의한 난방이 75.7%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 결과에서의, 연탄 보일러와 연탄 아궁이에 의한 난방비율이 도시지역의 경우는 85.6%를 차지하고 농촌지역(군 단위지역)의 경우는 45.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불과 5년동안에 농촌지역(주덕면)난방의 경우는 도시적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9 주덕면 주택의 난방방법

단위: 동, %

구 분	빈 도	비 율
장작(화목)	229	12.4
연탄아궁이	191	10.4
연탄보일러	1205	65.3
석유보일러	214	11.6
가 스	6	0.3
계	1845	100.0

표 3-20 주덕면 주택의 취사연료

단위: 동, %

	여 름		겨 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장작	65	3.7	154	8.4
연탄	123	7.0	443	24.3
석유	47	2.7	41	2.2
가스	1487	84.4	1158	63.5
기타	40	2.2	29	1.6
계	1762	100.0	1825	100.0

주덕면 주택의 취사연료는 여름의 경우는 가스 54.4%, 연탄이 7.0%를 나타내고 겨울의 경우는 가스가 63.5%, 연탄이 24.3%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난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주택 구성요소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즉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 농촌지역(군단위지역)의 경우 취사연료로서 유류 또는 가스를 사용한 비율이 12.1%에 불과했었다.

다. 定住體系別[2] 住宅 實態

[1] 주택 건축연수

정주체계별로 주택 건축연수를 살펴보면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은 면 중심지는 41.9%, 중심마을 (1)은 48.3%, 중심마을 (2)는 79.5%, 배후마을은 54.0%를 차지하고 있다. 면 중심지나 중심마을(1)에 비하여 중심마을(2)나 배후마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면 중심지는 면 소재지 지역이고, 중심마을(1)은 주변에 농공단지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도시형 중심마을에 가깝고 중심마

표 3-21 정주체계별 주택건축연수

단위: 동, %

	1950이전	1951-60	1961-70	1971-80	1981이후	계
면중심지	129(26.5)	75(15.4)	50(10.3)	94(19.3)	138(28.4)	486(100.0)
중심마을(1)	73(39.2)	17(9.1)	15(8.1)	36(19.4)	45(24.2)	186(100.0)
중심마을(2)	99(75.0)	6(4.5)	12(9.1)	13(9.8)	2(1.5)	132(100.0)
배후마을	317(33.8)	190(20.2)	127(13.5)	174(18.5)	131(14.0)	939(100.0)
계	618(35.5)	288(16.5)	204(11.7)	317(18.2)	316(18.1)	1743(100.0)

2) 주택분석에서의 정주체계는 면중심지는 신양리(신양 1, 2, 3, 4, 5), 중심마을 (1)은 창전리(창전 1, 4, 5), 중심마을 (2)는 제내리(성동, 풍덕) 배후마을은 그 나머지 마을로 하였다. 자료분석의 편의와 법정리단위의 공간범역을 중시하여 제2장의 정주체계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을(2)는 주변에 정미소와 유아원 등의 공동시설이 있는 농촌형 중심마을에 가까운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1년 이후 건축된 주택의 비율은 면 중심지가 28.4%, 중심마을 (1)이 24.2%, 중심마을(2)가 1.5%, 배후마을이 14%를 차지하여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 주택 점유 형태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의 비율은 면 중심지가 74.6%, 중심마을(1)이 72.0%, 중심마을(2)와 배후마을은 각각 92.4%와 83.5%로 나타나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에서 임차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비농업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특이한 것은 배후마을의 경우에도 임차의 비율이 11.7%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22 **정주체계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동, %

	자 가	임차(독채)	임차(곁방)	계
면중심지	402(74.6)	34(76.3)	103(19.1)	539(100.0)
중심마을(1)	136(72.0)	46(24.3)	7(3.7)	189(100.0
중심마을(2)	122(92.4)	7(5.3)	3(2.3)	132(100.0)
배후마을	805(83.4)	113(11.7)	47(4.9)	965(100.0)
계	1465(80.3)	200(10.9)	160(8.8)	1825(100.0)

[3] 주택 형태

주택형태는 한옥은 면 중심지가 57.1%, 중심마을(1)이 74.1%, 중심마을 (2)가 97.8%, 배후마을이 82.8%로 나타나고, 양옥은 면 중심지가 30.0%로 가장 높고, 아파트는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에서만 각각 12.9% 및 16.9%로 나타난다.

표 3-23 정주체계별 주택형태

단위: 동, %

	한 옥	양 옥	아파트	계
면중심지	287(57.1)	151(30.0)	65(12.9)	503(100.0)
중심마을(1)	140(74.1)	17(9.0)	32(16.9)	189(100.0)
중심마을(2)	128(97.8)	3(0.2)	0(0.0)	131(100.0)
배후마을	799(82.8)	166(17.2)	0(0.0)	965(100.0)
계	1354(75.7)	377(18.8)	98(5.5)	1788(100.0)

표 3-24 정주체계별 지붕형태

단위: 동, %

	초 가	함 석	스 레 트	콘크리트	기 와	계
면중심지	7(1.3)	5(0.9)	139(26.1)	209(39.2)	173(32.5)	533(100.0)
중심마을(1)	1(0.5)	0(0.0)	86(44.6)	41(21.2)	65(33.7)	193(100.0)
중심마을(2)	0(0.0)	10(7.6)	52(39.4)	1(0.7)	69(52.3)	132(100.0)
배후마을	10(1.0)	34(3.5)	442(45.5)	63(6.5)	422(43.5)	971(100.0)
계	18(9.9)	49(2.7)	719(39.3)	314(17.2)	729(39.9)	1829(100.0)

지붕은 기와의 경우는 면 중심지(32.5%)와 중심마을(1)(33.7%)이 중심마을(2)(52.3%)와 배후마을(43.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콘크리트는 그 반대로 면 중심지(39.2%)와 중심마을(1)(21.2%)이 중심마을(2)(0.7%)와 배후마을(6.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스레트는 면 중심지가 26.1%, 중심마을(1)이 44.6%, 중심마을(2)가 39.4%, 배후마을이 45.5%의 비율을 보인다.

기둥·벽 재료는 철근·콘크리트는 면 중심지(31.5%)와 중심마을(1)(17.7%)에서 많이 나타나고, 중심마을(2)(0.8%)와 배후마을(1.9%)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벽돌은 면 중심지(16.0%)와 중심마을(1)(6.8%)이 중심마을(2)(37.1%)와 배후마을(27.1%)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목조·흙벽은 면 중심지(37.3%)보다 중심마을(1)(54.7%), 중심마을(2)(47.7%), 배후마을(49.2%)에서 높게 나타난다.

부속건물은 면 중심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4.0%에 불과하

나 중심마을(1)(2), 배후마을은 각각 48.7%, 47.7%, 58.6%를 차지하여, 면 중심지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훨씬 낮다.

표 3-25 정주체계별 기둥·벽 재료

단위: 동, %

	철근·콘크리트	벽돌	시멘트블럭	목조·흙벽	계
면중심지	164(31.5)	83(16.0)	79(15.2)	194(37.3)	520(100.0)
중심마을(1)	34(17.7)	13(6.8)	40(20.8)	105(54.7)	192(100.0)
중심마을(2)	1(0.8)	49(37.1)	19(14.4)	63(47.7)	132(100.0)
배후마을	19(1.9)	264(27.1)	212(21.8)	478(49.2)	973(100.0)
계	218(12.0)	409(22.5)	350(19.3)	840(46.2)	1817(100.0)

표 3-26 정주체계별 부속건물(농기구, 창고, 축사)

단위: 동, %

	유	무	계
면중심지	112(24.0)	355(76.0)	467(100.0)
중심마을(1)	92(48.7)	97(51.3)	189(100.0)
중심마을(2)	62(47.7)	68(52.3)	130(100.0)
배후마을	555(58.6)	392(41.4)	947(100.0)
계	821(47.4)	912(52.6)	1733(100.0)

4 주택 규모

대지규모는 30평 이상의 경우 면 중심지가 45.7%로서 중심마을(1)(89.1%), 중심마을(2)(80.3%), 배후마을(72.1%)에 비하여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면 중심지의 대지규모는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택의 건축면적은 10평미만의 경우는 면 중심지가 20.8%를 차지하여 중심마을(1), (2), 배후마을의 각각의 비율은 3.7%, 10.7%, 6.4%에 비하여 훨씬 높다. 26평 이상의 비율을 보면 면 중심지가 20.1%, 중심마을(1)이 10.0%, 중심마을(2)가 6.1%, 배후마을이 15.0%를 차지하여 면중심지

가 상대적으로 높다. 면 중심지는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의 비율도 높고, 26평이상의 비교적 큰 주택의 비율도 높다.

표 3-27 정주체계별 대지규모

단위: 동, %

	10평미만	10~19	20~29	30~69	70평이상	계
면중심지	23(4.8)	69(14.2)	171(35.3)	133(27.5)	88(18.2)	484(100.0)
중심마을(1)	2(1.2)	10(6.2)	12(7.5)	35(21.7)	102(63.4)	161(100.0)
중심마을(2)	4(3.0)	7(5.3)	15(11.4)	50(37.9)	56(42.4)	132(100.0)
배후마을	29(3.1)	88(9.3)	146(15.5)	204(21.6)	476(50.5)	943(100.0)
계	58(3.4)	174(10.1)	344(20.0)	422(24.5)	722(42.0)	1720(100.0)

표 3-28 정주체계별 주택건축 면적

단위: 동, %

	10평미만	10~17	18~25	26~38	40평이상	계
면중심지	98(20.8)	95(20.1)	184(39.0)	47(10.0)	48(10.1)	472(100.0)
중심마을(1)	7(3.7)	42(22.0)	123(64.3)	14(7.3)	5(2.7)	191(100.0)
중심마을(2)	14(10.7)	41(31.3)	68(51.9)	8(6.1)	0(0.0)	131(100.0)
배후마을	59(6.4)	245(26.5)	486(52.5)	89(9.6)	46(5.0)	925(100.0)
계	178(10.4)	423(24.6)	861(50.1)	158(9.2)	99(5.8)	1719(100.0)

5 주택 편익시설

주택 편익시설을 살펴보면, 입식부엌의 경우 면 중심지가 53.1%, 중심마을(1)이 32.3%, 중심마을(2)은 19.5%, 배후마을은 23.4%로 나타나 면 중심지가 다른 마을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비율은 면중심지(28.2%)와 중심마을(1)(20.3%)에서 높게 나타나고, 중심마을(2)(3.8%)와 배후마을(3.0%)에서는 극히 적게 나타난다. 온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는 면 중심지, 중심마을(1)(2)이 각각 22.6%, 23.1%, 19.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배후마을은 8.6%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목욕탕이 있는 비율은 면 중심지(1)(27.0%), 중심마을(2)(29.2%), 배후마을

(16.2%)이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시설들의 비율을 평균한 기초 편익시설 수준은 면 중심지가 32.7%, 중심마을(1)이 26.2%, 중심마을(2)가 14.9%, 배후마을이 12.8%로 나타나 정주체계의 순서와 일치한다. 중심마을(1)과 중심마을(2)의 차이가 많은 것은 중심마을(1)이 면 중심지에서 보다 가깝고, 아파트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형 마을에 근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 편익시설 수준을 주덕면의 행정리별로 분류해 보면 M+0.5SD이상에 해당되는 마을은 면 소재지인 신양 1.2.4리, 면 소재지의 인접 마을인 청양리, 중심마을(1)에 해당되는 창전5리이다. 이들은 모두 면 소재지이거나 면 소재지에 인접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마을과는 전혀 다른 마을로서는 면 소재지에서 5.7㎞ 떨어져 있는 석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M～M+0.5SD에 해당되는 행정리는 기능지수상 중심성이 있는 중심마을(2)에 해당되는 풍덕과, 면 소재지 인접지역인 동산미와 마치가 포함되고, 주덕면 소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6.1㎞) 마을인 조동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위에서 보면 33개의 조사 대상 마을 중에서 10개의 마을이 기초 편익시설수준의 평균 이상이고, 그외의 나머지는 평균이하이다. 평균이하의 마을중에서는 면소재지 지역의 일부, 중심마을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동일 법정리내에서도 행정리간의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별 기초 편익시설 수준과 마을별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및 마을별 주택의 특성을 상관분석해보면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5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는 ① 가구주의 직업이 직장(회사원, 공무원, 유관단체임직원)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의 마을별 비율, 즉 비농업 종사자중에서 제조업 노동을 제한 마을별 비율이 높을수록 ② 81－89년 사이의 마을별 인구 감소율이 적을수록 ③ 81년 이후에 건축한 마을별 주택비율이 높을 수록 나타나고 있다. 부(－)의 상관관계는 ①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의 마을별 비율이 높을수록 ③ 주

표 3-29 정주체계별 주택편익 시설

	부엌			화장실			
	재래식	개량입식부엌	계	재래식	옥외개량	수세식	계
면중심지	235(46.9)	266(53.1)	501(100.0)	365(68.1)	20(3.7)	151(28.2)	536(100.0)
중심마을(1)	126(67.7)	60(32.3)	186(100.0)	143(74.5)	10(5.2)	39(20.3)	192(100.0)
중심마을(2)	103(80.5)	25(19.5)	128(100.0)	119(90.8)	7(5.4)	5(3.8)	131(100.0)
배후마을	728(76.6)	223(23.4)	95(100.0)	806(82.9)	137(14.1)	29(3.0)	972(100.0)
계	1,192(67.5)	574(32.4)	1,766(100.0)	1,433(78.3)	174(9.5)	224(12.2)	1,831(100.0)

	온수공급실			목욕탕			기초편익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시설수준
면중심지	116(22.6)	397(77.4)	513(100.0)	142(27.0)	384(73.0)	526(100.0)	32.7
중심마을(1)	43(23.1)	143(76.9)	186(100.0)	56(29.2)	136(70.8)	192(100.0)	26.2
중심마을(2)	26(19.8)	105(80.2)	131(100.0)	21(16.3)	108(83.7)	129(100.0)	14.9
배후마을	93(8.6)	874(90.4)	967(100.0)	158(16.2)	815(83.8)	973(100.0)	12.8
계	278(15.5)	1,519(84.5)	1,797(100.0)	377(20.7)	1,443(79.3)	1,820(100.0)	17.2

주) 기초편익시설 수준은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온수공급시설, 개량입식부엌이 있는 비율을 마을단위로 더하여 평균한 수치임.

표 3-30 주덕면 기초 편익시설 수준별 해당마을

수 준*	해 당 마 을
M+0.5SD 이상	창전5리(49.6), 청양(24.1), 신양1(29.3), 신양2(23.9), 신양4(75.8), 석우(24.1)
M ~ M+0.5SD	동산미(18.5), 마치(18.2), 풍덕(22.2), 조동(18.7)
M ~ M-0.5SD	창전1(14.5), 맹동(16.0), 신양3(9.0), 신양5(12.4), 신촌(16.3), 계막(12.3), 원화곡(14.2), 음동(14.5), 봉천(10.1), 유동(16.2), 창동(15.9), 원당우(10.8)
M-0.5SD 이하	창전4(1.4), 원대곡(6.5), 미락(7.9), 능촌(8.9), 묵동(5.7), 삼방(8.9), 원신중(5.7), 원사락(7.8), 매남(4.2), 성동(6.0), 원장록(7.9)

*M = 16.36 ; SD = 14·00

표 3-31 행정리별 기초편익 시설 수준과의 상관분석*

+	−
• 가구주의 직업이 직장 또는 상업 종사자의 마을별 비율(0.76421)	•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하의 마을별 비율(−0.83758)
• 81−89년 사이의 마을별 인구변화율(0.90889)	• 주택의 건평이 26평이상의 마을별 비율(−0.83719)
• 81년 이후 건설한 마을별 주택비율(0.83262)	• 주택형태가 한옥인 마을별 비율(−0.86689)

* 유의도: 0.05

택의 건평이 26평 이상의 마을별 비율이 높을수록 ③ 주택형태가 한옥인 마을별 비율이 높을수록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 편익시설수준이 낮다는 것은 전술된 바 있고, 주택의 규모가 26평 이상일수록 기초편익시설 수준이 −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농가가 비교적 규모가 크기때문이라고 보여지고, 한옥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 편익시설수준이 낮은 것은 한옥이 양옥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 편익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상관분석에서의 상관성이 높았던 주택의 건평이 26평인 비율과 주택형태가 한옥인 경우가 제외된다.

$$A = \underset{(2.09)}{29.33283} + \underset{(3.01)}{0.3932670}NA - \underset{(-2.05)}{0.3215788}ED - \underset{(-1.85)}{0.7689729}PC + \underset{(2.17)}{0.3061680}RB$$

$R^2 = 0.8058$ ( ): t값

A: 마을별 기초 편익시설 수준

NA: 가구주의 직업이 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마을별 비율

ED: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의 마을별 비율

PC: 81−89년 사이의 마을별 인구 변화율

RB: 81년 이후 건설한 마을별 주택 비율

그림 3-2 주덕면 행정리별 기초 편익시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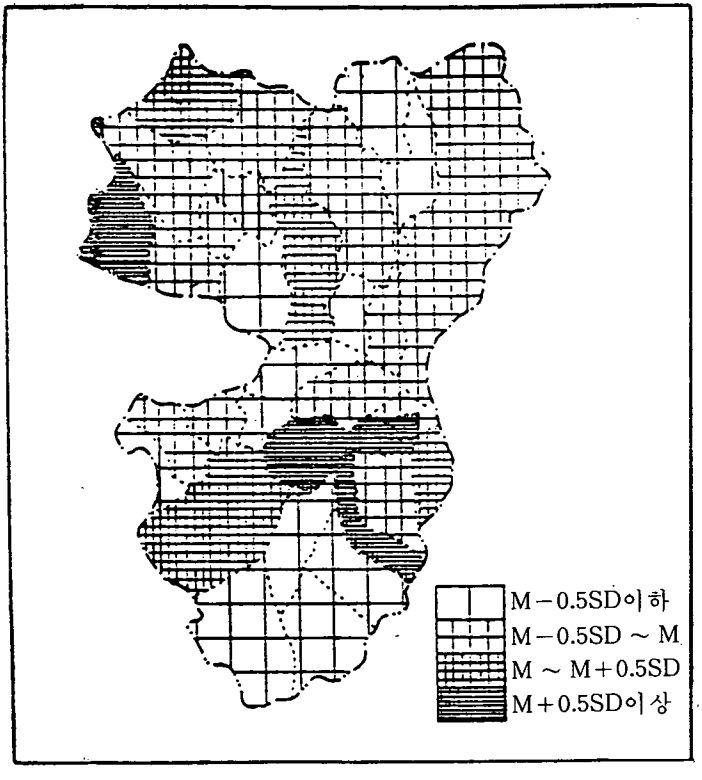

[6] 주택의 난방

정주체계별 난방방법은 장작(화목)은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2)에는 극히 적고, 배후마을에서만 195동, 20.0%를 차지하고 있다. 면 중심지와 중심마을(1)(2)의 장작(화목)을 대체하는 난방방법은 연탄 보일러가 일반적이고, 그중에서도 면 중심지는 석유보일러가 22.3%를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사연료는 여름의 경우 가스가 정주체계에 관계없이 82.5%이상의 높

표 3-32 정주체계별 난방방법

	장작(화목)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라	석유보일라	가 스	계
면중심지	12(2.2)	55(10.1)	356(65.1)	22(22.3)	2(0.3)	547(100.0)
중심마을(1)	11(5.7)	11(5.7)	162(84.4)	8(4.2)	0(0.0)	192(100.0)
중심마을(2)	11(8.3)	7(5.3)	101(76.5)	13(98)	0(0.0)	132(100.0)
배후마을	195(20.0)	118(12.1)	586(60.2)	71(7.3)	4(0.3)	974(100.0)
계	229(12.4)	191(10.4)	1205(65.3)	214(11.6)	6(0.3)	1845(100.0)

표 3-33 정주체계별 취사연료

구분	여름				계
	장 작	연 탄	석 유	가 스	
면중심지	5(1.0)	54(10.4)	3(0.6)	456(88.0)	518(100.0)
중심마을(1)	1(0.5)	7(3.7)	0(0.0)	180(95.7)	188(100.0)
중심마을(2)	0(0.0)	2(1.5)	8(6.1)	121(92.4)	131(100.0)
배후마을	59(6.7)	60(6.8)	36(4.1)	730(82.5)	885(100.0)
계	65(3.8)	123(7.1)	47(2.7)	1487(86.4)	1722(100.0)

	겨울				계
	장 작	연 탄	석 유	가 스	
면중심지	9(1.7)	196(36.3)	4(0.7)	331(61.3)	540(100.0)
중심마을(1)	6(8.9)	46(24.5)	2(1.1)	134(71.3)	188(100.0)
중심마을(2)	2(1.5)	3(2.3)	7(5.3)	120(90.9)	132(100.0)
배후마을	137(1.5)	198(21.2)	28(0.3)	573	936(100.0)
계	154(8.5)	443(24.7)	41(2.3)	1158(64.5)	1796(100.0)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겨울의 경우는 여름에 가스를 사용하던 주택의 일부가 연탄을 사용함으로써 연탄과 가스가 주종을 이룬다.

7 빈집 및 빈방의 발생.

농촌인구의 감소는 「빈 집」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이 살

지 않는 빈 집은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곧 폐허화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얼마 안가서 철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수는 계속적으로 「감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구원 전체가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자식들만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빈 방」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빈 방들은 세입자가 없는 농촌 실정에서 그냥 놀려두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로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의 감실, 빈 집 및 빈 방의 발생은 농촌마을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마을 전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정기환 외 1987 1988,) 주덕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90년 10월 현재 조사 대상 마을의 공가수는 72동에 달하고, 빈 방의 비율은 23.4%이다. 정주체계별 빈 방의 비율은 면 중심지가 18.8%, 중심마을(1)이 23.6%, 중심마을(2)가 24.5%, 배후마을이 25.3%로 나타나, 정주체계에 따라 빈 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라. 住民意思

주택 개량에 대한 주민 의사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덕면 주민은 집 전체 신축에 49.2%, 기초 편익시설에 41.5%가 응답하여, 전체의 90.7%가 집을 짓거나, 편익시설을 개량하기를 원하고 있다. 집 전체 신축을 과반수가 희망한다는 사실은 주덕면의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52%나 된다는 것과 부합되어 있다. 즉 신축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이 낡기 때문이며, 7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신축 이유는 생활이 편리하고 모양이 좋은 집을 짓기위해서로서 17.9%를 차지하고 그외의 것은 극히 적다. 그리고 기초편익시설을 개량하고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편익 시설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현격히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관심이 높아질것이라고 예상된다. 기초 편익시설 중에서도 입식부엌에 대한

표 3-34 마을별 빈방 비율 및 공가수

		방 수 (A)	사용방수 (B)	빈방수 (A-B)	빈방비율 ((A-B)/A)	공가수
면중심지	신양1구	285	224	61	21.4	0
	2구	406	355	51	12.6	2
	3구	112	102	10	8.9	0
	4구	366	268	98	26.8	2
	소 계	1169	949	220	18.8	4
중심마을1	창전5리	248	197	51	20.6	0
	4리	143	99	44	30.8	2
	1리	135	106	29	21.5	2
	소 계	526	402	124	23.6	4
중심마을2	성 동	137	115	22	16.1	3
	풍 덕	181	125	56	30.9	2
	소 계	318	240	78	24.5	5
배후마을	동산미	188	124	64	34.0	3
	맹 동	84	67	17	20.2	2
	원대곡	79	57	22	27.8	2
	청 양	83	64	19	22.9	1
	미 락	85	61	24	28.2	1
	능 촌	116	81	35	30.2	0
	묵 동	91	66	25	27.5	2
	삼 방	160	124	36	22.5	2
	마 치	149	123	26	17.4	3
	신 촌	201	172	29	14.4	4
	원신중	111	89	22	19.8	0
	계 막	114	89	25	21.9	3
	원화곡	114	90	24	21.0	3
	원사락	135	80	55	40.7	8
	매 남	62	56	6	9.7	4
	음 동	121	87	34	28.1	2
	원장록	98	73	25	25.5	3
	봉 천	109	61	48	44.0	1
	창 동	126	89	37	29.4	5
	조 동	74	53	21	28.4	0
	원당우	120	93	27	22.5	5
	유 동	121	100	21	17.4	2
	석 우	77	57	20	26.0	3
	소 계	2618	1956	662	25.3	61
	총 계	4631	3547	1084	23.4	72

표 3-35 현재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

	빈 도	비 율
ㅇ 집전체 신축	631	49.2
ㅇ 기초편익시설	532	41.5
-입식부엌	(357)	(27.8)
-수세식변소	(97)	(7.6)
-목욕시설	(78)	(6.1)
ㅇ 상, 하수도	33	2.5
-상수도	(12)	(0.9)
-하수도	(21)	(1.6)
ㅇ 지붕개량	41	3.2
ㅇ 기 타	45	3.5
계	1282	100.0

수요는 27.8%로서 수세식 변소(7.6%)나 목욕시설(6.1%)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고치고 싶은 곳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에 62.0%, 집이 아직 쓸만하다에 19.6%가 응답하여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도시 등으로 이주할 계획이 7.7%, 나이가 많아서가 6.5% 재산가치에 도움이 안된다가 4.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고, 기초 편익시설도 열악하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하여 오늘의 농촌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주변마을과 통폐합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라는 질문에 인근마을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없다가 60.2%이고, 인근마을과 통폐합하여 이전시켜도 좋다가 9.6%, 옮기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가 30.2%를 나타낸다. 이를 정주체계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면 소재지나 중심마을(1)에 비해서 중심마을(2)나 배후마을에서 집을 옮겨 짓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즉 농업적 성격이 강한

표 3-36 신축을 한다면 그 이유는

	빈 도	비 율
집이 낡아서	608	74.9
생활이 편리하고 좋은 집을 선호	145	17.9
자녀의 결혼등을 위해서	31	3.8
주택개량 대상이 되어서	28	3.4
계	812	100.0

표 3-37 고치고 싶은 곳이 없다면 그 이유는

	빈 도	비 율
경제적 여력이 없다	485	62.0
집이 아직 쓸만하다	153	19.6
도시 등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60	7.7
나이가 많아서	51	6.5
재산가치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	33	4.2
계	782	100.0

마을이 주택을 옮기는 문제에 더 보수적인 성향을 타나내고 있다. 그런데 배후마을은 인근마을과 통폐합하여 이전시켜도 좋다고 대답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농업적 중심마을(2)도 면 소재지나 중심마을(1)에 비하여 이전시켜도 좋다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반면에 옮기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신축성있게 대답한 경우는 면소재지나 중심마을(1)이 훨씬 높다. 각 마을들의 특성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3-38 주변 마을과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구 분	인근마을로 집을 옮겨지을 수 없다	인근마을과 통혜합 하여 이전시켜도 좋다	옮기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계
면소재지	92 (34.1)	7 (2.6)	171 (63.3)	270 (100.0)
중심마을(1)	92 (57.9)	1 (0.6)	66 (41.5)	159 (100.0)
중심마을(2)	114 (88.4)	12 (9.3)	3 (2.3)	129 (100.0)
배후마을	554 (64.6)	116 (13.5)	188 (21.9)	858 (100.0)
계	852 (60.2)	136 (9.6)	428 (30.2)	1416 (100.0)

마. 問題点

[1] 개별주택

가) 주택건축연수가 오래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너무 높다. 그리고 건축연수가 오래된 농촌 노후주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소득이 낮은 농업종사자가 보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 형태는 아직도 한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레트 지붕이 많이 남아있고, 목조, 흙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즉 한옥의 모양에 스레트 지붕과 목조·흙벽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주택이 많다. 이는 농촌주택의 미관, 안정, 단열 등에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농촌주택에는 10평 미만의 영세규모의 주택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다.

라)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공급 및 목욕시설이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직업이 농업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의 기초 편익시설 수준은 낮다.

마) 농촌주택의 난방은 연탄 또는 석유 보일러가 대종을 이루고, 주택의 취사연료는 여름의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고 겨울의 경우는 가스와 연탄을 겸용하고 있다. 농촌주택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2] 정주체계별 주택

가) 노후주택은 면 중심지나 중심마을(1) 보다는 중심마을(2)나 배후마을에서 높게 나타나며, 81년 이후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나) 자가의 비율도 면 중심지나 중심마을(1)보다는 중심마을(2)나 배후마을에서 높게 나타나며, 임차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배후마을의 경우에도 임차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 면 중심지의 경우는 도시적 형태의 주택(양옥, 아파트, 부속사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동시에 농촌형 주택(한옥 부속사있음)도 복합되어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배후마을이라고 해서 순수 농가형의 주택만 있는 것도 아니다.

라) 대지규모는 농촌 면 중심지의 경우는 다른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 배후마을에 비해서 작다. 면 중심지는 소형주택의 비율이 높고, 26평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도 많다. 농촌 중심지에서는 어느 일면에서는 주택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마) 기초 주거 편익시설수준은 행정리별로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면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초 편익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가구주의 직업, 마을별 인구변화율, 81년 이후의 주택 건설비율, 가구주의 학력으로 나타난다.

바) 정주체계별로 주택 난방 및 취사연료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통

적인 장작(화목)에 의한 난방은 배후마을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그외의 지역은 연탄 또는 석유 보일러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취사연료는 마을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연탄과 가스를 사용하고 장작(화목)에 의한 취사는 사라지고 있다.

사) 마을별 인구감소에 따라 주택 감실, 공간 및 빈방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는 마을 통폐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배후마을일수록 주택 이전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임에 비추어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 주택 신축 또는 주택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주택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住居空間 改善을 위한 政策方向

가. 農村住宅 改善을 위한 획기적 財政 支援方案 講究

현재 내무부가 새마을사업의 범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정책은 첫째 개별 농촌주택을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 있고, 둘째는 개별 농촌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농촌마을의 취락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개선하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있으며, 셋째는 개별 농촌주택의 일부분 즉 부엌, 변소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다. 이중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1976년 이후에 본격화되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농촌주택부분 개량사업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980년 이후 중점화된 불량 변소 개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주택 개선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표 3-39〉와 같으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경우는 지원 개량과 자력 개량의 비율이 비슷하고, 취

락구조개선사업은 기존마을의 일부분의 불량주택을 개선하면서 취락구조의 개선을 수반하는 B형이 7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B형과 C형은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취락구조 전체의 개선 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많이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주택 개량과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가 융자, 보조, 지원한 사업비만 고려한다면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비의 13.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농촌주택 정책은 주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그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투자추세를 살펴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1978년에 138,000백만원을 융자 또는 보조하여 50,000동의 주택개량을 한 이래 계속해서, 82년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86, 87년의 경우는 연간 5,000동 정도를 지원 개량하고 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도 1979년에 17,073백만원

그림 3-3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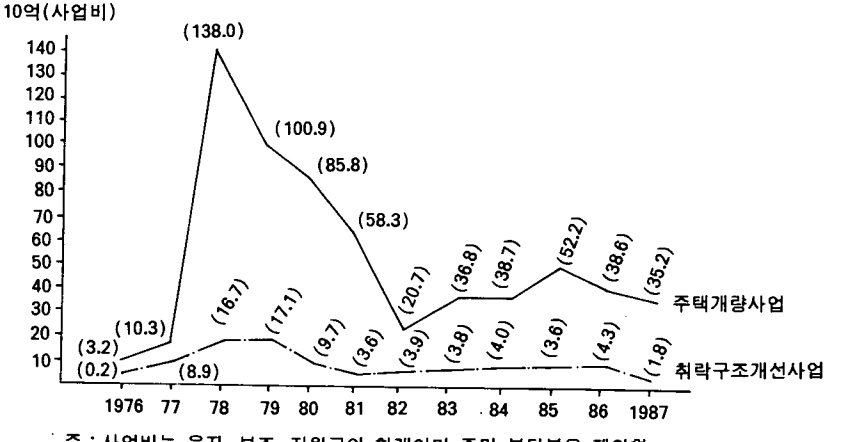

주 : 사업비는 융자, 보조, 지원금의 합계이며 주민 부담분은 제외함

표 3-39 농촌 주택 개선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 농촌주택 개량사업 (1976-1987)	767,412 (569,036)	325,987동	1) 지원개량: 165,148(50.7%) 2) 자력개량: 160,839(49.3%)
• 취락구조 개선사업 (1976-1987)	178,240 (77,064)	3,495동	3) A형: 870(24.9%) 4) B형: 2,534(72.5%) 5) C형: 91(2.6%)
• 농촌불량변소개량사업 (1980-1987)	111,944	265,000동	

( ) 안의 사업비는 정부의 융자, 보조, 지원금임.
1)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주택 개량.
2) 융자금 지원없이 자력으로 개량.
3) 새로운 택지에 주택을 이전하여 새로운 마을을 구성.
4) 기존 마을의 1/2-1/3정도에 해당되는 불량 주택을 개량.
5) 기존 마을의 5-6동 정도의 불량 주택을 개량.
자료: 내무부, 1988.

지원하여 1,02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한 이래 감소하여 81년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를 보이고 있으나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량은 줄어들고 87년에는 60개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 (하성규, 윤원근 1989, 110-111).

그러나 이와같은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규모로서는 현재의 농촌 노후주택과 주택 편익시설을 제고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에 의한 연간 5,000동 정도의 주택 개량 동수는 1개면의 노후주택을 매년 3-4동 정도 개량할 수 있는 물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덕면의 조사 대상 주택중 건축연수가 30년 이상된 주택 806동을 연간 5동씩 개량한다고 했을때, 전체를 모두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무려 160여년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주택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농촌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질 전망이고 계속해서 정주성은 상실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융자, 보조, 세제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경상북도 1990, 139－142).

첫째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비의 융자이율과 융자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내무부의 주택 개량 자금은 연금리 8%수준으로 가구당 10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림수산부의 정주생활권 시범단지내의 주택개량과 국민 주택 건설 자금중 임대 주택건설의 연금리 5%보다는 높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부의 주택 개량사업은 금리는 낮은 반면에 융자조건은 내무부의 그것에 비하여 불리하다. 따라서 내무부의 주택개량자금의 금리수준은 5%로 하향조정하고, 농림수산부의 융자조건은 내무부의 조건과 비슷하게 일치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액이 90년부터는 10백만원을 한도로 20평기준 625천원을 책정하여 건축비의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실 건축비의 6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최소한 실 건축비의 80%까지 융자액 지원이 확대되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

세째 농촌주택의 기초 편익시설 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점을 감안하여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공급 목욕탕시설 등에 대해서 농촌주민이 설치를 원할경우 거의 무제한의 장기저리융자 또는 보조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융자금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부엌개량 및 목욕탕 설치의 금리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금리수준인 5%로 동일하게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융자조건도 똑같은 편익시설인데 부엌개량과 목욕탕설치의 융자조건이 왜 달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소개량의 보조금의 액수도 실 건축비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의 기초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 특히 입식부엌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은 점도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 3-40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제 감면 기준

세종	세별		감면대상	감면액	대상사업
	기준	세율			
등록세		20/1000	○건축연면적85㎡이상 ○토지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이내	전액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취득세	농지 기타		〃	〃	〃
재산세	과표 700만원 미만	3/1000	〃	5년간	〃
	과표 700만원 이상	5/1000			

자료: 경상북도 1990

네째는 지방세감면 특별법에 의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가구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향후 5년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다〈표 3-40〉. 그러나 건축 연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와 부속 토지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면세상한선이 25.7평미만인 경우 농촌주택이 특수한 부속사의 합법적인 신·개축이 곤란해지게 된다. 따라서 부속사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속사 건축물 자체의 규모에 따른 별도의 건평기준을 마련하거나 건축연면적 면세상한선을 최소한 99㎡(30평)으로 올려야 한다(경상북도 1990. 142)

다섯째 무엇보다도 부처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규모를 현재의 노후주택과 열악한 기초 편익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 農村 家口의 特性을 고려한 住宅政策 立案

농촌주택중에서 노후화되고 기초 편익시설 수준이 낮은 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인층,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내무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읍·면지역 및 도시 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어가와 위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시장, 군수가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의 농촌정책은 융자금과 담보를 해결할 수 있는 가구만을 대상을 하고 그외의 농촌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지금의 주택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주택개량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적 능력의 부족때문에 주택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주택신축 또는 기초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요는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소득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소득 계층에 알맞게 주택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시장메카니즘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지불 의사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住宅需要集團(Housing Demand)과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사회적, 주거복지 및 주택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住宅所要集團(Housing Needs)을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말한다(하성규·윤원근 1989, 118). 그리하여 농촌주택소요집단에 도시지역의 영세민들에게 해당되는 공공주택의 정책적 배려와 다를바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농촌지역에도 농촌 영세민을 위한 농촌 임대주택 건설 등을 면소재지 또는 중심마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에는 노인층, 부녀자층이 많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주택 정책 변수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과 부녀자가 살기에 적합한 새

로운 주택형태의 설계가 요구될 것이다.

다. 農村 中心마을과 背後마을에 대한 住宅政策의 差別的 接近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농촌지역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시와의 거리, 농업 발전 수준, 농업형태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같이 주택 노후도 및 기초 편익시설은 배후마을이 농촌 중심지(면 소재지)나 중심마을에 비하여 더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농업중에서도 일반 농가는 기초 편익시설의 측면에서 과수·축산농가 보다도 열악하다.

그런데 1981－1988사이의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개량사업은 53.9%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74.5%가 국도·철도·고속도로변·관광지 등의 정책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각각 46%, 25.5%에 불과하다. 즉 현재의 농촌 주거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전시 행정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표 3－41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취락구조 개선의 입지별 특성, 1981～88

	계	고속도로변	국도변	철도변	관광사적지	기타
농촌주택 개량(동)	46.760 (100.0)	3,530 (7.5)	13,100 (28.0)	5,060 (10.8)	3,538 (7.6)	21,532 (46.0)
취락구조 개선(마을)	787 (100.0)	96 (12.1)	300 (38.1)	91 (11.6)	100 (12.7)	201 (25.5)

자료: 하성규, 윤원근(1989).

따라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지역과 가구의 특성에 알맞고, 그 지역과 가구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중심지 또는 중심마을 단위에서는 도시적 주택형태와 도시적 삶의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적 접근이 더 중시되어

야 할 것이다. 배후마을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나, 농업구조가 기계화를 축으로 한 상업농화를 지향할 때 배후마을에 살면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농업에 기반을 둔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 주택정책이 정책지역을 위주로 도시적 편익시설 중심의 일반 농가주택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후에는 농촌취락의 계층체계를 감안하여 농가형 주택, 비농가형 주택, 농가·비농가결합형 주택 등으로 세분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農村 마을 빈집·빈방 對策 樹立

농촌지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할때 개별 농촌마을은 그 입지적 특성에 따라 ① 인구 증가마을 ② 인구 유지마을 ③ 인구 감소 마을등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농촌 빈집은 인구감소 마을의 문제로서, 쓸만한 빈집은 임대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정비 불가능한 것은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책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화 공가발생이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더라도 현재의 농촌마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마을 정주체계를 구상하여 과소화된 마을을 모아서 집촌화 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하성규, 윤원근 1990, 115).

이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현재의 농촌마을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농촌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의 접근성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농촌 하부구조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다. 둘째는 위와 마찬가지의 인식 즉 농촌마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농촌마을을 분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러개의 마을을 연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결성하는 촌락 연합방식이 있다(류우익 1989, 56). 이는 기초자치단체 이하 계층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과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면단위의 연합은 너무 공간적인 단위가 크므로 국민학

교 학구단위로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면을 2-4개의 소단위 농어촌 공간단위로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촌락의 연합체와 그 중심지를 토대로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시설의 공공투자를 해나간다는 방법이다(전라남도 1990. 84). 세째는 소규모의 농어촌마을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공간 위에 일정규모의 새로운 마을을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마을의 물리적·공간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촌화의 규모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① 70~100호 규모 ② 200호 규모 ③ 300-400호 규모 등으로 다르다.

여기서는 위의 3가지 접근방식중의 어느 하나의 방안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농촌마을의 지역적 특성, 그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생각들이 다르고, 또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빈집대책의 수립과 아울러 빈방발생 문제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주택의 적정규모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第 4 章

生産空間 實態와 整備方案

1. 生産空間과 生産活動 實態

가. 生産空間의 現況

周德面의 생산공간을 보면 중앙부에는 남한강 지류인 堯渡川 兩岸에 발달한 넓고 저평한 평야부를 따라 基盤整理가 된 논이 集中되어 있다. 한편 중앙 平野部의 南北방향으로는 丘陵성 산지가 발달한 地形조건에 따라 山谷間 주변으로 谷間扇狀形의 논이 分布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밭이 不規則한 형태로 散在하고 있다.

耕地面積은 畓이 1,092*ha*, 田이 764*ha*로서 총경지면적은 1,956*ha*이다. 耕地率은 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 중 畓率은 59%로 나타나고 있어 면 전체로 볼때 平野地帶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南과 北의 溪谷部에 있어서는 그 지형지세로 미루어 複合的인 中間地帶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

農業基盤整備 상태는 중앙부의 평야지대의 경우는 耕地整理가 完備된

그림 4－1 주덕면의 생산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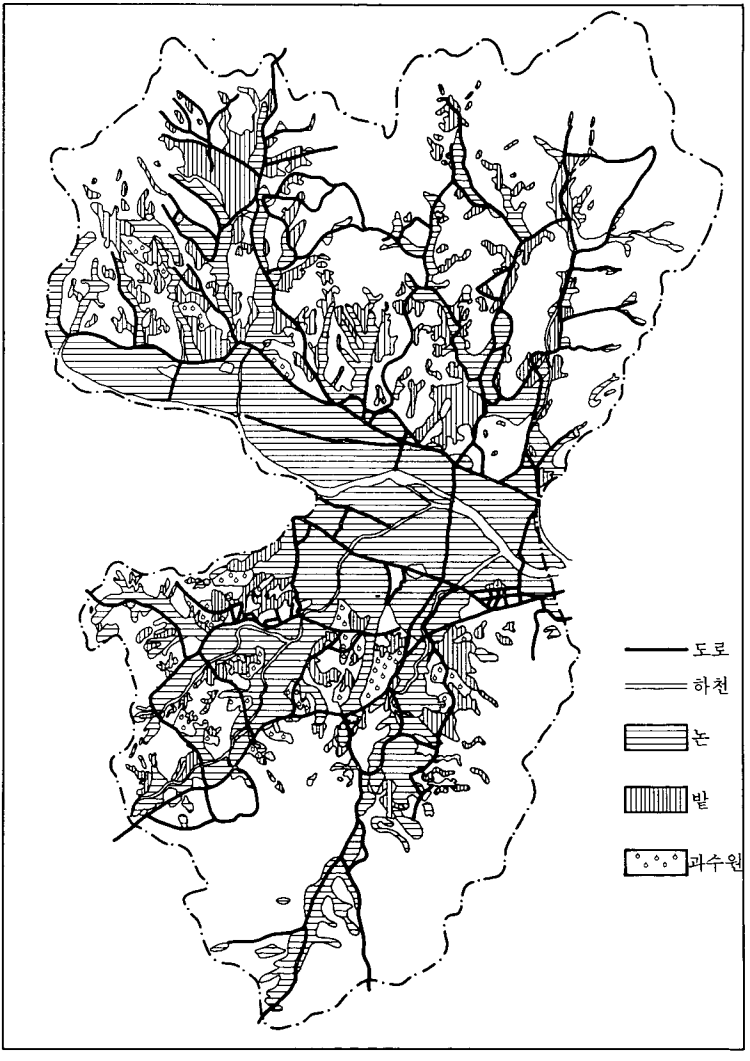

표4－1 주덕면의 토지 이용 현황

단위: *ha*

면 적	답	전	임 야	기 타
4,596	1,092	764	2,261	479
	(24%)	(17%)	(49%)	(10%)

자료: 주덕면

표 4-2 주덕면 경지정리 현황

총 면 적			경지정리면적			경지정리율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1,092*ha*	764	1,856	678	—	678	62.1%	—	36.1%

자료: 중원군

狀態이나 南北의 山谷間을 따라 分布하는 農耕地는 耕地整理가 되지 않은 不良農地의 狀態로 남아 있다. 耕地整理 狀況을 보면 678*ha*의 경지가 정리 된 것으로 나타나 총경지면적 대비 36.1%의 저조한 耕地整理상태를 보여준다. 이를 地目別로 보면 모두 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밭의 경우는 耕地整理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農業生産空間의 實態는 農業經營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지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의 하나이자 그 整備狀態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다른 생산要素의 投入量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 生産性을 높이는 데 決定的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나. 農業生産活動

農業經營의 能率化를 결정짓는 중요한 條件의 하나인 生産空間의 整備문제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農業生産活動과의 相互關聯하에서 考慮되어져야 한다. 농경지의 조건이 전제되었다고 본다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農業生産활동은 크게 노동력 수준, 기술수준, 그리고 가격수준 등에 의해 조건지워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기술수준은 일정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것으로, 그리고 가격수준은 현실적으로 진폭이 커서 매우 불안정한 조건으로 간주한다면 결국 현실의 농업생산활동은 노동력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4－2 주덕면의 농업 여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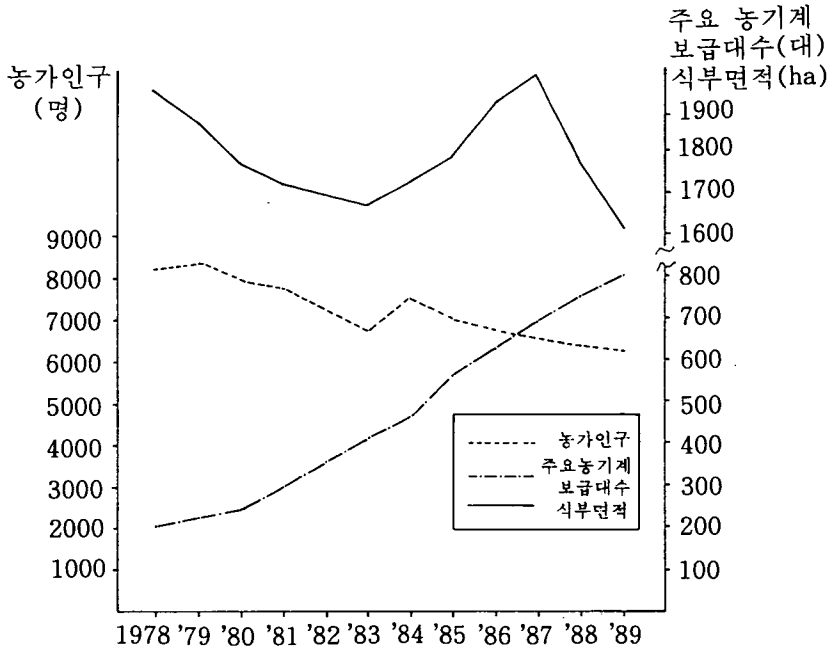

자료 : 중원군 통계연보, 각년도

주덕면의 農業生産活動 變化趨移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 一般農村이 經驗하고 있는 勞動力의 문제를 그대로 露呈하고 있다. 즉 經濟成長에 따른 여러가지 變化와 調整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農業部門에서는 오랫동안 그 발전의 기본적 제약요인이 되어 왔던 過剩人口의 부양압력과 失業問題가 최근에 勞動力 不足問題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分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周德面의 農家人口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8年 8,190명 이었던 농가인구가 1988年에는 6,35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농 위주의 농업구조하에서 농가인구의 감소는 바로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農業勞動力 不足現象에 대처하여 農業機械化 수준은 꾸준히

표 4-3 주덕면 농업생산(경종)활동 변화 추이

연도	가구수	인구수	농가수	농가 인구수	경지 면적(ha)			식부면적 (ha)					경지 이용율 (%)	주요 농기계 보급 (대)					
					계	논	밭	계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인삼, 연초 기 타		계	경운기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1978	2.169	11.256	1.578	8.190[2]	1.887	1.095	792	1950.6	1672.2	117.5	28.9	132	103.4	204	198	1	4	1	–
1979	2.123	10.970	1.670	8.308[2]	1.840	1.100	740	1.876	1534.3	177.7	30.9	133.1	102.0	225	215	1	7	2	–
1980	2.243	11.007	1.628	7.993[2]	1.840	1.100	740	1771.9	1350.9	248.8	57.1	115.1	96.3	245	223	1	19	2	–
1981	2.199	11.097	1.515	7.767	1856.5	1091.9	764.6	726.68	1350.5	259.1	39.1	77.98	93.0	300	265	1	32	2	–
1983	2.179	10.143	1.533	6.747	1846.2	1086.3	759.9	1675.64	1335.3	184.8	78.6	76.94	90.8	415	367	5	39	4	–
1984	2.212	10.134	1.368	7.520	1.847	1086.0	761.0	1726.4	1350.2	189.3	108.6	78.3	93.5	462	407	8	40	7	–
1985	2.292	10.063	1.609	7.052	1.847	1086.0	761.0	1785.59	1359.8	227.7	118.6	76.49	96.7	569	478	13	70	8	–
1986	2.316	9.733	1.609[1]	6.758[2]	1.945	1.180	765	1920.06	1391.4	305	151.1	72.56	98.7	628	505	12	96	15	–
1987	2.237	9.253	1.609[1]	6.661[2]	2.038	1.180	858	1989.86	1460.4	265.7	189.3	74.46	97.6	692	535	16	119	18	4
1988	2.279	9.005	1.609[1]	6.356[2]	1.748	1.130	610	1777.06	1368.4	134	205.2	69.46[3]	101.7	751	550	16	135	27	23
1989	2.304	9.017	1.593	6.229[2]	1.856	1.092	764	1619.36	1327.5	122	109.4	60.46	87.3	802	563	23	138	35	43

[1] 통계누락연도의 농가수는 전년도 농가수를 그대로 적용

[2] 통계누락연도의 농가인구는 각 연도 가구당 인구수를 농가구당 인구수로 적용하여 산출함

[3] '89년 인삼·연초 경작면적은 전년도 식부면적을 적용하였음

[4] 1989년의 자료는 행정기관(군, 면)의 자료로 발표된 것이 아님

向上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主要農機械의 普及을 보면 최근으로 오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78년에 주요농기계 보급실적이 204대에 불과 했으나 1988년에는 751대, 1989년에는 802대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운기 중심의 普及패턴이 최근으로 오면서 트랙타, 콤바인 등 大型 農機械의 普及이 크게 늘어나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밭농사용 농기계인 관리기는 1987년에야 겨우 普及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와서야 普及臺數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밭농사에 대한 機械化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정부의 農業機械化 政策이 쌀농사에 치중되어 온 결과 밭기반정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경지조건이 기계작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농업기계화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업노동력 감소에 의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농업노동력의 수급조건에 괴리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감당할 수 있는 농업생산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농지이용의 조방화 현상을 결과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덕면의 농지이용실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주덕면의 농지이용 변화 추이를 보면 1978년에 1,950.6*ha*에 이른 植付面績이 1988年에는 1,777*ha*로, 1989년에는 1,619*ha*로 줄어들어 耕地利用率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問題点: 空間 단위로 본 農業勞動力 實態

農業勞動力不足의 실상을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해 倉田里를 事例地域으로 선정하여 農業勞動의 實態를 調査하였다. 여기서 倉田里를 사례지역으로 選定한 것은 周德面의 생산공간與件이 대개 비슷하여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였고 또한 경지정리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農業勞動力의 不足問題와 生產空間의 未整理問題가 연관을 가지면서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實證分析을 위한 事例地域에도 倉田里를 그 對象으로 한다.

표 4-4 사례지역 농업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 령	남	여	계
19세 이하	4 (3.3)	2 (1.8)	6 (2.6)
20-54세	80 (65.6)	59 (53.6)	139 (59.9)
55세 이상	38 (31.1)	49 (44.6)	87 (37.5)
계	122 (100.0)	110 (100.0)	232 (100.0)

자료: 현지조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農業勞動力 條件은 老齡化되고 婦女化된 현상을 보인다. 倉田里의 경우 農業에 종사하는 農業就業者數는 總 232名으로 나타나는 데 성별구성을 보면 男子가 122명, 女子가 110명으로 나타나 婦女子의 比重이 절반에 가까운 47.7%에 이르고 있다. 年齡階層別로는 正常的인 農業活動이 可能하다고 여겨지는 20~54세에 해당하는 農業從事者가 139명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는 한편 55세 이상인 老齡의 農業從事者가 87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

老齡化되고 婦女化한 農業勞動力의 實態는 農業人口의 減少에 따른 勞動力의 量的인 문제에 더하여 質的低下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量的으로 質的으로 低下된 農業勞動力 條件으로 實際 遂行하는 農業生産活動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례지역에 대해 영농활동에 투하된 노동투입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는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의 觀點에서 勞動力 條

1) 1989년 전국의 경우에서 농가인구 성별구성비를 보면 女子가 51.3%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계층별 농림어업취업자 구성은 20~55세 연령층이 63.2%로서 창전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55세이상 노령층은 36.0%로서 사례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표 4-5 연간 노동투입시간* 분석

단위: 시간, %

영농유형 / 지 역	경 종	과 수	축 산	계
창천5리	33,883 (37.2)	28,155 (30.9)	29,029 (31.8)	91,067 (100.0)
창전4리	43,234 (55.1)	8,630 (11.0)	26,535 (38.9)	78,399 (100.0)
창전1리	43,180 (47.3)	37,145 (40.7)	10,897 (12.0)	91,222 (100.0)
계	120,297 (46.1)	73,930 (28.4)	66,461 (25.5)	260,688 (100.0)

* : 연간 총노동투하시간은 면에서 조사한 식부면적과 사육두수에 근거하여 단위당 투하노동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충청북도편), 1990.

件과 農業生産活動과의 關係를 파악함으로서 일정공간단위에서 본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農業生産活動의 能率化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營農形態別 연간 總勞動投入時間 分析에 의하면 1989년 창전리의 경우 연간 총 260,688시간[2]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경종부문이 46.1%로서 가장 많은 勞動力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果樹와 畜産은 각각 28.4%, 25.5%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結果로 미루어 볼 때 勞動力 不足現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耕種部門에 대한 勞動力 需要를 경감시켜 주는 方向으로 接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月別로 勞動投下時間을 分析한 결과를 보면 季節的으로 勞動力需要의 不均衡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5월, 6월 및 10월의 勞動投下時間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1월, 2월, 3월 및 11월, 12월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作物別 및 영농형태별로 보면 果樹 및 畜

2) 연간 총 노동투입시간 분석결과는 일부작물의 식부면적이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대규모 축산전업농가의 사육두수를 제외하고 산출한 개략적인 수치이므로 실제 노동투입시간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표 4－6 사례지역의 품목별·마을별 연간노동 투하시간 분석표

리별 / 품목	창전5리			창전4리			창전1리			계		
	식부면적 (사육두수)	단위당 투하노동시간	총노동 투하량	식부면적 (사육두수)	단위당 투하노동시간	총노동 투하량	식부면적 (사육두수)	단위당 투하노동시간	총노동 투하량	식부면적 (사육두수)	단위당 투하노동시간	총노동 투하량
쌀	2,030*	65.4시간/10a	13,276	4,030	65.4시간/10a	26,356	3,420	65.4시간/10a	22,367	9,480	65.4시간/10a	61,999
두류	810	80.4시간/10a	6,512	720	80.4시간/10a	5,789	780	80.4시간/10a	6,271	2,310	80.4시간/10a	18,572
서류 (감자기준)	10	137.3시간/10a	137	10	137.3시간/10a	137	30	137.3시간/10a	412	50	137.3시간/10a	686
잡곡 (팥기준)	30	73.3시간/10a	220	100	73.3시간/10a	733	30	73.3시간/10a	220	160	73.3시간/10a	1,173
고추	308	260.8시간/10a	8,033	205	260.8시간/10a	5346	160	260.8시간/10a	4173	673	260.8시간/10a	17,552
참깨	243	116시간/10a	2819	224	116시간/10a	2599	522	116시간/10a	6,055	989	116시간/10a	11,473
땅콩	–	132.5시간/10a	–	2	132.5시간/10a	27	52	132.5시간/10a	689	54	132.5시간/10a	716
가을무우	18	121.5시간/10a	219	15	121.5시간/10a	182	20	121.5시간/10a	243	53	121.5시간/10a	644
가을배추	30	162.6시간/10a	488	23	162.6시간/10a	374	33	162.6시간/10a	537	86	162.6시간/10a	1,399
호박	30	191시간/10a	573	23	191시간/10a	439	33	191시간/10a	630	86	191시간/10a	1642
마늘	68	236.2시간/10a	1,606	53	236.2시간/10a	1,252	67	236.2시간/10a	1583	188	236.2시간/10a	4441
사과	720	375.2시간/10a	27014	230	375.2시간/10a	8630	990	375.2시간/10a	37.145	1940	375.2시간/10a	72,789
복숭아	33	345.9시간/10a	1,141							33	345.9시간/10a	1141
한우	23*	300.5시간/두	6,912	29	300.5시간/두	8,715	31	300.5시간/두	9,316	83	300.5시간/두	24,943
돼지	12*	61.1시간/두	733				25	61.1시간/두	1527.5	4092	61.1시간/두	2260.5
닭	12000*	178.2시간/100수	21,384	10000	178.2시간/100수	17,820	30	178.2시간/100수	53	22,030	178.2시간/100수	39,257

그림 4-3 사례지역의 월별 노동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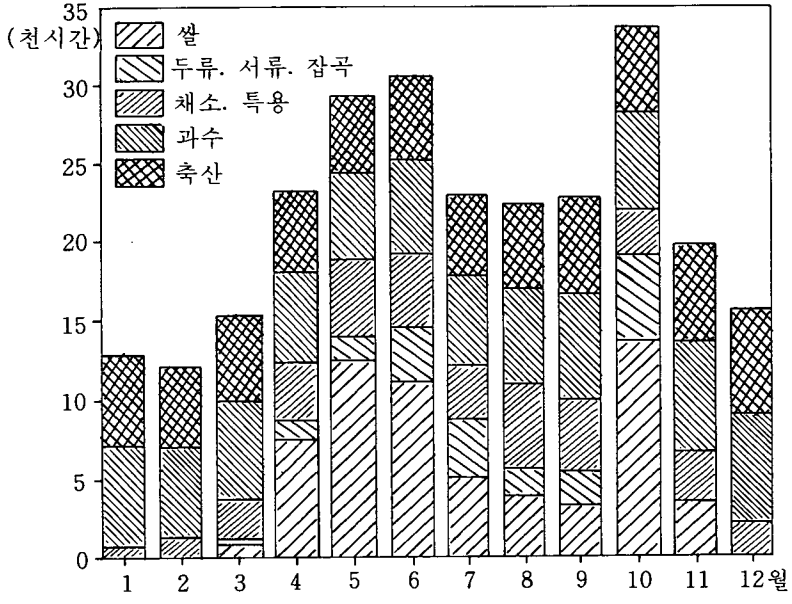

주 : 1) 노동투입시간은 작물별 식부면적과 사육두수조사결과에 단위당 투하노동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2) 월별 노동투하시간은 중간지대의 농가당 작물별, 월별 투하노동시간 비율을 적용하였음.
3) 축산의 월별 투하 노동시간은 연중 평균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았음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충청북도편), 1990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90

産部門의 경우는 연중 勞動力需要가 比較的 安定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耕種部門은 月別로 振幅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쌀농사의 勞動力需要가 季節的으로 크게 차이나는 데 기인한다.

또한 耕種部門중에도 畜作과 田作間에 단위당 勞動投下時間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전리 사례지역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10a당 논농사의 경우 투하노동시간이 65.4시간으로 나타나는 반면 밭농사는 논농

표 4-7 사례지역의 월별 품목별 노동투하시간 분석표

	쌀		잡곡		두류		서류		채소(고추, 마늘, 호박, 무우, 배추)		기타경종 (참깨, 땅콩)		기타농업(과수)		축산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총투하노동시간	100.0%	61,999	100.0%	1173	100.0%	18,572	100.0%	686	100.0%	25,678	100.0%	12,189	100.0%	73,930	100.0%	66,461
1월	0.1	62	0.3	4	0.1	19	0.7	5	2.5	642	1.1	134	8.6	6358	8.3	5538
2월	0.1	62	3.3	39	0.1	19	2.3	16	3.8	976	2.6	317	7.6	5619	8.3	5538
3월	1.6	992	15.8	185	0.6	111	7.5	52	6.3	1618	7.3	890	8.1	5988	8.3	5538
4월	12.1	7,502	14.5	170	5.1	9.47	10.8	74	10.1	2593	9.0	1097	7.7	5693	8.3	5538
5월	20.2	12,524	9.1	107	6.8	1263	11.4	78	13.2	3389	13.2	1609	7.4	5471	8.3	5538
6월	18.0	11,160	17.2	202	16.8	3120	15.6	107	11.6	2979	13.7	1670	8.1	5988	8.3	5538
7월	8.4	5,208	6.7	79	18.3	3399	14.2	97	6.5	1669	14.0	1706	7.7	5693	8.3	5538
8월	6.6	4,092	9.3	109	7.9	1467	12.4	85	14.0	3595	14.1	1719	8.1	5988	8.3	5538
9월	5.6	3,472	8.2	96	10.3	1913	5.0	34	13.0	3338	9.4	1146	9.1	6728	8.3	5538
10월	22.0	13,640	11.2	131	28.2	5237	14.0	96	8.0	2054	7.2	878	8.3	6136	8.3	5538
11월	5.0	3,100	3.3	39	4.8	891	6.1	42	7.8	2003	5.4	658	9.3	6875	8.3	5538
12월	0.4	248	1.2	14	1.0	186	0.1	1	3.2	822	3.1	378	10.0	7393	8.3	5538

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125.4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미작과 전작간의 기계화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즉 밭의 경우는 기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논농사용 농기계의 보급은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한 수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 나타나는 현실적인 영농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창전리 사례지역의 경우 90년 현재 밭농사용 농기계인 '관리기'의 普及이 5대에 불과한 現實에 잘 反映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때 農業勞動力의 不足問題는 勞動力需要의 季節的 不均衡解消와 作物別 특히 田作物에 대한 投下勞動時間을 감소시키는 方向에서 接近되어야 하겠다. 결국 農業勞動力 條件에 상응하는 營農條件을 갖추기 위해서는 機械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즉 農繁期에 노동력수요를 급증하게 하는 주요인인 쌀農事에 대한 投下勞動時間을 경감시키기 위해 稻作機械化를 가속화하는 한편 單位당 勞動投下時間이 논농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밭作物의 勞動力 需要를 감소시키기 위한 田作의 機械化가 積極的으로 導入·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勞動力 需要의 年中 平準化를 圖謀하고 또한 단위당 勞動投入時間의 節減을 유도함으로써 勞動力 條件變化에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겠다.

표 4-8 미작과 전작간의 단위당 노동투하시간 비교(창전리)

	식부면적	투하노동시간	10a당 투하노동시간
논농사	9,480a	61,999시간	65.4시간
밭농사	4,649a	58,298시간	125.4시간

2. 生産空間 整備 課題

變化하는 農業與件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고 勞動力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農業經營의 現實的 애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農業의 機械化가 先行되어야 함을 앞에서 보았다. 農業의 機械化는 農業生産空間의 整備를 전제로 한다. 즉 機械化 作業은 그것이 使用되는 農耕地條件이 機械利用에 적합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가능함은 물론 農機械作業 效率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作業對象 耕地가 集團化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農家에서 가까운 거리에 位置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生産活動이 크게는 生活活動의 一部分을 이루고 있다는 맥락에서 볼때 生産空間整備는 生活空間과 連繫하여 推進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業生産空間整備 課題로서 ①營農機械의 효율적 이용 및 현실의 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적정 생산공간 범위로서의 營農圈의 설정 ②耕地의 整型化 및 規模化 ③耕作地의 集中化 ④生活活動空間과 統合整備 等을 提示하고자 한다.

가. 營農圈域別 接近

農業의 본질은 순수한 의미의 私的 獨立經營의 小經營的 生産樣式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을에 의해 매개되고 補完되는 私的 經營의 農業體制라고 이해된다. 그것은 물의 共同利用·管理가 水利農業의 基礎條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稻作權漑農業에서의 私的生産은 마을共同體的 營農과의 관련하에서 중층적으로 存立한다.

이러한 現實에 입각하면 生産空間整備는 個別 農家單位의 生産力을 촉진시켜가면서, 동시에 生産基盤이 지니는 공동체적 性格에 基礎한 營農協同圈[3]單位로 接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個別 農家單位 接

近에서 오는 非效率性을 제거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농기계의 個別的 利用이 소위 過剩投資를 유발하여 機械化 貧乏으로 귀결되는 경우 共同利用組職을 통하여 投資의 비효율성을 除去할 수 있으며 또한 個別 農家單位에서 겪고있는 勞動力의 不足現象을 영농협동권내에서 노동력의 상호교환촉진을 통해 완화함으로서 결과적으로 生産性을 向上시킬 수 있다.

따라서 生産活動에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共同體的 性格에 의거하여 生産基盤整備를 營農協同圈 단위로 접근함으로서 만이 개개圈域이 갖는 特性에 적합하게 整備될 수 있겠다.

관념적인 圈域개념이 一定 地域單位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一定의 限界와 範圍를 가지는 空間이고 다음은 他圈域과의 사이에 境界를 갖는 範域이 確認되어져야 한다. 통상 營農協同圈의 實證에는 出作入作의 有無를 確認하는 方法을 많이 使用한다.

事例地域(倉田里)에 있어서 耕作範圍 分析 結果를 보면 耕作地(自耕및 賃借地)는 耕作者가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分布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작자가 거주하는 同一地域(倉田里法定部落)內에 耕作地가 分布하는 比率이 논의 경우는 全體耕作地의 85.6%, 밭의 경우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4] 사례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倉田4리의 경우는 이러한 傾向을 더욱 뚜렷히 보여준다. 倉田4리 農家의 耕作地 중 논의 경우는 96%, 밭의 경우는 98%가 倉田里(法定里)內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出作 耕作地의 경우 모두 인접하고 있는 마을에 分布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대한 通作範圍는 인접마을(법정부락)

---

3) 권역이란 포섭하는 범역의 크기에 따라 중층적으로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영농협동권을 1차적인 기초권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4) 창전5리의 경우는 행정구역 설정이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경계에 의하지 아니한 결과 현재 리 경계에서 충주-청주 국도변 까지의 지역이 사실상 동일 영농권임에도 불구하고 삼청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접마을 출작(出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 동일 영농권내에 분포하는 경작지 비율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9 경작지 분포의 공간 범위

단위: ha

		창전1리		창전4리		창전5리		계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창전리		28.54	16.57	20.07	16.04	19.65	8.98	68.26	41.59
		(87.1)	(94.1)	(96.0)	(98.0)	(75.4)	(60.8)	(85.6)	(85.3)
인접마을	신중리	1.41	0.08	0.65	—	3.61	0.82	5.67	0.9
	대곡리	2.81	0.96	0.05	0.03	—	0.08	2.86	1.37
	신양리	—	—	0.14	—	—	0.43	0.14	0.43
	삼청리	—	—	—	—	2.80	4.47	2.80	4.47
	소 계	4.22	1.04	0.84	0.33	6.41	5.8	11.47	7.17
		(12.9)	(5.9)	(4.0)	(2.0)	(24.0)	(39.2)	(14.4)	(14.17)
계		32.76	17.61	20.91	16.37	26.06	14.78	79.73	48.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지원부.

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營農圈은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대체로 법정리(마을) 境界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生産空間整備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1차적인 營農圈을 單位로 基礎的이며 地域實情에 맞도록 推進되어야 하겠다.

나. 耕地의 定型化 및 規模化

不定型의 耕地가 小規模로 細分된 耕地條件하에서는 農機械의 作業效率을 저하시킬 뿐더러 人力節減效果가 높은 大型 農機械의 사용을 어렵게 한다. 一般的으로 農機械를 이용하는 作業은 일정한 作業幅에 의하여 반복작업이 행하여지므로 圃場의 형상과 面績 및 長·短邊의 比 등이 機械作業效率의 중요한 變數가 되고 있다. 특히 圃場 長邊은 직선이어야 하며 圃場幅은 一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의 圃場形態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圃場의 幅이 일정하지 않으면 機械作業은

표 4－10 區劃의 長短邊 比에 따른 圃場作業比率 : 경운기 10HP 기준

長短邊 比	圃場面積別 作業效率(%)			
	10a	20a	30a	40a
1 : 1	69	75	78	81
2 : 1	73	81	83	85
3 : 1	76	84	86	87
4 : 1	78	85	87	89
5 : 1	80	87	88	90
6 : 1	81	88	89	91
7 : 1	82	88	90	91
8 : 1	82	88	90	91
9 : 1	83	89	91	92
10 : 1	84	90	91	92

주: 김영식 외, 「농업노동력감소와 영농기계화」, 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p.50에서 재인용.

직선으로, 또한 일정한 幅으로 반복되므로 부분적으로 殘耕部가 생기게 되고 이 殘耕部의 作業에 많은 時間을 소요하게 되므로 機械作業의 效果는 크게 減少하게 된다.

한편 圃場의 面積은 크면 클 수록 機械作業效率은 增進된다. 先行 硏究結果에 의하면 耕耘機의 耕耘作業에 있어서 單位面積當 作業效率은 그 면적이 增加할 수록 增加하고 있으며, 日本에서 트랙타 耕耘作業에 관한 作業效率을 硏究한 결과에서도 圃場면적이 1.5*ha*까지는 면적이 增加할 수록 作業能率이 향상되었다고 報告하였다(金英植 외 1980). 일반적으로 區劃의 面積은 넓을 수록 또 區劃의 형상은 定形이면서 長短比가 클 수록 機械作業能率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耕地整理가 施行되지 아니한 原形의 耕地는 이러한 條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례지역의 경지조건을 보면 〈그림 4－4〉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耕地整理가 된 곳은 耕地가 定形으로 規模化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整理가 되지 아니한 大部分의 경지는 不定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耕地規模도 적게 細分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筆地당 平均 耕地面績은 523평으로 分析되고 있는데, 이중 논의 경우는 필지당 평균면적이 530평, 밭은 512평으로 나타나 田畓간의 筆地當 規模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공히 소규모로 세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耕地를 定型化하고 作業面績을 크게 集團化하여 機械作業의 効率을 增大하도록 하는 것이 生産空間整備의 當面한 課題라 하겠다.

표 4-11 필지당 규모

구 분	면 적(㎡)			필 지 수			필지당면적(㎡)		
	논	밭	계	논	밭	계	논	밭	평균
창전1리	327,530	176,092	503,622	168	96	264	1,950 (590평)	1,834 (555평)	1,908 (577평)
창전4리	209,089	163,694	372,783	148	91	239	1,413 (427평)	1,799 (544평)	1,506 (472평)
창전5리	260,637	147,756	408,393	139	101	240	1,875 (567평)	1,463 (443평)	1,702 (515평)
계	797,256	487,542	1,284,789	455	288	743	1,752 (530평)	1,693 (512평)	1,729 (523평)

자료: 농지원부.

다. 耕作地 集中化

경작지가 散在하여 분포하면 移動費用을 증가시켜 營農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실제로 경작지는 한 곳에 集中되어 있지 않고 分散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지역(창전리)의 분석에 의하면 농가당 平均耕作筆地數가 6.4筆地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때 농가의 경작지 分散程度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地目別 경작필지수는 논이 3.9필지, 밭이 2.5필지로 나타나고 있어 논의 경우가 더 分散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사례지역의 경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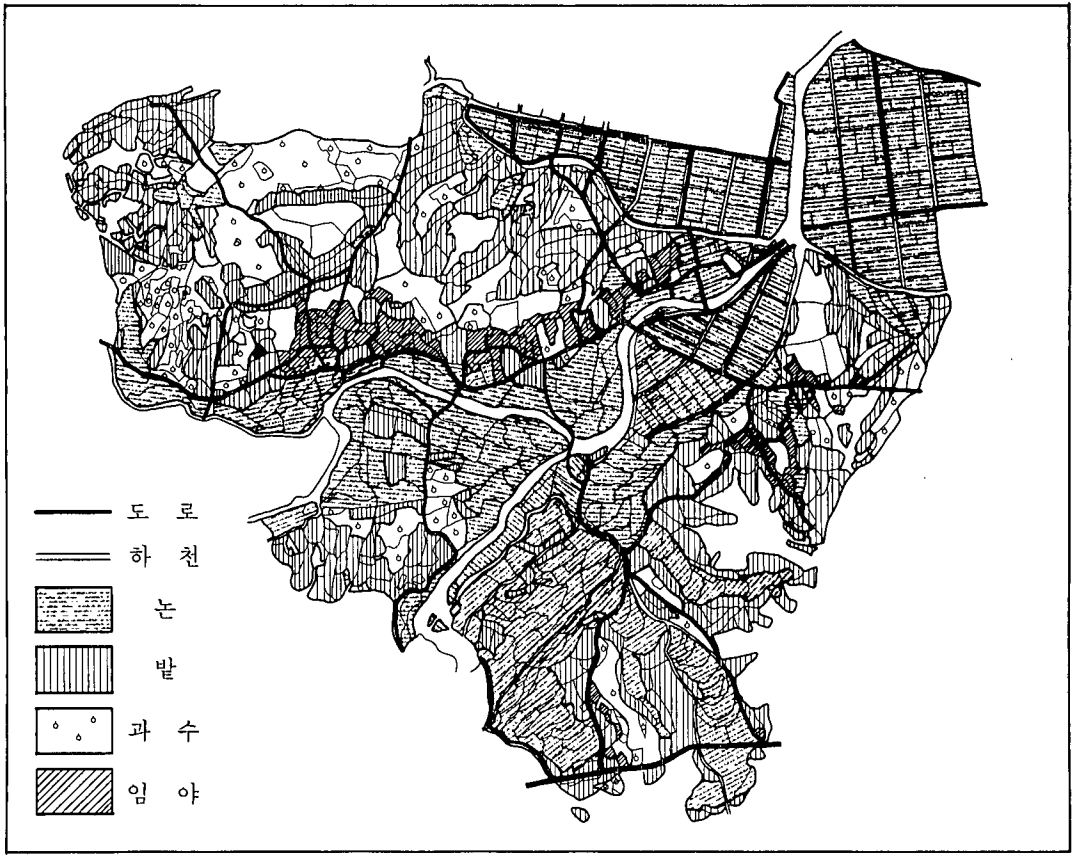

표 4-12 농가당 평균 경작 필지수

	농가수 (호)	필 지 수			농가당필지수		
		논	밭	계	논	밭	계
창전1리	40	168	96	264	4.2	2.4	6.6
창전4리	40	148	91	239	3.7	2.3	6.0
창전5리	36	139	101	240	3.9	2.8	6.7
계	116	455	288	743	3.9	2.5	6.4

자료 : 농지원부.

이와함께 分析結果는 많은 耕作地가 농가를 중심으로 분포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에 위치함을 보여 준다. 경작지 分布實態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사례지역의 일부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작지를 실제 圖面상에 표시해 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도 4-5〉에서 보는 것처럼 경작지의 분포상태가 농가를 중심으로 集中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일부 농가의 경우는 상당한 거리에 까지 通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散在된 농경지는 農家를 중심으로 集中化하여 耕作者로 하여금 경작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接近性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이동비용을 제거하여 농업경영의 合理化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작지의 集中化는 경지의 整形化 및 規模化와 함께 또 하나의 당면한 농업생산공간의 整備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라. 綜合的 정비

農業 生産空間은 농업생산의 터전임과 함께 農村環境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으로 연계정비하도록 하므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圃場이란 경지의 각 필지 및 이에 부수되는 道路, 水路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단순히 농업생산의 基盤만을 의미하는 것이

그림 4－5 경작지 분포도

아니라 그 일부(도로, 수로 등)는 農村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촌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要素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공간의 정비는 당해 地域開發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長期에 걸친 地域開發 構想하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營農이 가장 効率的이고 合理的인 것이 되도록 生産 및 生活空間이 綜合的으로 연계되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기반사업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個別的 事業 次元에서 추진되어 왔을 뿐 生活空間과의 綜合性 및 連繫性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별사업 중심의 생산공간정비는 聚落을 중심으로 하는 生活 活動과의 乖離를 낳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공간의 정비는 生産활동과 生活활동의 一體性이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겠다. 취락의 道路體系와 연계하여 農路를 개설함으로서 주민생활의 便宜圖謀와 동시에 농경지에의 接近性을 높이도록 해 준다거나, 耕地整理事業을 河川改修 등 관련사업과 종합적으로 併行하여 실시 하므로서 二重的인 사업추진에서 오는 투자의 非能率性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등이 종합정비의 한 例로서 제시될 수 있겠다.

3. 生産空間 整備 方案

가. 耕地整理의 差等的 推進

최근 농업경영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農業勞動力 不足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競爭力 強化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機械化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앞에서 보았다. 농업의 기계화는 耕地條件에 기본적인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경지의 조건을 기계화작업에 적합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경지란 논과 밭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이는

機械化 必要性에 있어 논·밭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示範事業을 제외하고는 전혀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는 밭의 경우에 있어 단위당 投下勞動時間이 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때 기계화의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시행중인 耕地整理 對象地區 選定基準은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10*ha*이상이며, 경사도 2%이내의 用水源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많은 농경지가 기준에 未達되어 경지정리 不適地로 남겨짐으로서 현실의 농업경영 문제에서 제기되는 농업기계화의 필요성과 그것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인 耕地條件 사이에 심한 괴리가 발생한다. 실제 정부에서 全國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 적합한 耕地整理可能 대상면적을 조사한 결과(1979년)를 보면 畓의 경우 총답면적 1,312千*ha* 중에서 53.9%인 707.2千*ha*만이 可能面積상으로 집계되었다. 周德面의 경우는 총답면적 1,095*ha*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2*ha*만이 대상면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밭은 일반적으로 耕地條件이 논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계화의 현실적 必要性에 상응하는 경지조건을 구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基準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未整理된 경지를 기계화작업에 적합하게끔 최대한 정비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農業與件의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限界狀況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農地改良計劃 設計基準에 미달하는 경지도 경지조건에 적합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경지조건별로 整理方式을 差等化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耕地整理의 差等的 適用은 원칙적으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개개 경지조건, 즉 경지의 具體的 特性에 기초하여야 하나, 일반적 적용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적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여기서는 集團化 規模와 傾斜度만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차등적 적용기준을 例示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채택되고 있는 농지

집단화 규모에 대한 여러 基準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농지개량계획 설계기준에서는 집단화규모 10*ha* 아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絶對農地 指定要件에서는 7*ha*를, 그리고 機械化營農團 選定基準에서는 소형기계화 영농단은 작업면적 5*ha*를, 대형기계화영농단은 10*ha*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基準은 각사업별로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준들간의 어떤 연관을 찾아 보기 힘들다. 반면 농업기계화에 따른 勞動生產性 增大效果를 고려하여 경지집단화규모를 설정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水稻單作에서 동력경운기 중심의 기계작업 경우 농지규모 2.5*ha*에서는 노동력의 50.7%, 농지규모 1.5*ha*에서는 노동력의 23.7%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日本에서의 트랙타 耕耘작업에 관한 작업효율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圃場면적이 1.5*ha*까지는 면적이 증가할 수록 작업능률이 향상된다고 한다. 機械化의 필요성이 農業勞動力의 부족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한 앞의 연구결과가 生產空間 整備基準과 연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경지정리의 필요성

표 4－13 농업기계화의 효과분석

		동력경운기중심				소형트랙터중심	대형트랙터중심
규 모		1.5*ha*	2.5*ha*	4.5*ha*	10*ha*	20*ha*	40*ha*
투 입 기 종		동력 경운기 (6ps) 外 3종	동력 경운기 (6ps) 外 5종	동력 경운기 (10ps) 外 7종	동력 경운기 (10ps) 2 대 외 9종	農用트랙터 (23ps)와 동력 경운기 (10 ps)外 10종	農用트랙터 (46ps)와 동력경운기(20 ps) 外 12 종
관행대비절감 (%)	노동	23.7	50.7	57.6	59.3	74.6	77.1
	비용	16.6	36.6	43.7	49.6	54.9	58.5

자료: 정홍우외, 「농업경제연구」, 제24집, pp. 153－17.

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하여 경지정리의 差等的 추진을 위한 耕地集團化 規模의 基準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① 10*ha*이상 집단화된 耕地는 현행대로 中央政府에서 일반경지정리 대상으로 하여 聚落整備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② 기계작업에 의해 노동력 절감효과가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경지정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ha*이상~10*ha*미만의 集團化된 耕地는 地方政府에서 地域的인 사업으로 受容하여 地域特性에 맞게 추진하되, 技術水準은 中間水準으로하는 小規模 耕地整理方式을 채택하며 ③ 3*ha*미만 集團化된 耕地도 역시 施行主體를 地方政府로 하여 상대적 低技術水準으로 시행이 가능한 圃場整理 開發方式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結果的으로 耕地整理를 최대화하여 機械化 作業에 適合한 耕地條件을 확보하고 나아가 農業與件변화에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可能하게 한다.

표 4-14 차등적 경지정리 기준 : 예시

구 분	집단화구분	경사도	기술수준	시행주체	비 고
일반경지정리	10*ha*이상	2%이하	고	중앙정부 (현시행중)	취락정비와 종합적 연계개발
소규모경지정리	3~10*ha*	5%이하	중간	지방정부 (정주권사업으로 수용)	취락정비와 조화
포장정리	3*ha*이하	14%이하	저	지방정부 (정주권사업으로 수용)	원형지 중심개발

경사도 제약 역시 가능수준까지 최대한 受容하여 경지정리면적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방향에서 傾斜度에 따른 경지정리 방식의 차등적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① 경사도 2%미만은 현행 一般耕地整理方式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

도록 하며 ② 2%이상 5%미만의 경지조건에서는 小規模 耕地整理方式을 채택하여 지방정부에서 中間技術水準으로 수용하도록 하며 ③ 경사도 5%이상 14%미만은 原型地개발 중심의 圃場整備대상으로 한다. 경사도의 문제는 기반정리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지조건의 하나이므로 차등적 적용에 있어 경지집단화 규모와 重層的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나. 事例 마을의 耕地整理 構想

앞에서 제시한 耕地整理 差等化 例示基準에 의거하여 倉田里 사례마을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구상을 해보았다. 경지조건 분석은 圖面作業에 의해 수행하였다. 먼저 1/5000圖面에 의한 창전리의 경지조건 분석결과 耕地集團化 규모 및 傾斜度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의 경우는 밭에 비해 경지의 集團化 程度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밭은 小規模로 集團化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地區數로 볼 때 집단화 규모가 작은 1*ha*미만의 소규모 경지가 논의 경우는 6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밭의 경우는 32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3*ha* 이상의 地區數도 밭의 경우 충면

표4－15 사례지역의 경지조건 현황

경사도 / 구분 / 집단화면적	논		밭			
	0～5%		0～5%		5～10%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ha* 이상	2	38*ha*	1	11.6*ha* (5%이상:1.6*ha* 포함)	·	·
3－10*ha*	1	9.5*ha*	3	12.0*ha* (5%이상 : 5.2*ha*)	2	10.2*ha* (5%미만 : 3.1*ha*)
1－3*ha*	4	7.6*ha*	·	·	1	1.2*ha* (5%미만 : 0.2*ha*)
1*ha* 미만	6	2.2*ha*	28	7.1*ha*	4	2.6*ha* (5%미만 : 0.4*ha*)

적이 논보다 적음에도 6개지구로 논의 3개지구보다 많게 나타난다.

한편 傾斜度는 논의 경우 전체가 경사도 5%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밭은 7개지구 14*ha*가 5%~10%사이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耕地條件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밭의 경우는 圃場整備 방식의 경지정리가 많이 채택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논의 경우는 一般耕地整理 또는 小規模 耕地整理方式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지조건 현황에 기초하여 例示된 기준에 따른 倉田里의 差等的 개발방식별 耕地整理 需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一般耕地整理對象은 논 2개지구 38*ha* 및 밭 1개지구 11.6*ha*로 나타나며, 小規模 耕地整理對象은 논 1개지구 9.5*ha* 및 밭 3개지구 12.0*ha*로 나타난다. 또한 圃場整備對象으로는 논 10개소 9.8*ha* 및 밭 35개소 21.1*ha*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圖面에 의한 傾斜度와 경지의 集團化 規模만을 감안하여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實地調査를 통해 경지의 形狀, 農路, 用排水條件 및 土質 등을 대상지구별로 별도로 검토되어

표 4-16 창전리의 차등적 경지정리수요

유형	구분 / 경사도 구분 / 집단화 규모	논		밭			
		5%미만		5%미만		5%-10%미만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Ⅰ	10*ha*이상	2	38*ha*	1	11.6*ha*	—	—
Ⅱ	3-10*ha*	1	9.5*ha*	3	12.0*ha*	2	10.2*ha*
Ⅲ	1-3*ha*	4	7.6*ha*	—	—	1	1.2*ha*
	1*ha*미만	6	2.2*ha*	28	7.1*ha*	4	2.6*ha*

주 : 1) 유형 Ⅰ은 일반경지정리대상, 유형 Ⅱ는 소규모경지정리대상, 유형 Ⅲ은 포장정비 대상임

2) 1개마을 (법정리)을 대상으로 1/5000도면에 의해 작업을 한 관계로 경사도를 5%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표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Ⅰ유형중 경사도 2%미만은 Ⅱ유형으로 재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Ⅰ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목측으로 볼 때 대상경지(논)의 경사도가 2%미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야 함을 添言한다.

다. 農耕地의 交換·分合 推進

散在된 농경지를 耕作農家 中心으로 최대한 집중시켜 줌으로서 장기적으로 農場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농경지를 경작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集中化 함으로서 農業機械化費用 및 農業勞動力의 節減을 기하게 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耕地整理와 함께 換地處分시 集團換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집단환지는 환지를 정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零細 分散된 농지를 농지소유자의 居住地 중심으로 일정한 곳에 集團化시키는 換地指定方式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규모필지의 집단환지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換地價算定方式 및 換地位置선정방법등을 포함하여 집단환지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이와 함께 산재하고 있는 농경지의 交換·分合을 촉진하기 위한 支援方案도 동시에 강구되어져야 한다. 이는 遠距離所在 농지의 交換·分合을

표 4－17 사례지역의 타 영농권 출작 현황

구 분	논			밭		
	농가수	필지수	면적	농가수	필지수	면적
창전5리	11농가 (6농가)	29 (21)	64,184㎡ (40,149)	18농가 (4농가)	44 (13)	57,932㎡ (13,259)
창전4리	6농가	10농가	8,427㎡	1농가	2	3,322㎡
창전1리	10	20	42,164㎡	3농가	8	10,372㎡
계	27농가 (22농가)	59 (41)	114,775㎡ (90,700)	22농가 (18농가)	54 (23)	71,626㎡ (26,953)

주 : ( )속은 창전5리의 경우 실제같은 영농권인 일부 삼청리를 같은 영농권으로 볼 경우의 출작 현황 임.
자료 : 농지원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원칙하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他營農圈에서 入作하는 농가의 경지와 타영농권으로 出作하는 농가간의 耕地交換을 우선하여야 한다. 事例地域(창전리)의 분석결과를 보면 영농권을 벗어나 出作하는 현황은 논농사가 27농가, 59필지, 114,775㎡로 나타나고 있으며 밭농사는 22농가, 54필지에 71,626㎡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同一 營農圈내에 위치하는 散在된 농지도 같은 맥락에서 交換·分合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사례지역인 창전1리와 창전4리 간에 있어 다른 부락에 耕作耕地가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렇게 인접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農耕地는 가능한한 交換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농지의 集中化로 농업경영의 合理化를 도모해 나가

그림 4-6 창전4리와 1리간의 교환대상 경지분포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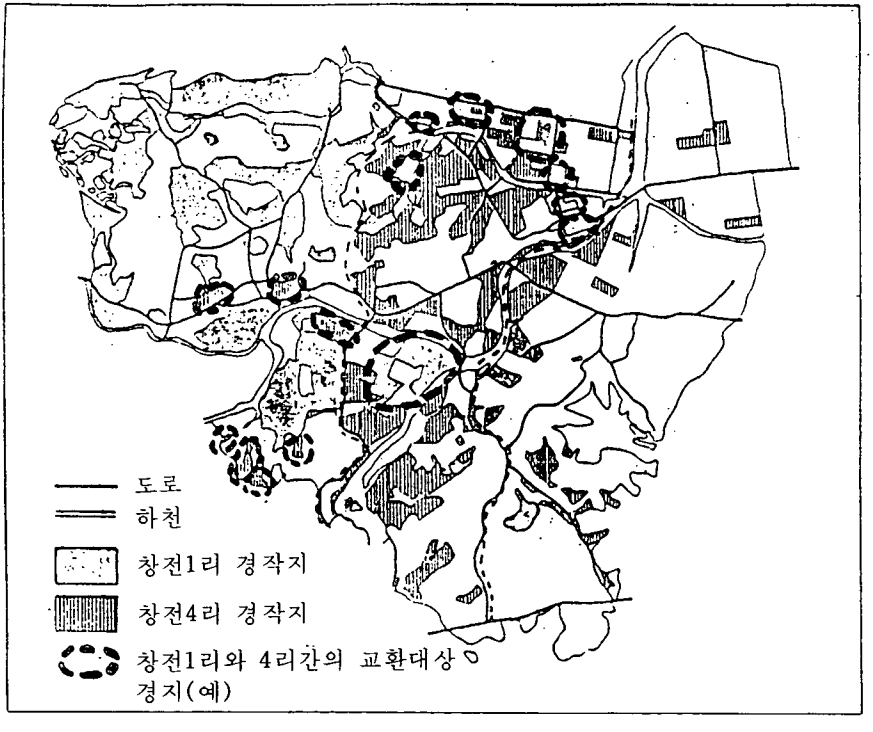

도록 해야 한다.

농지의 集中化를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이러한 遠距離所在 농지간의 교환을 촉진하는 側面에서의 접근과 함께 더 이상 농지의 細分化를 防止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는 去來의 基礎單位가 되는 筆地의 세분화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필지가 細分化되면 더 많은 필지가 去來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농지의 分散化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의 필지분할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즉 소유농지의 集中化를 위한 목적하에서만 운용되도록 助長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농지의 집중화를 效果的으로 助長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의 分散化 程度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筆地가 너무 細分되어 있어 그만큼 分散程度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인접한 소유농지는 合筆을 유도하도록 하여 耕作地 分散모습의 용이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나아가 耕地集中化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겠다.

第 5 章
生活環境施設 整備

1. 開發 實態와 問題点

가. 都農間 相對的 隔差 深化

지난 30년 동안 高度經濟成長을 目標로 한 國家發展戰略은 工業化와 都市化를 그 축으로 하였다. 그 결과 生産部門에 비해 生活環境部門에 대한 投資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공업용수, 수자원, 항만시설 등과 같은 生産部門의 社會間接資本 施設投資에 비해 住宅, 上·下水道 등의 生活基盤施設에 대한 投資가 相對的으로 부진하였으며, 敎育·醫療 등의 社會福祉施設에 있어서도 國民의 所得向上에 따른 期待水準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生産部門에 대한 집중투자는 首都圈과 일부 新興工業都市 및 東南海岸工業벨트 지역에 偏重됨으로써 地域經濟成長과 이에 따른 生活環境開發의 空間的 不均衡을 심화시켜 왔다. 〈표 5-1〉은 大都市와 中小都市 사이에도 生活環境開發水準의 격차가 크지만, 都市地域에 비해 農村地域

표 5－1 都農間의 主要 生活環境 隔差 比較, 1988

單位: %

	도로 포장률①	자동차 보급률②	상수도 보급률③	하수도 보급률④	병상수⑤	전화 보급률⑥
전 국	61.4	4.8	85.1	56.8	26.8	24.3
대 도 시	79.0	6.3	96.5	76.3	31.7	28.4
중소도시	77.1	4.5	84.6	67.7	35.9	25.2
농 어 촌	51.2	2.3	45.1	34.5	10.3	16.7

1)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도시.
중소도시: 시급 도시중 대도시를 제외한 66개 도시.
농 어 촌: 읍면.
2) ① 포장연장/총연장 ② 대/100인 ③ 급수인구/행정구역총인구
④ 배수면적/계획배수면적 ⑤ 개/10,000인 ⑥ 대/100인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9.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89.
各道 「統計年鑑」, 1989.

의 落後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農村地域間 生活環境 開發 隔差

都農間의 生活環境開發隔差의 폭보다는 작지만 農村地域間에도 隔差가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首都圈內의 郡들과 地方大都市 周邊의 郡들은 所得部門뿐만 아니라 生活環境의 全部門에 걸쳐 높은 개발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京釜軸을 중심으로 帶狀으로 연결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保健·衛生部門에서는 地域의 中心地로서의 역할이 비교적 큰 邑을 포함하고 있는 忠南과 全北地方의 郡들이 높은 開發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開發이 부진한 地域은 西海와 西南海의 島嶼地域, 西南海岸地域, 太白山脈, 및 小白山脈의 줄기에 연하여 있는 地域에 집중되고 있다(崔鎭昊外 1985, pp. 54～56; 李正煥, 金正淵, 李政紀 1987).

그림 5-1 地域別 開發隔差 比較

資料: 崔鎭昊 外, 前揭書, p. 48.

따라서 大都市 周邊農村, 一般農村, 山村, 漁村의 순서로 生活環境 開發水準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山村과 漁村은 接近性이 불량하여 住民의 生活便益 서비스의 향유 수준은 더욱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UR 이후 農業與件이 불리하고 農外就業機會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農村地域은 都市에 비해 크게 열악한 生活環境水準의 상대적 저하와 人口減少에 따른 便益施設의 上向偏重現象의 누적적인 악순환으로 住民生活의 어려움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2 部門別로 가장 發展된 郡과 落後된 郡

部門 / 順位	가장 發展된 郡				가장 落後된 郡			
	주건환경	교육·문화	보건·위생	교통·통신	주건환경	교육·문화	보건·위생	교통·통신
1	남제주 0.9151	시 흥 1.4875	공 주 1.0897	칠 곡 1.1093	옹 진 -1.0348	화 순 -1.2259	춘 성 -1.9179	신 안 -1.9374
2	시 흥 0.8895	고 양 0.8044	삼 척 0.9342	경 산 1.1004	진 도 -1.0266	옹 진 -1.2148	군 위 -1.4732	진 도 -1.5919
3	북제주 0.7449	평 택 0.4985	시 흥 0.6930	대 덕 1.0519	신 안 -1.0237	신 안 -1.1420	양 양 -1.4438	봉 화 -1.4849
4	평 택 0.3209	남양주 0.4855	평 택 0.6397	울 진 1.0115	고 창 -1.0095	통 영 -1.0731	금 릉 -1.3858	완 도 -1.4056
5	삼 척 0.2277	군 위 0.4615	정 선 0.5901	달 성 0.8410	순 창 -0.9391	여 천 -1.0424	명 주 -1.3265	춘 성 -1.3649
6	남양주 0.1863	대 덕 0.3595	거 제 0.5538	남제주 0.5831	통 영 -0.9363	승 주 -1.0267	고 성 -1.1965	연 천 -1.3284
7	양 산 1.1222	양 산 0.3384	인 제 0.4977	양 산 0.5633	제 원 -0.9101	장 성 -0.9972	청 송 -1.1266	청 양 -1.2894
8	달 성 0.1212	삼 척 0.2895	보 령 0.4826	옥 천 0.5576	진 안 -0.9077	진 안 -0.9924	순 창 -1.1236	화 천 -1.2604
9	연 천 0.0548	양 주 0.2359	정 읍 0.3163	양 구 0.4893	이 천 -0.9004	영 암 -0.9628	함 평 -1.0869	의 령 -1.2376
10	칠 곡 0.0042	정 선 0.1708	김 제 0.3101	양 주 0.4665	장 수 -0.8991	고 령 -0.9602	영 덕 -1.0232	무 안 -1.1854

資料: 崔鎭昊 外, 前揭書, pp.55-56.

다. 生活環境 施設 種類別 開發實態와 問題点

[1] 道路, 交通

法定道路의 경우 全國的 또는 道水準의 幹線網을 형성하고 있는 國道, 地方道에 비해 農村住民의 日常生活交通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郡道의 鋪裝水準이 매우 저조하다〈표 5-3〉.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農路 등을 형성하고 있는 非法定道路의 개발수준은 더욱 저조해 路幅과 路面狀態가 自動車나 農機

그림 5－2　農村下位道路 開發實態 周德面 事例,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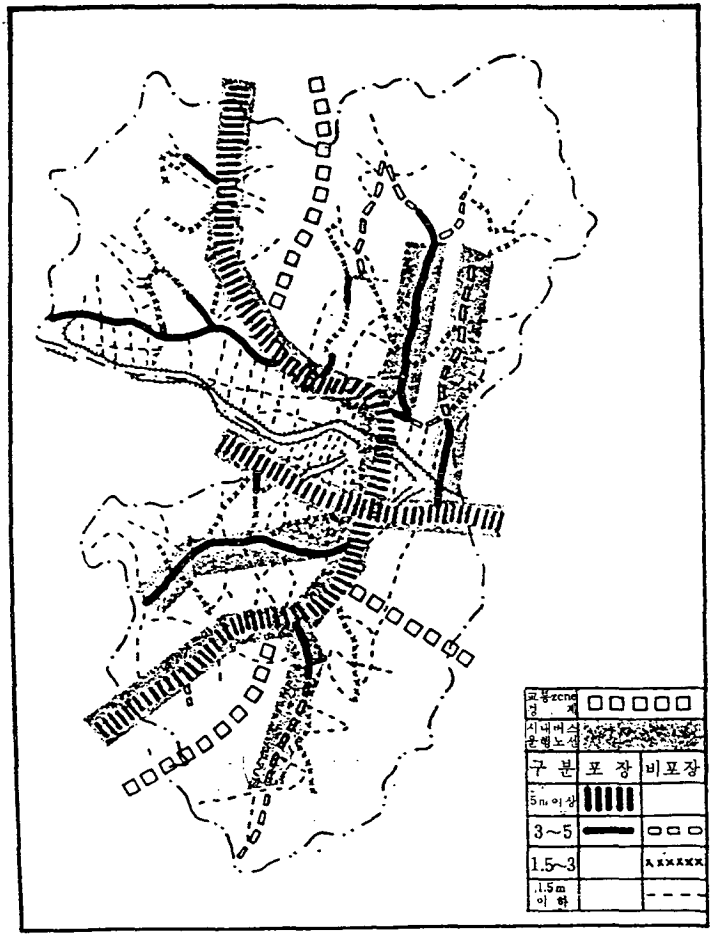

표 5－3　道路階層別 鋪裝水準, 1988

單位: km, %

區　分	合　計	國　道	地方道	郡　道
延　長	55,778	12,225	10,577	13,455
鋪裝率	61.4	82.4	50.2	26.6

資料: 建設部,「道路現況 調書」, 1989.

표 5－4 非法定道路의 開發實態：周德面 事例,1980

單位: m, %

	합 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 로		교 량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노선수	연 장
총대상물량	297	90016.5	58	25,204	109	29,375	73	34,925	57	492.5
추진실적	110	19202.5	35	12,169	29	6,675	1	20	35	338.5
추 진 율		21.3		48.2		22.7		0.1		68.7

械의 移動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에 있다. 새마을 사업 또는 農漁村所得源道路開發事業으로 개발한 道路의 경우도 事業費不足으로 개발구간 자체가 짧아 대부분이 국지적 애로구간 해소에 그치고 있다〈표 5－4〉〈그림 5－2〉.

특히 농로의 경우는 大型農機械의 移動이 가능한 2m 이상의 路幅을 가진 도로밀도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강우기와 강설기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허다하여 農作業의 機械化는 물론 生產物의 원활한 반출과 農資材의 효과적인 投入을 어렵게 하고 있다〈표 5－5, 6〉.

농촌주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市(郡)內 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노선당 평균 3~5회 운행하고 있으나 國道로부터 멀어질수록 運行密度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 마을일수록 운행횟수 과소, 배차간격의 과다, 정류장 도착시간의 부정확, 버스 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표 5－7〉.

따라서 이와 같은 農村下位道路의 低開發과 大衆交通手段 서비스의 低調는 農業生產과 流通의 效率을 떨어뜨리고 生活費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農村住民의 不滿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低開發 問題와 함께 開發行政體系上의 問題를 지적할 수 있다. 즉 郡道는 內務部→郡 建設課, 農漁村道路는 農林水產部(農漁村振興公社)→郡 農產(產業)課, 새마을 道路는 內務部→郡 새마을課로 다원화 되어 있어서 農村道路開發의 綜合性과 體系性을 상실하고 있다.

표 5-5 가장 不便을 느끼는 道路

單位: 人, %

	합 계	중원군	김제군	군위군
합 계	1443(100.)	310(100.0)	564(100.0)	569(100.0)
면소재지와 군청소재지간 연결도로	160(11.2)	8(2.6)	83(14.7)	69(12.1)
마을과 면소재지간 연결도로	364(25.5)	74(23.9)	132(23.4)	158(27.8)
마을간 연결도로	278(19.4)	50(16.1)	120(21.3)	108(19.0)
마을진입로	339(23.7)	82(26.5)	115(29.4)	142(24.9)
마을과 농경지간 연결도로	200(14.0)	54(17.4)	74(13.1)	72(12.7)
농경지내 도로	102(7.1)	42(13.5)	40(7.1)	20(3.5)

표 5-6 道路 交通條件에 대한 不便度 認識(가장 크게 不滿을 느끼는 때)

單位 : 人, %

	합 계	중원군	김제군	군위군
합 계	1416(100.)	304(100.0)	564(100.0)	548(100.0)
농기계로 농경지를 출입할 때	447(31.6)	122(40.1)	160(28.4)	165(30.1)
농경지로부터 수확물을 반출할 때	534(37.7)	90(29.6)	217(38.5)	227(41.4)
등하교 또는 출퇴근할 때	126(8.9)	24(7.9)	47(8.3)	55(10.0)
면이나 군·시로 일보러 나갈 때	285(20.1)	64(21.1)	127(22.5)	94(17.2)
기타	24(1.7)	4(1.3)	13(2.3)	7(1.3)

표 5-7 定期路線 버스 利用上의 不便度 認識

單位: 人, %

	합 계	중원군	김제군	군위군
합 계	1430(100.)	304(100.0)	571(100.0)	555(100.0)
버스타는 곳까지 거리 과다	325(22.7)	53(17.4)	120(21.0)	152(27.4)
운행횟수 과소	670(46.9)	130(42.8)	286(50.1)	254(45.8)
운행시간 불규칙	131(9.2)	27(8.9)	25(4.4)	79(14.2)
등하교시 차내 혼잡	278(19.4)	86(28.3)	130(22.8)	62(11.2)
기타	26(1.8)	8(2.6)	10(1.7)	8(1.4)

표 5－8 輕自動車 購入 意思*

單位: 人, %

	응 답 자 수	비 율
합 계	319	100.0
구입할 의사가 있다	114	35.7
구입할 의사가 없다.	75	23.5
구입하고 싶지만 경제력이 없다.	95	29.8
아직을 잘모르겠다.	31	9.7
기 타	4	1.2

*) 800cc급 자동차로 구입가격이 300～400만원대이고 한달 유지비가 3～4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設問에 대한 주민의 응답 결과임.

표 5－9 輕自動車 購入 時期

單位: 人, %

	응답자수	비 율	누적비율
합 계	244	100.0	100.0
시판되는 즉시	33	13.5	13.4
2년 이내	65	26.6	40.4
5년 이내	67	27.5	67.6
5년 이후	78	32.0	99.6
기타	1	0.4	100.0

그러나 조만간 農村地域에서도 自動車普及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現在의 道路狀態에 대한 不滿이 고조될 것이며 下位道路와 駐車施設 開發에 대한 住民需要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다〈표 5－8, 5－9〉.

2 生活用水 給水施設

農村地域의 生活用水 給水施設은 一般公共上水道施設, 簡易給水施設, 마을 공동우물, 自家 펌프(pump)施設 등으로 나뉜다.

一般公共上水道施設은 대체로 都市計劃이 되어 있는 일부 邑·面所在

표 5-10 배후농촌의 간이 급수시설 현황(주덕면사례)

單位:戶, 人

		시설연도	시설유형	급수가구	급수인구	현재의 시설상태
합 계			21	630	3,542	
창전	창전5리	1979	양수식	30	176	정 상
	4리	〃	〃	46	269	정 상
	1리	〃	〃	31	204	시설노후
대곡	동산미	1980	자연유하	7	45	시설노후
		1979	양수식	32	181	〃
		1978	〃	8	47	〃
	맹 동		미설치			
	원대곡	1979	양수식	33	192	시설노후
삼청	청 양	〃	자연유하	27	108	물탱크노후 및 수원부족
	미 락		미설치			
	능 촌	1974	자연유하	20	112	시설노후
		1972	〃	9	51	〃
	묵 동	1973	〃	33	192	정상
	삼 방	1981	양수식	31	192	모터노후
신양	마 치	1976	자연유하	54	369	〃
	1,2,4,5구		일반상수도			
	3구	1979	자연유하	17	85	물탱크노후 및 파이프노후
신중	신 촌		일반상수도			
	원신중	1979	양수식	40	236	물탱크노후 및 파이프노후
화곡	계 막		미설치			
	원화곡2	1980	양수식	14	97	물탱크노후 및 파이프노후
사락	원사락		미설치			
	매 남		〃			
	음 동		〃			
제내	숭 동		〃			
	풍 덕	1978	양수식	60	259	물탱크노후 및 파이프노후
장록	원장록		미설치			
	봉 천	1979	양수식	25	148	물탱크노후 및 파이프노후
	지 내	1980	양수식	23	68	기계 및 파이프노후
덕연	창 동		미 설 치			
	조 동		미 설 치			
당우	원당우	1979	양수식	50	289	정상
	유 동		미설치			
	석 우	1979	양수식	40	223	시설노후

地에 설치되고 있으나 農村地域의 全體人口에 대한 給水人口 比率이 매우 낮고, 1일 1인 給水量도 250ℓ이하로 1988年의 全國 1일 1인 給水量인 325ℓ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1967年 이후 20戶 이상인 自然部落에 설치되고 있는 簡易給水施設은 1985年까지 대상 사업량 32,624개소(9,502千名) 중에서 23,794개소(6896千名)를 설치함으로써 72.9%의 普及率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부락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住宅群 또는 단독주택이 분산 입지해 있거나 주택지간의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共同給水가 가능할 정도의 水源確保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施設投資費가 과다하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할 마을은 많지 않다. 한편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마을이나 농가에서는 공동우물 또는 개인 우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80년대 이후 자가펌프의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간이급수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주민수요는 낮은 편이다.

표 5-11 給水施設 類型別 住民意識

單位 : 人, %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자가수도	펌프/우물
안심하고 먹는다.	18(90.0)	41(47.5)	102(91.1)	20(87.0)
불안하다.	2(10.0)	14(25.5)	10(8.9)	3(13.0)
불안한 이유	(100.)	(100.0)	(100.0)	(100.0)
약품처리가 안되어서	2(100.0)	5(35.7)	4(40.0)	1(33.3)
산업폐수에 오염된 것 같아서	—	1(7.1)	—	—
인분, 가축분뇨, 흙탕물이 스며든 것 같아서	—	8(57.2)	6(60.0)	2(66.7)
농약에 오염된 것 같아서	—	—	—	—
계	20(100.0)	55(100.0)	112(100.0)	23(100.0)

資料 : 朴貞恩 外, 「農村住居環境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韓國女性開發院, 1988, pp. 88-89.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중에는 설치후 經過年數가 많고 維持管理가 소홀한 곳 또한 많기 때문에 배관노후, 배수지 파손, 취수장 파손, 수원지 매몰, 수원 오염 등의 원인에 의해 제한급수를 하고 있거나 시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표 5-10〉. 그러나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비의 증가 또는 이용인구 및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비용이 당초 설치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地表水를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集團住居地에 인접하여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農藥使用의 증가, 비위생적인 糞尿處理, 下水處理施設의 未備로 인하여 水質汚染이 야기될 위험성이 높다〈표 5-11〉.

3 下水處理施設

産業化 이전의 傳統的 農村社會에서는 汚水對策이 불필요 했다. 그 당시는 上水道 普及率이 낮아서 農村住民의 대부분이 마을 공동우물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이 적었으며,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生活雜排水의 量도 적었다. 따라서 농촌취락의 모든 주택들로부터 생활잡배수를 적당한 雨水排除經路를 거쳐 주변 농경지로 분산배출시키거나 하천, 농업용 용·배수로에 방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糞尿와 畜産廢水 등도 비료로 농경지에 환원되었기 때문에 農村의 汚水排除方式과 自然淨化機能이 균형적이었으며 그만큼 住民의 水質汚染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었다.

그러나 産業化의 진행에 따라 農村社會의 변모로 종래의 전통적인 汚水處理方式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生活樣式의 都市化·便利化, 住民構成의 多樣化, 上水道 普及率의 向上에 의해 生活用水 使用量 및 化學洗劑의 使用量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생산면에 있어서도 農業生産方式의 다각화로 化學肥料, 農藥, 비닐 등의 사용이 일반화 됨과 동시에 畜産農家의 증가 및 大規模化에 따라 汚水의 量과 汚染濃度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農村地域으로 진출해 온 工場과 觀光·休養施設 등으로 부터 배출되는 각종 폐수

표 5－12 農家의 生活下水 排出 形態 : 周德面 事例

單位:人, %

	응 답 자 수	비 율
계	1831	100.0
하수구를 통해	809	44.2
논밭으로 직접	550	30.0
하천, 개울로	334	18.2
마을안길로	138	7.5

표 5－13 背後 마을의 下水管渠 整備實態(周德面 事例)

單位:m, %

대 상 사 업 량		추 진 실 적*		정 비 율
개 소 수	사 업 량(A)	개 소 수	사 업 량(B)	(B/A)
98	14,493	40	5,273	36.4

* 추진실적의 대부분은 雨水排除管渠이고 일부 農業用 用·排水路도 포함되어 있다.

는 聚落을 포함한 地域全般의 수질 및 배수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촌의 경우는 市街地로부터 흘러나온 汚濁된 下水에 의해 用水障碍를 일으키고 있다.

下水處理施設의 開發實態를 보면 邑·面所在地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지 가로망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응급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下水管路가 未備·不良하여 집중 강우시에는 침수의 위험성과 건기에는 汚水의 원활한 排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 많다. 背後農村 마을은 家畜飼育이 많은 마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自淨能力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住居地內의 下水管路施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각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온 生活下水가 마을안길, 인근의 농경지 및 정비되지 않은 개울이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住居環境을 악화시키고 소득의 터전인 마을 주변의 農耕地와 水域을 오염시키고 있다〈표 5－12, 5－18〉.

그림 5-3 쓰레기 排出量의 增加趨勢, 19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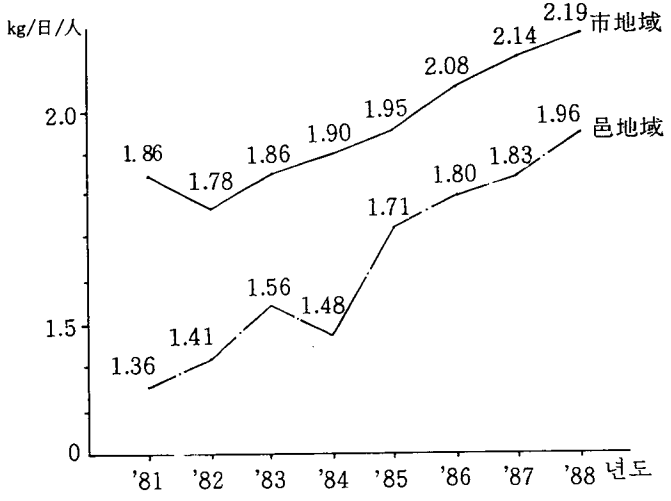

4 쓰레기 처리

과거의 농촌쓰레기는 도시의 産業廢棄物과는 달리 農業生産物의 副産物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 대부분이 自然循環體系로 還元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쓰레기는 農村生活構造의 都市化와 消費水準의 향상에 따라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1988. 12 현재 邑地域이 평균 1.96kg으로 都市地域의 2.19kg에 육박하고 있고, 年平均排出量增加率에 있어서는 읍지역이 5.4%로서 도시지역의 2.4%를 능가하고 있다〈그림 5-3〉.

쓰레기의 成分도 화학제품, 비닐류, 프라스틱 등과 같은 自然系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農作物에 害가 큰 都市形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 農家別 自體處理로는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특히 아궁이 대신에 연탄 보일러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연탄재 처리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표 5-14〉. 현재 농촌지역의 쓰레기처리는 廢棄物管理法 第9條 規定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행정기관에서 收

去處理하는 特別淸掃地域으로 지정된 일부 邑·面所在地와 그렇지 못한 기타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한편 特別淸掃地域 指定對象 地域 중에서도 市·邑地域은 法規上 의무적으로 特別淸掃地域으로 指定되도록 되어 있지만 面所在地는 全體的으로 5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特別淸掃地域에서는 일주일에 3~5회 정도 각 가정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郡 全體人口에 대한 收去地 人口比率은 20~30% 수준에 불과하며, 증가하는 쓰레기의 效率的인 收去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忠北 中原郡의 경우 1988년말 현재 13개 면소재지 중에서 2개 면소재지만이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두곳의 쓰레기 배출량이 2920 t에 이르고 있지만 수거차량 2대, 수하차 5대, 연 수거인부 1500명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背後마을 및 기타 面所在地의 경우 비교적 人口가 密集해 있는 面所在地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收去處理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고, 部落單位에서는 個別農家別로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의 終末處理는 특별청소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저습농지나 하천변, 구릉지 등을 빌어 매립 후 묻어버리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되는 쓰레기에 복토를 하지 못해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표 5-15〉.

그리고 大型埋立地를 구하지 못해 곧바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다시 埋立地를 구하게 되지만 國土利用管理法, 道路法, 河川法, 環境保全法과 같은 수많은 法令에 의해 제한을 받고, 특히 河川, 農耕地, 林野 등에 설치

표 5-14 農村 쓰레기의 構成

單位 : %

연 탄 재	음식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	종이, 목재류	농약빈병 폐비닐	인스탄트용기, 깡통, 유리
56	18	14	8	4

資料:慶尙北道,「쓰레기 處理 綜合對策」, 1989, pp. 40-41.

할 경우 許可節次가 어렵고 복잡하여 새로운 候補地 確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金庚亮外 1978, pp. 157~160). 더구나 일반마을에서는 농가 별로 집 가까이 있는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마을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최소한 2~3군데 있게 된다. 따라서 농가별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경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함부로 날고 파리 등과 같은 각종 오염원을 포함하고 있어 生態系의 손상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

또 해마다 經濟性作物에 대한 비닐피복재배의 확대로 폐비닐이 늘고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작물재배후 수거에 따른 인력난을 이유로 소각하거나 제때 수거를 하지 않고 논, 밭두렁에 방치함으로써 농경지나 하천변에 묻히는 등 폐비닐 公害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韓國資源再生公社는 빈 농약병, 폐비닐, 古鐵, 廢紙 등 재생 가능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국에 51개소의 管理所를 두고 1개 관리소당 4~5개의 市·郡을 管掌케 하고 있으나, 空間範域이 넓고 事業車輛(1개 관리소당 3대)이 부족하여(金庚亮 外 1978, pp. 125－129), 간선도로변에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표 5－15 非收去 地域의 쓰레기 處理方法

單位:人, %

	합 계	폐휴지	음식물	비 닐	빈 병	연 탄
합 계	979 (100.0)	204 (100.0)	205 (100.0)	201 (100.0)	196 (100.0)	173 (100.0)
땅에 묻는다	56 (57.2)	13 (1.5)	5 (2.4)	—	—	48 (24.9)
태운다.	335 (34.2)	184 (90.2)	—	151 (75.1)	—	—
적당한 곳에 버린다	153 (15.6)	9 (4.4)	31 (15.1)	8 (4.0)	11 (5.5)	94 (59.3)
수집상에게 판다.	231 (23.6)	4 (2.0)	—	42 (20.9)	185 (92.0)	—
비료로 사용한다.	91 (9.3)	4 (2.0)	56 (27.3)	—	—	31 (17.9)
사료로 사용한다	113 (11.5)	—	113 (55.1)	—	—	—

資料:朴貞恩 外, 前揭書, p. 93.

수집하고 있다.

5 生活便益施設

生活便益施設의 空間分布 特性을 보면 定住單位別로 立地하는 施設의 數와 種類, 機能의 程度가 뚜렷한 階層隔差를 나타내고 있다〈표 5－16〉.

郡廳所在地는 業種數와 施設數가 많을 뿐만 아니라 下位階層의 모든 中心地의 機能指數의 綜合보다도 훨씬 큰 機能指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柳佑益 外 1988, p.76, 10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a, p.281; 1988b, p.298; 1989a, p.97; 1989b, p.98;李正煥 外 1989, pp.36－37). 여기에는 下位階層 中心地에는 없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전신전화국, 등기소 등과 같은 行政施設과 문화원, 전신전화국, 한전출장소 등의 公共施設, 그리고 臨界値가 높고 專門化된 私的 서비스 施設들

표 5－16 農村地域의 定住單位間 中心性 隔差

階層	平野農村(高尙郡)		山間農村(橫城郡)	
	中心地數	機能指數	中心地數	機能指數
Ⅰ	9(군청 소재지)	6925.8	1(군청 소재지)	9561.5
Ⅱ	3(면 소재지)	2113.4～1439.3	1(면 소재지)	2272.6
Ⅲ	5(면 소재지)	786.2～235.7	2(면 소재지)	745.2～502.1
Ⅳ	17(1개 면 소재지, 16개 마을)	98.2～10.1	6(3개 면 소재지, 3개 출장소)	324.8～169.4
Ⅴ	398(마을)	9.7～0.0	33(마을)	74.5～2.63

1) 高敞郡은 97種類의 施設에 대한 分析結果이며, 橫城郡은 152種, 1536個 施設에 대한 分析結果이므로 機能指數의 橫的인 比較는 의미가 없음

2) 高敞郡은 1邑, 13個面, 51行政里로 이루어졌고, 橫城郡은 1邑, 7個面, 3個出張所 行政里로 이루어졌음.

資料:金允涉, "農村中心地의 體系的 開發方何에 관한 硏究 : 全北 高尙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 全州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9, pp. 54－60.
柳佑益 外,「山村地域 定住體系의 整備方案 硏究」, 農業振興公社, 1988, pp. 100－105.

이 分布하고 있어 行政的, 經濟的, 社會文化的 中樞機能을 행하고 있다.

面所在地의 機能水準은 郡廳所在地의 機能水準보다 현격히 낮고, 동시에 面所在地間에도 機能水準의 차이가 심하여 2~3개의 階層으로 分化되고 있다(金光益 1989). 金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계층 내부에서의 中心性의 分散程度를 의미하는 變動係數(標準備差/平均×100)가 군청소재지 읍이 17%, 일반읍이 29%, 면소재지가 70%로 나타나고 있어 면소재지간의 中心性의 差異가 격심함을 보이고 있다(金仁 1987, pp. 26-29).

2階層 中心地 수준에 있는 面(邑)所在地는 지금도 定期市場인 5日市場 또는 牛市場이 서고 있으며, 여관, 가축병원, 농약·종묘·비료상, 가전제품, 주요소 등과 같은 專門店과 비교적 다양한 生活用品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2個 面 정도를 背後地로 하는 中心地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面所在地는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보건소, 농협연쇄점 같은 공공서비스 기능과 다방, 음식점, 농기계 수리점, 철물점, 정육점, 잡화점, 연탄가게 정도의 사적 서비스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行政서비스 機能은 비교적 충실하나 面生活圈의 私的서비스 中心地로서의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 더우기 行政서비스 외에 私的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面所在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面所在地의 機能分化는 면소재지 자체의 인구규모와 배후지의 인구규모, 상위 중심지와의 접근성 정도와 결절성의 정도, 주변지역의 특성(관광지, 농공단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유인 시설, 군부대 주둔)등의 원인에 의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마을(行政部落)단위에는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공동창고, 잡화점 등의 시설이 1개 정도 입지하고 있으며, 國民學校 所在地나 結節性이 높은 곳에 位置하고 있는 마을은 선술집, 연탄가게, 문방구점, 이발소, 보건진료소, 약방, 소규모 농기계수리점과 같은 시설 중에서 몇가지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기초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의 共同利用施設은 施設數 자체가 不

표 5－17 마을단위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現況(周德面 事例)

單位：個, 坪

마을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창고			
		대상사업량		추진실적		대상사업량		추진실적		대상사업량		추진실적		대상사업량		추진실적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창전	창전5리	1	22.5	1	22.5	1	15	1	15	1				1	25		
	4리	1	25	1	25	1	20	1	20	1				1	50		
	1리	1	31	1	31	1	11	1	11	1				1	50		
대곡	동산미	1	19.8	1	19.8	1	20	1	20	1				1	20	1	20
	명동	1	19.2	1	19.2	1	15			1							
	원대곡	1	30	1	30	1	15			1							
삼청	청양	1	11.8	1	11.8					1							
	미락	1	20	1	20	1	20			1				1	20	1	20
	능촌	1	70	1	70	1	15	1	15	1				1	30		
	묵동	1	25			1	15			1				1	30		
	삼방	1	25	1	25	1	12	1	12								
신양	마치	1	35.7	1	35.7	1	18	1	18	1							
	신양1구	1	90.7	1	90.7	1	43	1	43	1		1					
	2구	1	50	1	50	1	50	1	60								
	3구	1	20	1	20	1	30	1						1	50		
신중	신촌	1	30	1	30												
	원신중	1	20	1	20	1	20	1	20								
화곡	계막	1	25			1	25		1					1	45		
	원화곡	1	25			1	20		1					1	30		
사락	원사락	1	20	1	20	1	25	1	25	1							
	매남	1	15	1	15					1				1	20		
	음동	1	20												20		
제내	성동	1	34.7	1	34.7	1	24	1	24	1				1	50		
	풍덕	1	32	1	32	1	20	1	20	1		1					
장록	원장록	1	30	1	30	1	15	1	15	1				1	50		
	봉천	1	30	1	30	1	15	1	15					1	50		
	지내	1	30	1	30	1	15							1	50		
덕련	창동	1	27	1	27	1	20	1	20	1							
	조동	1	20	1	20	1	20							1	40		
당우	원당우	1	30			1	30	1	30	1				1	40		
	유동	1	20	1	20					1							
	석우	1	43.6	1	43.6	1	30			1				1	50		
총계		32	948	27	823	28	603	16	363	26		2		21	810	2	65
평균			29.6		30.5		21.5		22.7						38.6		32.5

資料：周德面事務所

足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規模가 작고 老朽化되었으며, 內部構造 또한 단순하여 住民의 利用率이 낮다〈표 5－17, 5－18〉.

農村住民의 商品購買 및 서비스 施設 利用패턴을 보면 일상식료품·소모품, 보건진료소, 약국, 다방·술집과 같이 利用頻度가 높은 기본적인 日常生活需要에 관련된 것이거나 농기구수리소, 농협 등 농사일에 관련된 施設은 面(邑)所在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안경, 치과, 종합병원, 예식장 등과 같이 利用頻度는 낮은 대신 일정수준의 施設內容과 專門性을 요하는 商品이나 施設은 地方中小都市나 大都市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따라서 高次 서비스에 있어서는 農村中心都市가 地方中小都市나 大都市에 의해 商圈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19〉.

표 5－18 마을회관 이용빈도 : 주덕면 사례

單位:里, %

이용 빈도*	마 을 수	비 율
월4회 이상	19	59.4
월1～3회	9	28.1
거의 이용하지 않음	4	12.5
계	32	100.0

* 노인정 이용은 제외했음.

2. 開發對象施設의 範圍와 整備方向

가. 開發 對象施設의 範圍

人間環境(man's environment)은 人間을 主體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有形 및 無形의 客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아 自然을 통하여 進化過程에서 나온 여러가지 要素와 文化를

表 5－19 상품 및 서비스시설 유형별 이용형태

분 야	행선지 / 상품 및 시설	면(읍)소재지	군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중심도시)	합 계
구매	일상식료소모품	4190 (72.7)	836 (14.5)	598 (10.4)	137 (2.4)	5761 (100.0)
	옷, 신발	3161 (58.1)	1009 (18.5)	853 (15.7)	417 (7.7)	5441 (100.0)
	가전제품	132 (33.7)	337 (21.6)	389 (25.0)	307 (19.7)	1558 (100.0)
	안 경	525 (33.7)	337 (21.6)	389 (25.0)	307 (19.7)	1558 (100.0)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6714 (78.1)	264 (12.0)	160 (7.3)	56 (2.6)	2814 (100.0)
	약 국	1979 (71.4)	403 (14.5)	281 (10.1)	110 (4.0)	2773 (100.0)
	한 약 방	1149 (59.8)	343 (17.9)	262 (13.6)	166 (8.6)	1920 (100.0)
	출 산	830 (56.7)	239 (16.3)	234 (16.0)	161 (11.0)	1464 (100.0)
	치 과	582 (31.9)	390 (21.4)	476 (26.1)	378 (20.7)	1826 (100.0)
	종합병원	381 (18.3)	266 (12.8)	616 (29.6)	819 (39.3)	2982 (100.0)
농업관련시설	농기구 수리소	1774 (81.2)	238 (10.9)	146 (6.7)	27 (1.2)	2185 (100.0)
	농협	2362 (91.6)	135 (5.21)	73 (2.8)	9 (0.3)	2579 (100.0)
기타시설	다방·술집	1612 (81.0)	201 (10.1)	128 (6.4)	50 (2.5)	1991 (100.0)
	예 식 장	726 (61.6)	395 (18.7)	441 (20.9)	545 (25.9)	2107 (100.0)
	합 계	22118 (61.6)	5505 (15.2)	5071 (14.0)	3519 (9.7)	36213 (100.0)

註：國土開發研究院의 各圈域別 定住體系 研究結果를 綜合하여 再作成했음.

가지고 人間이 만들어 낸 모든 要素들의 行列(matrix)이라고 하기도 하고, 좁게는 인간의 生存과 健康 및 삶의 향유에 필요하고 인간의 個性과 삶의 目標를 개발시키는데 긴요한 物理的 狀況(physical circumtances)의 結合이라고 개념되기도 한다(金安濟 1979, p. 21).

人間의 生活環境(man's living environment)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대단히 복합적이니만치 아직까지는 槪念的 合意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空間(地域)計劃의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말한 좁은 의미의 人間環境 槪念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環境要素 중에서 自然環境에 속하지 않은 人工으로 형성된 處所(空間)로서(申順浩 1988, pp.108－109.), 인간의 再生産活動과 관련된 部分을 生活環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生活環境施設은 인간의 再生産에 관한 部分에 기여하면서, 施設에 대한 財政投資가 經濟上의 利潤을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農村整備編輯委員會 1978, p. 422.)

농촌에 있어서 어떤 施設이 生活環境 整備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農村施設에 대한 分類가 필요하다. 農村施設에 대한 分類는 形態에 의한 分類, 機能에 의한 分類, 社會體制의 維持를 위해 必要한 施設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分類하는 基準이 있으며, 각각의 基準에 의한 分類方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農村施設을 形態上의 特性에 의해 分類하면 點的施設, 線的施設, 面的施設의 3가지로 구분되거나 立地서비스,네트웍서비스, 分配 및 蒐集서비스, 個人的 서비스의 4가지로 區分되기도 한다〈표 5－20, 21〉.

둘째, 施設이 機能에 따라 分類하면 다음과 같은 種類로 나눌 수 있다(藤本信義 1986, pp. 13～15).

표 5－20 形態에 의한 農村施設의 分類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點的施設	○建築法上의 建築物	學校, 商店, 病院, 住宅 등
	○建築物 以外의 屋外裝置	揚水펌프, 水門, 郵遞筒, 街路燈, 公衆電話박스,
線的施設	○交通網	道路, 鐵道, 河川
	○情報에너지 供給處理系統	電氣, 가스, 上水道, 下水道, 電信電話, 農用排水路
面的施設	○레크레이션空間	公園, 遊園地, 綠地, 運動場
	○生活空間	農耕地, 牧草地, 養殖場

資料:籐本信義, "農村計劃에 있어서 施設調査에 대하여," 「農村計劃技術資料集」, 農業振興公社, 1986, p. 12.

표 5－21 形態에 의한 農村 서비스(施設)의 分類

	서비스(시설)의 형태	서비스(시설)의 내용
고정 (fixed)	입지서비스(시설)(Site Service)	학교, 상점, 체육시설, 레져 및 사회시설, 의료시설, 우체국, 도서관
	네트웍서비스(시설) (Network Service)	전기, 가스, 용수, 하수처리, 전화, 도로, 철도
이동 (mobile)	분배 및 수집 (Distribution and Collection)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 우편, 이동도서관, 이동상점
	개인적 서비스 (Personal Service))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응급서비스

資料:I. M. Gilder, Rural Planng Policies : An Economic Appraisal, *Progress In Planning*, Vol, 11 Part3, 1979, p. 228.

① 주거시설	②생활공동시설	③의료시설	④문화시설
⑤교육시설	⑥레크레이션시설	⑦복지시설	⑧행정시설
⑨보안시설	⑩통신시설	⑪교통시설	⑫공업처리시설
⑬종교시설	⑭숙박시설	⑮서비스시설	⑯판매시설
⑰업무시설	⑱공업시설	⑲농업관련시설	

셋째, 어떤 施設이 가장 基本的이며 重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구분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體系의 정상적인 機能遂行을 위해 필수적인 施設과 대다수의 住民에게 중요한 施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基本的인 施設의 優先順位는 그 나라의 社會體制, 文化的 要素, 經濟發展水準 등과 같은 다양한 要因에 의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西歐資本主義國家, 社會主義國家, 開發途上國家로 區分하여 살펴본다(Richard E. Lonsdale and Gyorgy Enyedi 1984, pp.8－11).

① 西歐 資本主義國家의 農村 基本施設(서비스)

교육	전기공급	보건
경찰·소방	우편서비스	공공교통
휴양·문화시설	도로	통신
폐기물 처리	용수공급	

② 社會主義國家의 農村 基本施設(서비스)

교육	전기공급	소매상점
주택	공공행정	보건
휴양·문화시설	수선시설(기계,	공공교통
식당	용구, 신발 등)	용수공급

③ 開發途上國家의 農村 基本施設(서비스)

농업지도서비스	교육	주택
보건(영양 및	용수공급	복지프로그램

가족계획 포함)　　전기공급

도로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地方政府가 主體가 되어 農村計劃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環境整備事業의 對象이 될 수 있는 施設의 範圍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① 公共的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施設.

② 현재 公共投資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地域의 空間構造와 住民의 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公共的 手段에 의해 整備해야 할 施設.

③ 民間資本의 投資對象이지만, 民間部門의 利潤護得 原則에 따라 설치되도록 놔 둘 경우 地域에 좋은 效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公共的 立場에서 誘導 또는 規制가 필요한 施設.

④ 住民의 利用頻度는 높지 않지만 地域住民 全體의 安全性, 快適性, 便利性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施設. 여기에서는 住民의 基本需要(basic－needs)와 관련되는 施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效率性(efficiency)와衡平性(equity)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槪念的 範圍에 따라 農村生活環境整備의 對象이 되는 構體的인 施設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交通施設 : 도로, 교량, 간이승강장, 가로등, 교통안전시설.

② 生活基盤施設 : 생활용수 급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비 및 시설

③ 生活便益施設 : 문화시설, 복지시설, 부락 공동이용시설 등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④ 餘暇·休養施設 :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open space, 공원시설

⑤ 敎育施設 : 학교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⑥ 醫療施設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병원

여기서 敎育·醫療施設은 全國的인 統一性을 要하는 施設이므로 論議

에서 제외한다.

나. 整備方向

1 生活環境施設의 配置基準 檢討

都市에서의 施設配置는 대부분 利用人口 및 施設利用距離를 기준으로 한 配置方法이 사용된다. 人口密度가 높은 동시에 均等한 分布를 보이며, 公的 交通手段이 整備되어 있는 都市의 경우는 對人口比에 의한 施設配置基準이 施設利用距離基準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對 人口比基準과 最大距離槪念에 의해서 施設配置를 하면 居住民에게 거의 동등한 施設利用便益을 향수케 할 수 있다.

그러나 人口密度가 낮은데다 聚落과 農耕地가 불규칙하게 분포됨에 따라 人口密度가 不均等하며, 道路開發水準이 낮고 마을의 位置에 따라 公的 交通手段 接觸機會의 差別이 심한 농촌지역에서는 人口만을 施設配置의 基準으로 삼을 경우 住民들의 施設利用便益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人口基準과 함께 농촌지역의 空間的 要因을 고려해야 生活便益施設을 보다 均衡있고 效率的으로 배치할 수 있다.

Morrill과 Symons에 의하면 農村서비스機能(function)의 立地를 "社會的으로 요구되는 一定水準의 서비스施設의 設置·運營費用과 住民들의 서비스施設 利用을 위한 移動費用이 최소한의 全體體制費用으로 충족되는 곳에 배치하는 것, 또는 制限된 豫算 아래서 서비스의 量을 極大化할 수 있는 效率的인 形態"라고 定義하고 있다(Dennis A. Rondinelli 1985, pp. 233－236).

여기서 서비스施設의 均衡分布라는 槪念은 세가지 다른 형태를 지닌다.

① 體制衡平(system equity) : 便益施設에 이르는 平均時間이 규정된 時間 또는 距離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平均到達時間 基準에 의하면 施設立地 選定에는 어느 정도 均等性을 확보할 수 있지만,

平均到達時間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地點으로부터의 到達時間의 隔差는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規模가 작은 대신 所要施設數가 많은 施設의 立地決定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平均到達時間이 줄어들더라도 效率性이 떨어지고 平均費用이 增加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② 最小基準(minimum standard) : 社會的으로 허용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비율의 住民들만이 便益施設로부터 限界距離(critical distance) 밖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로부터 3㎞ 이상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限界距離보다 먼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便益施設에 대한 接近度는 훨씬 증대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人口密集地域 住民들의 費用增加와 함께 施設運營效率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③ 變異性의 範圍(range of variability) : 일련의 便益施設로 접근하는데 所要되는 時間이나 距離의 分布頻度가(frequency distribution)가 施設의 立地決定의 基礎가 되며, 平均에 대한 變異度가 작을수록 施設이 均等分布했음을 나타낸다. 이 기준에 의하면 각종 便益施設을 규칙적인 中心地體系를 따라 배치하거나 全地域에 格子型으로 배치함으로써 變異度를 낮출 수 있지만, 만일 지역내의 人口密度나 所得의 隔差가 크다면 變異度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施設의 立地費用을 증가시키고 運營效率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基準을 조합해서 사용하거나 하나의 施設에 사용했던 기준을 다른 施設에 사용해야 한다.

오버그(Overg)는 農村施設의 均衡配置와 效率的 運營, 즉 衡平性(equity)과 效率性(efficiency)이라는 서로 다른 目標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地域的인 條件에 따라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갖는 戰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① 만일 都市體系의 效率性이 主要目的이 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接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目標라면 가능한 한 首位中心地(largest

central places)에 많은 施設을 입지시키도록 한다.

② 만일 지역내 여러 곳에 살고 있는 住民에게 接近度를 높여줌으로써 地域均衡(regional efficiency)을 이루는 것이 주된 目標라면, 기존 시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도록 하되 中心地 階層別 優先順位에 따라서 空間的으로 分布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증대시키기 위해 部門別 效率性(sectoral efficiency)이 주요 목표가 된다면 이미 서비스 機能이 立地하고 있는 곳에 施設配置의 優先順位가 두어져야 한다.

④ 기존의 서비스와 便益施設에 대한 接近이 어렵거나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住民들에게 接近度를 높임으로써 定住體系의 均衡(settlement system equity)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는 기존의 施設이 적거나 없는 中心地에 새로운 施設들을 입지하도록 해야 한다.

⑤ 定住體系내에서 一時的인 效率性(temporal efficiency)이 중요하게 고려될 경우는 실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서비스 施設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中心地에 施設을 입지시켜야 한다.

[2] 生活環境施設 配置 基本方向 設定

農村生活環境施設의 配置는 基本的으로 定住生活圈의 統合 또는 活性化라는 前提 아래서, 주어진 豫算으로 供給者의 立場(設置投資費의 最小化와 運營效率의 極大化)과 需要者의 立場(移動費用의 最小化)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農村地域內의 各級 定住單位가 목표로 하는 機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定住體系構想 結果를 수용하여 施設配置計劃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定住單位別 施設類型別로 適正規模와 數의 生活環境施設을 배치해야 한다. 즉, 生活便益施設과 餘暇·休養施設은 高次 定住單位일수록 施設內容의 專門性을 높이고, 下位 定住單位로 갈수록 서비스 機能의 複合化를 추구하되 巡廻集配서비스(circulatory delivery and collection ser-

vices)를 강화한다. 生活基盤施設은 一次的으로 利用人口의 規模를 고려하여 施設規模와 內容을 決定해야 한다.

셋째, 各階層의 定住單位 또는 施設과 地域住民과의 接近性을 제고하기 위해 交通, 通信施設을 整備해야 한다.

넷째, 年齡, 性別, 職業과 같은 住民의 特性에 따라 施設利用의 目的, 利用頻度, 移動距離, 利用交通手段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社會·經濟的 環境의 變化를 고려하여 農村空間의 계속적 변화에 대한 伸縮性과 適應性을 갖는 施設配置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① 각 發展段階에 상응하는 가장 適切한 施設配置計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과, ② 한 段階에서 다음 段階로의 適應的인 轉換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신축성을 지닌 배치계획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R. Weitz. 1979).

3. 生活環境 部門別 施設 整備方案

가. 交通 施設

[1] 展望과 課題

農村社會의 與件變化는 農村의 交通需要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먼저 農業의 商業化, 專門化는 都市 商品市場으로의 신속한 農產物 流通을 위한 交通需要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農業人口가 계속 減少될 것으로 전망할 때, 부족한 勞動力과 상승하는 農村賃金을 상쇄하기 위한 農作業의 機械化는 가속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農機械의 원활한 移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農路網의 改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農村住民의 生活構造의 都市化와 이에 따른 生活圈의 廣域化는 農村中心地와 背後마을간의 日常 生活交通需要를 急增시키고 있으며, 在村脫農型의 非農業 勞動人口의 出退勤交通需要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것

과 더불어 自動車의 大衆化(motorization)는 農村中心地는 물론 背後農村의 駐車問題를 심각하게 할 것이며, 自動車交通의 增加에 따라 交通安全을 고려한 道路 및 交通安全施設에 대한 整備의 必要性이 크게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와 같이 高速道路, 國道 등과 같은 國家的 主要 幹線網을 중심으로 道路開發이 추진되고 農村의 日常生活道路 條件의 改善이 지체될 경우, 農村住民의 機動性(mobility)을 제약하고 배후농촌의 고립성을 심화시킴으로써 農村定住生活圈의 統合과 地域의 發展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生產空間과 연결되는 農道 등 生產道路의 저개발은 地域農業의 經營不振을 초래하여 都市地域과의 經濟成長 偏差를 더욱 확대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農村定住生活圈의 統合과 農村地域經濟의 活性化, 農村住民의 生活便宜를 위해서는 農村住民의 日常生活 및 生產活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下位道路網의 體系的 整備와 터미날, 마을 간이승강장, 우회도로, 마을外周道路 등의 확충, 交通奧地의 解消, 적절한 交通手段 對策이 요구된다.

2 農村交通의 特性과 道路의 機能

農村交通은 通行目的에 따라 生活交通, 農業交通, 公共交通의 3가지 形態로 구분되며 交通의 方向性, 交通領域의 크기, 交通手段의 選擇, Peak週期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표 5-22〉.

生活交通은 上位中心地 指向의 垂直的, 收斂的 흐름體系를 보이며, 交通目的이 高次化될수록 交通領域은 廣域化되어 가지만 通行密度는 낮아진다.

農業交通은 農業生產活動을 위한 交通과 集·出荷 등의 流通을 위한 交通으로 구분된다. 農業生產을 위한 交通은 마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주변의 農耕地로 發散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村의 대부분이 마을과 경지가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어 마을과 마을간의 관

계에서 보면 대체로 水平的인 양상을 띠고 있다. 集·出荷를 위한 交通은 생활교통과 유사하나 農作物의 종류에 따라서 交通範圍, 交通段階, 交通手段의 선택이 다양하다.

公共交通은 서비스 中心地로부터 출발하여 下位 마을들을 순환하는

표 5-22 농촌교통의 특성과 도로의 관계

교통특성						농촌도로*		
교통유형	교통목적	교통방향	교통영역	교통수단	피크주기	일반도로	생활도로	농도
생활교통	통근·통학	수직적 수렴적	상위중심지〉인근부락〉부락내	버스〉도보〉자전거	AM:7-8 PM:5-6	○	⊙	
	구매·서비스시설이용, 방문, 교제, 위락	수직적, 수렴적	상위중심지〉부락내〉인근부락	버스〉도보〉자전거, 오토바이	5일장또는 주간단위	○	⊙	
농업교통	집출하	수직적, 수렴적	상위중심지(지역외), 농업시설	트럭〉경운기	계절적	○		⊙
	농업생산	수평적, 발산적	농경지	농업기계〉도보〉자전거오토바이	계절적		○	⊙
공공교통	분뇨수거, 쓰레기수거, 순회진료	순환적	군, 민간 면내, 민간	트럭(특수차)〉경운기〉리어카		⊙ ○		
	우편, 행정업무 및 지도 등	순환적	면내〉군내	오토바이〉자전거〉승용차		○	⊙	

*대응 관계(⊙중요; ○보통)

그림 5-4 農村道路의 階層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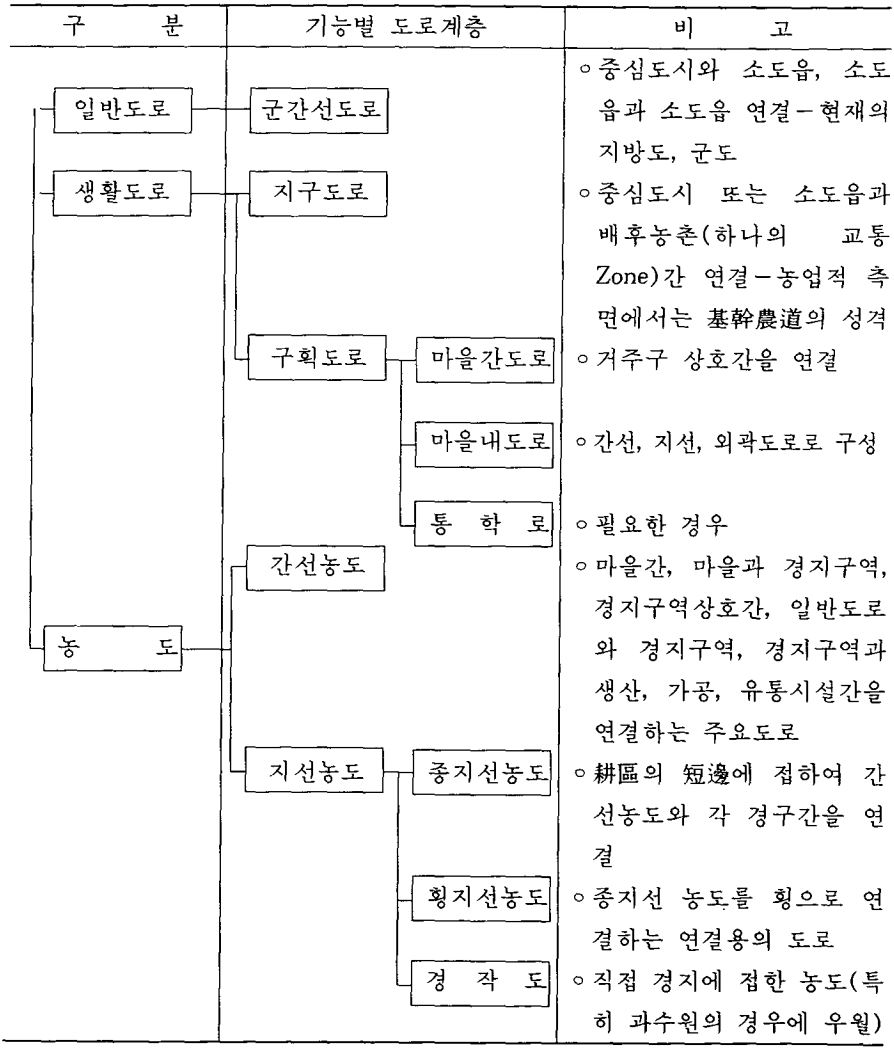

그림 5-5 농촌 간선도로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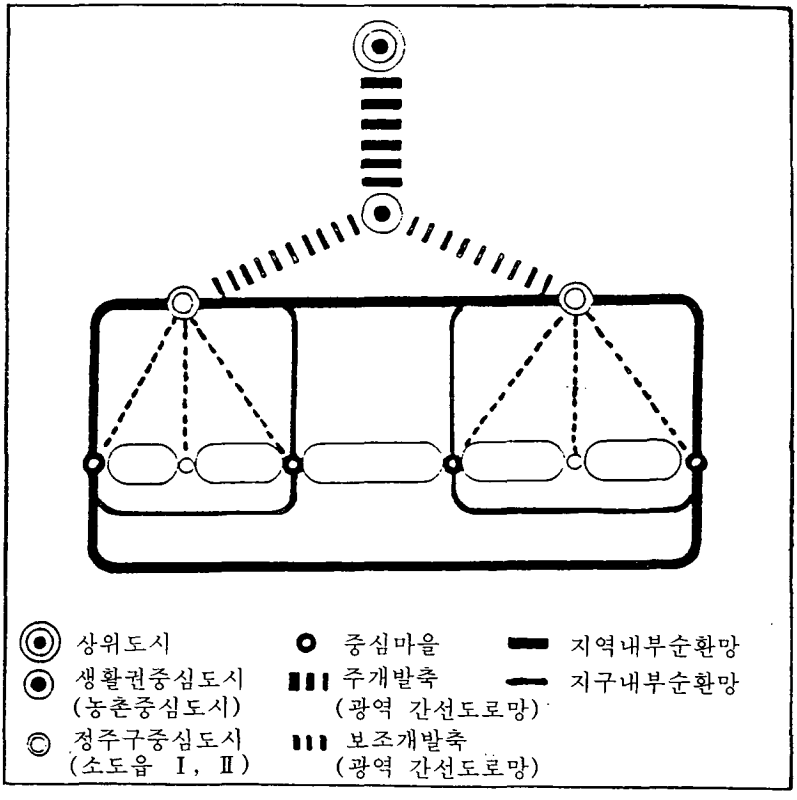

형태가 대부분이며, 서비스의 性格에 따라 範域에 차이가 있다.

물론 하나의 道路가 하나의 交通目的에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주된 交通形態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區分하면 一般道路, 生活道路, 農道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農村空間組織體系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림 5-4〉와 같이 그 機能上 크게 一般道路, 生活道路, 農道의 3가지로 구분되는 農村道路體系를 設定할 수 있다. 一般道路와 生活道路

는 農村地域의 定住體系를 반영하여 하나의 道路階層體系를 이루며 農道는 農耕地와 마을 및 農業關聯施設, 市場과의 關係 속에서 幹線, 支線의 體系를 이룬다. 여기서 地區道路, 마을間道路, 幹線農道는 農村地域住民의 生産과 生活活動 양면에서 중요한 基幹道路의 役割을 담당한다.

[3] 農村道路網 配置의 基本方向

農村道路網 配置의 基本目標는 ① 農村地域을 全國道路網에 연결시킴으로써 農村地域의 接近度를 높이고, ② 定住地 相互間을 연결시킴으로써 지역내의 communication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定住生活圈의 統合을 도모하고, ③ 農業投入財와 消費財의 分配를 도우며, ④ 農産物의 集出荷를 용이케 하는 데 두어진다(UN/ESCAP 1981, p.171). 이러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各級 道路網의 配置原則은 다음과 같다.

(가) 幹線道路

① 郡幹線道網 및 地區道路로 이루어지는 農村幹線道路網은 단순히 廣域幹線道網에 대한 補助道路網으로서 만이 아니라 農村地域內의 集散的 交通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地域內에서 循環網을 강화한다〈그림 5-5〉.

② 이들 道路는 農業交通보다는 生活(一般)交通이 우월하므로 對症療法的인 改良을 피하고 正規鋪裝을 도모해야 한다.

③ 道路의 設計基準은 郡幹線道路의 경우 40-60㎞/hr의 速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7.0m 이상의 路幅을 확보하고, 地區道路는 30-50㎞/hr의 速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 이상의 路幅을 확보한다(國土開發研究院 1984, pp. 108-112; 農業進興公社 農漁村開發部 1986, p. 388; UN/ESCAP, p. 149).

(나) 區劃道路

① 마을(居住區) 상호간을 연결하는 마을間 道路와 마을로부터 근접한 幹線道路 혹은 共同利用施設까지를 연결하는 마을進入道路는 自動車의 주행에 필요한 4.5m 이상의 路幅을 확보하며 設計速度는 40~20㎞/

그림 5-6 마을 道路의 整備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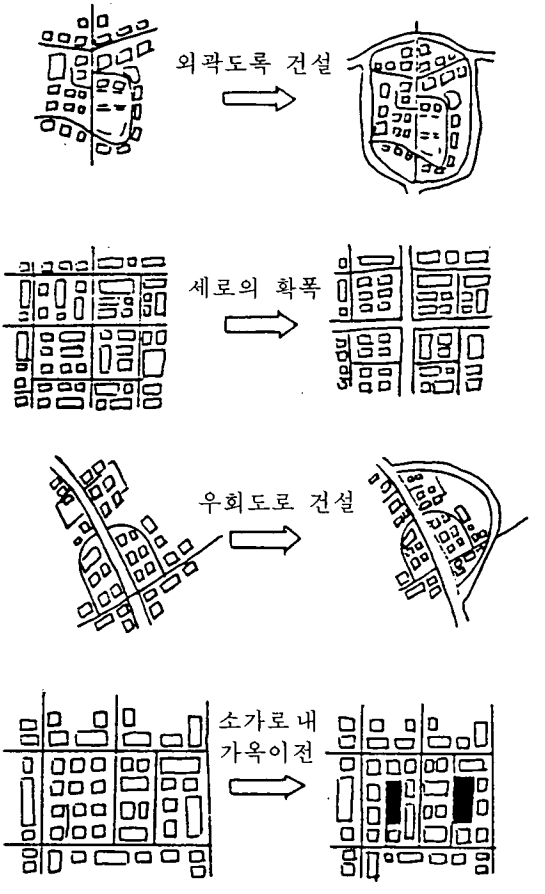

hr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通過交通이 마을內로 進入할 수 없는 패턴을 취한다.

② 마을內道路는 장래 마을의 발달 전망을 고려하여 마을 내부의 교통과 마을 외부와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가능한 한 모든 宅地에 小型自動車 및 農機械가 進入할 수 있도록 마을 內部道路網體系를 구상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共同駐車場 또는 共同農機械

保管所의 設置問題와 함께 마을外周道路를 설치하도록 한다〈그림 5－6〉. 마을 내부 도로는 2m 이상의 노폭을, 마을 外周道路는 마을間 道路나 마을進入路와 같은 4.5m 이상의 노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표 5－23 마을의 形態와 道路整備方法

마을형태	도로정비상황	정비방법
광역도로와 인접한 마을	• 도로폭원·포장면에서는 적당하나 위험성이 높다.	• 우회도로 건설 • 교통규제·교통안전시설설치
광역도로가 통과하는 마을	• 간선의 위험성이 높고 지선의 폭원·포장이 불비	• 우회도로 건설 • 분산형 외주도로건설 • 타시설정비
택지밀도가 높은 마을	• 전반적 폭원 과소로 확장 불가능	• 보완형 외주도로건설 • 타시설정비방법
택지밀도가 중간인 마을	• 폭원부족으로 확장 불가능 • 폭원은 좋으나 포장불비	• 확장 포장방법 •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포장방법

(다) 農道

① 원칙적으로 農業生産物, 農用資材의 수송이 가장 효율적이 되도록 路線을 택하고 道路密度를 높인다.

② 國道·地方道 등과의 併行路線과 迂廻道路的 성격을 가진 路線을 가능한 한 피한다.

③ 國道·地方道 등의 廣域幹線道路와 마을, 農業施設, 共同利用施設에 효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한다.

④ 境地整理事業을 시행하는 경우 幹線農路는 마을內 道路網과 연결성이 높도록 하고, 가능한 한 마을 進入道路 또는 마을 外周道路와 연결되도록 한다.

⑤ 농기계 격납고, 공동작업장은 幹線農路와 연결성이 높은 마을의 외곽부에 설치한다.

그림 5－7 農村 交通計劃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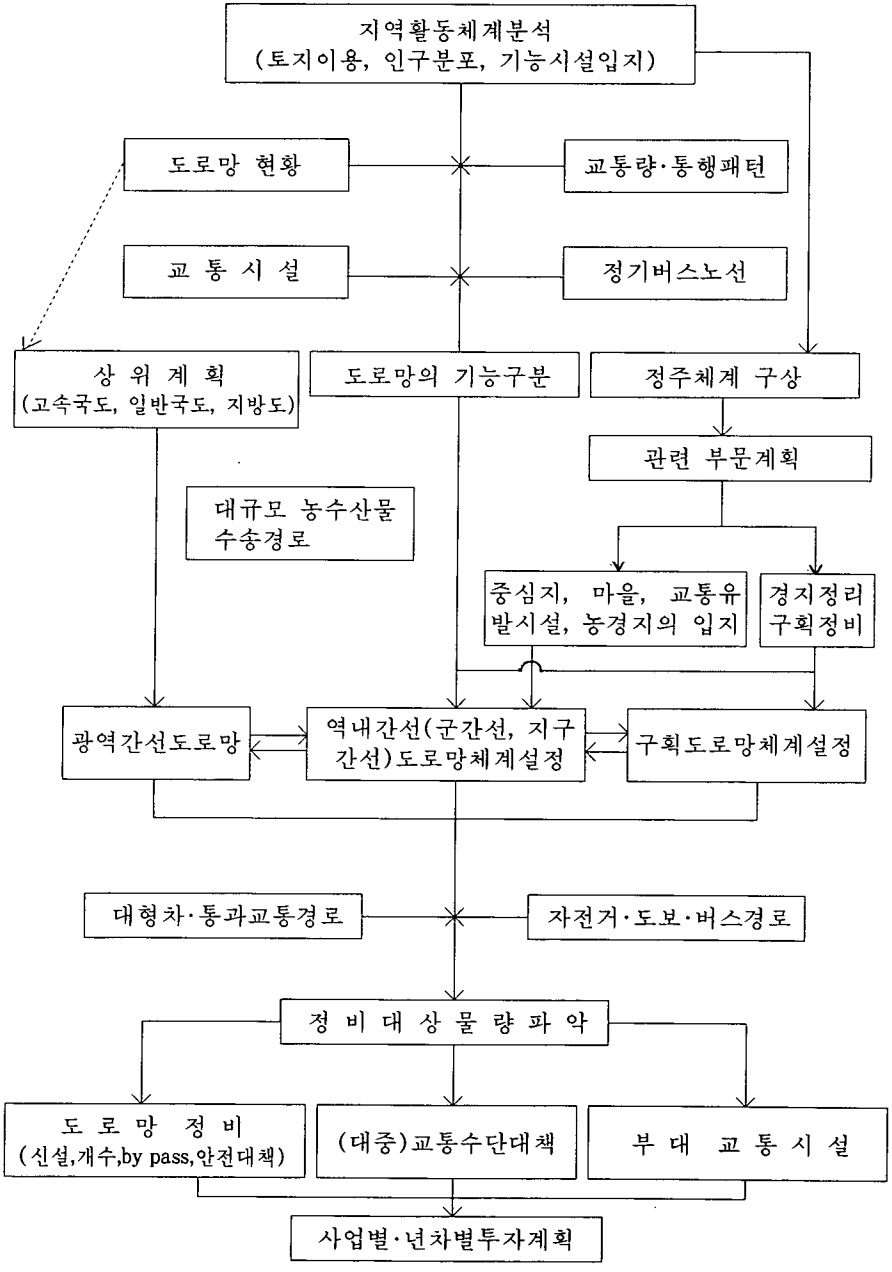

[4] 農村 交通計劃 過程과 開發對象 路線의 簡易 妥當性 評價方法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農村道路開發은 統合性과 體系性을 갖춘 農村交通計劃이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農村交通이 지속적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는 道路網體系의 構成을 위해서는 計劃的인 道路開發이 요구된다. 本硏究에서는「地域의 活動體系分析, 定住體系構想의 受容, 道路·交通 現況分析 → 道路網의 機能區分, 道路網體系의 設定 → 整備對象物量의 把握 → 年次別 投資計劃」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農村交通計劃過程을 제안한다〈圖 5－7〉.

그러나 농촌계획에서 이러한 交通計劃過程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開發對象物量을 또는 開發需要는 대단히 많은데 비해서 開發優先順位를 評價할 수 있는 實用的인 方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都市의 街路網이나 地域幹線道路는 交通量과 投資費에 관한 資料만으로도 便益費用比(B/C) 또는 內部收益率(IRR)을 산출할 수 있지만 農村道路의 경우는 특히 便益의 산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優先順位 選定指標를 구하여 加重値를 부여하여 合算하는 方法(崔洋夫, 金正淵, 李鎭煥 1987, p. 127), 優先順位選定指標를 구하여 加重値를 부여하되 각각의 項目別 評價點數를 標準化하여 總標準化點數를 산출하는 方法(農業振興公社 1986), 社會·經濟的 優先指數(SEPI : Solioeconomic Priority Index)를 통하여 評價하는 方法(金京煥, 具本忠 1988, pp. 150－153)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方法들도 計算方法上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農村의 道路開發 擔當 公務員들이 實務的으로 利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優先順位 評價方法에서 사용한 評價項目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많은 開發對象物量을 다루는데 있어 簡便하고 客觀性을 유지할 수 있는 方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優先順位 評價項目의 選定 : 優先順位 評價項目을 選定하고 各 項目에 加

重値를 부여한다. 이 때 各 項目別로 어떤 加重値를 부여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판단,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표 5-24〉.

표 5-24 各技法別 加重値 賦與結果比較

평가항목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진흥공사	金京煥, 具本忠
소득원개발	21	30	30(투자비 대 수익율)
수혜인구	10	10	15(투자비 당)
수혜경지면적	—	10	15(투자비 당)
중심지와의 거리 (오치성 극복)	17	10	10
수혜부락수	10	10	10
전략성 및 기능성	28	20	20
투자비	—	10	1단계에서 고려
도로 및 교통조건	14	—	
계	100	100	100

표 5-25 道路開發優先順位評價表 (I)

평가항목과 가중치 비중	평가변수	평가비율 (%)	노선별 상대적 평가점수			
			1	2	····	n
1. 수혜인구-10	도로에 의해 서비스되는 최대 예측인구	100				
2. 단위거리당 건설비용-15	저	100				
	평균	50				
⋮	고	50~0				
	⋮	⋮				
	총평가점수					

② 對象路線別 開發優先順位 評價表의 作成 : 이 때는 評價項目別로 加重値의 範圍를 달리한 評價表를 1~2개 추가로 作成할 수 있다〈표 5-25〉.

표 5-26 開發對象路線의 順位決定表(Ⅱ)

변형모형 / 도로번호	Ⅰ	Ⅱ	Ⅲ	……	N	최종순위 (ΣN/N)
1	6	6	4			5
2	9	9	9			9
3	3	4	2			3
4	2	3	1			2
5	5	7	6			6
6	2	3	5			3
⋮	⋮					
n						

③ 開發對象 路線別 評價點數를 順位로 變換 : 評價値가 2個 이상일 때는 合算하여 平均値를 취한 것이 각 도로의 開發順位가 된다. 〈表 5-26〉은 ②段階에서 評價表를 2개 이상 作成했을 경우의 순위결정표이다.

나. 生活用水 供給施設

[1] 需要 展望

生活用水는 農村住民의 日常生活에 기초적인 資源이며 保健衛生과 文化生活의 향유를 위한 基本需要(basic needs)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가 된다.

農村地域에 있어서 生活用水에 대한 需要는 세탁기, 수세식 변소의 증가 등과 같은 生活樣式의 變化에 따라 그 質과 量에 있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農村中心地는 계속적인 都市化의 진전에 의한 給水區域 및 給水對象 家口가 늘어남에 따라 上水道施設 擴充이 要求될 것이며, 背後農村에서도 住民의 文化生活水準의 향상에 부응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양의 生活用水 供給에 대한 수요 또한 괄목할만 할 것이다.

[2] 開發方向

農村中心地는 人口增加, 市街化의 進行, 住民의 生活水準 向上과 生活樣式의 變化, 上位計劃의 指標 등을 감안하여 一般公共上水道施設을 확충함으로써 上水道普及率의 向上, 1日 1人 給水量의 증대, 給水區域의 擴大, 漏水率의 低下를 도모한다.

背後農村地域은 마을 여건에 따라 〈표 5-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簡易給水施設 또는 個人給水施設을 設置, 管理하는 方案을 모색함으로써 100% 급수 가능케 하며 1일 1인 급수량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표 5-27 背後農村마을의 特性에 따른 簡易給水施設 開發方向

간이상수도 설치구분	현재시설 및 급수이용현황	개발의 방향
기설치지역	○ 시설이 노후하거나 용량이 부족하여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 ○ 시설이 양호하여 생활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 관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에 의한 보수유지 강화 ○ 개인펌프보급증대를 통한 지하수 이용 제고 ○ 기존 이용수원의 오염방지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미설치지역	○ 이용수원의 수질이 양호하고 자가펌프 보급율이 높은 지역 ○ 이용되고 있는 수원의 수질이 불량하고 자가펌프 보급율이 낮은 지역 ○ 급수난이 심한 지역	○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이용수원의 오염방지와 수질관리에 중점 ○ 간이급수시설 설치가능지역-간이급수시설 설치에 의해서 생활용수 공급 ○ 지형적으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대체자원의 개발이용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화

그림 5-8 廣域 簡易給水施設 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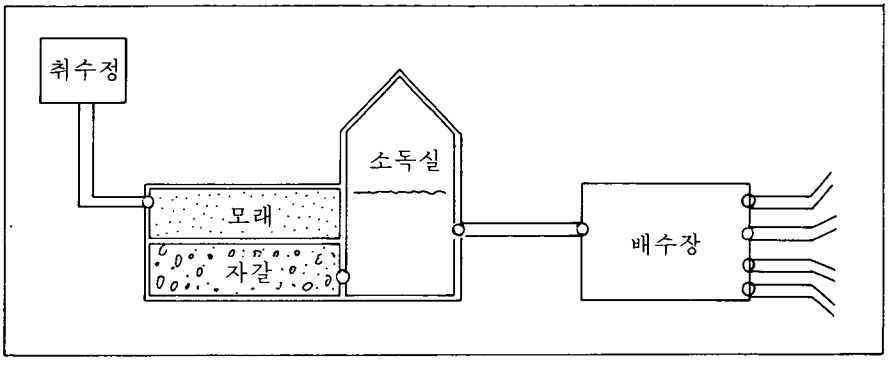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個別 自然部落單位의 簡易給水施設의 新設을 지양하고, 인접한 몇개의 自然部落을 묶어 하나의 給水區域으로 하는 것이 地形條件上 가능하고 施設設置 면에서나 衛生給水 면에서 效率的일 경우 또는 集村化의 對象이 되는 中心聚落의 경우에는 小都邑의 一般上水道에 준하는 廣域簡易給水施設을 設置, 運營하도록 한다. 廣域簡易給水施設은 取水場에서 消毒藥 정도를 투여하여 衛生處理한 후 配水하던 기존의 方式에서, 淨水場에서 淨水施設을 통하여 정수된 후 消毒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 배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衛生處理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a, pp. 385~387). 또 水源이 풍부한 지역에 取水井을 설치하여 給水難地域에도 生活用水를 普及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그림 5-8〉.

다. 下水處理施設

[1] 開發方向

都市計劃樹立 對象地域에서는 長期的인 下水道 基本計劃下에서 下水道施設과 下水終末處理施設을 段階的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함으로

써 下水處理와 施設投資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河川流域別 廣域排處理體系 안에서 地域單位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하고, 計劃排水區域은 가까운 장래에 市街化가 예상되는 지역까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下水道施設 工事時에는 市街地의 街路網開發, 地下埋設物에 대한 投資計劃과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그림 5－9〉.

背後農村地域은 居住密度가 낮은 데다 部落이 分散立地하고 있기 때문에 都市下水處理와 같은 大規模 集中處理方式을 피하고 部落別 小規模 分散處理方式을 채택하도록 한다〈그림 5－10〉. 下水管路의 設置는 장래의 종합적인 마을 開發計劃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下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自然流下方式을 고수하고, 가능한 한 部落

그림 5－9 都市計劃樹立 對象地域의 下水道施設 投資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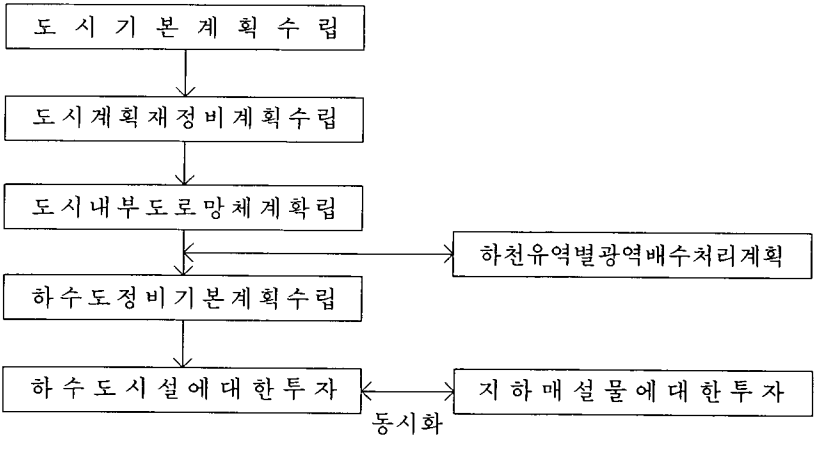

과 近距離에 終末處理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施設設置後 管理의 편의를 도모하고 地域內에서 下水가 완결처리되도록 한다. 汚泥는 농경지나 임야의 퇴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自然生態系에 재순환되도록 한다.

中心地이건 背後農村이건 장기적으로 수세식 변소의 보급을 확대하여

下水와 糞尿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되, 수세식 변소가 보급되기 전 단계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된 분뇨는 收去車輛을 이용, 수거하여 부숙탱크에서 부숙시킨 후 山林資源의 육성과 作物生産 증대를 위한 임지비배로 이용토록 한다.

그림 5-10 背後農村의 下水處理體系 槪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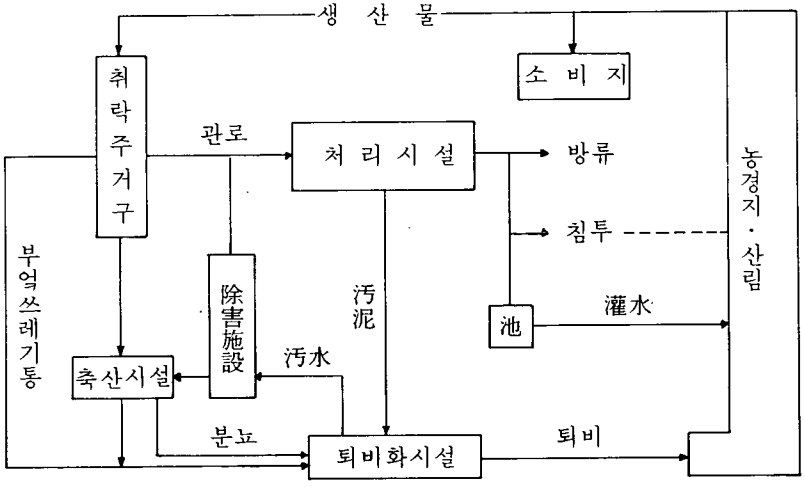

[2] 小規模 下水處理 시스템의 開發 實態와 適用

汚水發生量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小規模 聚落에서는 住居環境의 快適性과 保健衛生을 위해 雨水 및 汚水排除管路 設置정도의 整備가 필요하다. 그러나 ① 上水源의 水質保護를 위해 下水處理施設의 設置가 시급한 聚落, ② 汚水發生量은 높지만 都市計劃이 되어 있지 않고 大規模의 都市的 下水處理施設의 設置도 부적합한 農村中心地를 비롯한 人口密集취락, ③ 小規模 畜産農家 比率이 높은 취락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小規模 下水處理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小規模 聚落 下水處理 시스템으로는 ①

현수미생물 접촉법(Hanging Bio Contactor), ② 토양피복형 접촉폭기법(Soil System), ③ 생물층진막법(Bio-Pack), ④ 회전원판법(Rotating Bio Contactor), ⑤ 자갈 및 토양 정화법과 이보다 좀더 응용된 모관 침윤 트랜치법(Trench Method) 등이 있다(延世大學校 環境公害 研究所 1989; 東亞日報 1990. 11. 26, 21面).

이 중에서 자갈 및 토양정화 방법은 汚·廢水를 토양에 침투시켜 토양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과 동·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分解시켜서 淨化하는 方法으로서, 汚水處理能力은 다른 方法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設置와 運營面에서 용이성과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圖 5-11〉.

그림 5-11 자갈 및 토양정화법과 모관침윤 트랜치 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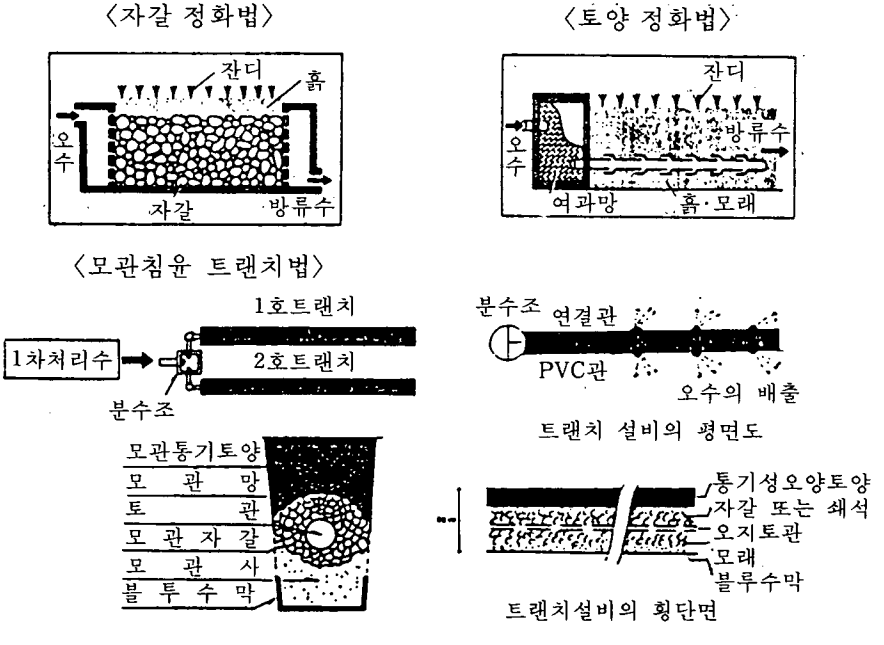

資料: 延世大學校 環境公害研究所, 「農村 小規模 취락지역 汚水處理시스템 開發事業」, 環境廳, 1989.
東亞日報, 1990. 11.26, 21面

자갈 정화법은 下水가 자갈층을 흘러 지나가는 과정에서 汚染物質이 자갈에 붙게 되고 여기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酸化·分解하는 방법으로서 깊이와 폭이 각각 1m, 길이 10m가량의 시멘트 고랑에 직경 10－15cm정도의 자갈을 채워 놓고 그 위에 흙을 20cm가량 덮고 고랑 한쪽에 하수구를 연결한다.

이 같은 정화조의 용량은 하루 20m이며 5～7년 마다 한번씩 자갈을 털어내 주면 된다. 또한 시설비용이 기존 하수처리시설 비용의 1/10 정도에 불과하며, 河床整理事業과 병행하면 그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土壤淨化法은 下水가 土壤 속을 흐르는 동안 土壤微生物이 질소와 인을 분해한 다음 이를 영양분으로 흡수토록 하는 방법이다. 즉 구멍이 뚫린 土管을 흙과 모래 속에 묻어 下水가 흙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處理容量은 자갈 淨化施設의 1/10 정도이지만 施設設置가 더욱 간단하고 5～10년에 한 번씩 흙을 갈아 엎어 주면 된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아직 標準設計方式과 管理指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라. 쓰레기 處理施設

[1] 展望과 課題

向後 農村의 都市化, 生活構造의 高度化로 연탄재, 인스턴트 食品容器, 각종 병입류 등 都市型 生活廢棄物이 더욱 크게 증대될 것이다.

營農方式의 科學化로 새로운 農業生産方式에 부수한 廢비닐, 플라스틱, 農藥 빈병 등과 같은 廢棄物이 더욱 증대되어 土壤汚染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기타 農村工業化에 따른 農村工場으로 부터의 産業廢棄物과 서비스業, 觀光産業 등의 發達로 쓰레기 排出量의 量的 增大 또한 괄목할 만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課題를 模索해야 할 것이다.

첫째, 排出되는 쓰레기의 量的 減縮을 도모.

둘째, 再生可能 쓰레기의 최대한 回收와 可燃性 쓰레기의 燃料化, 堆肥化, 燒却化로 埋立地로 搬入되는 쓰레기의 量을 극소화.

셋째, 露天投棄方式(Open Dumping)을 지양하고 衛生埋立方式(Sanitary Landfill)으로의 埋立方式을 전환.

네째, 收去 效率性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收去體系를 確立.

[2] 開發方向

個別 邑面所在地別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收去體系를 지양하고, 地域特性과 交通連結性, 定住體系를 고려하여 廣域 收去體系의 확립이 바람직하다. 즉 收去센타(中心地)에 適正規模의 쓰레기 處理場과 車輛, 收去裝置를 배치하고, 廣域收去區域內에 있는 面所在地, 收去車輛의 接近이 용이하면서 쓰레기 排出量이 많은 마을 등에 收去車輛을 연결하여 巡廻收去케 하는 롤론박스交換方式을 채택한다〈그림 5-12, 13, 14〉.

그림 5-12 農村쓰레기 收去體系 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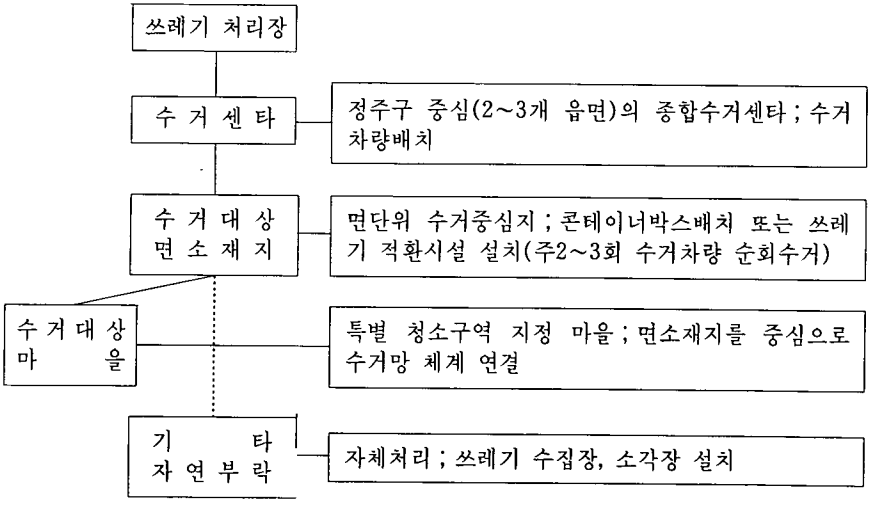

그림 5-13 수거서비스 제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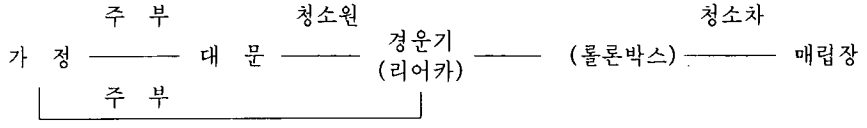

아울러 쓰레기 資源化를 위한 分離收去 및 再生機能을 활성화 한다. 可燃性 쓰레기는 마을단위로 모아서 燒却하거나 埋立場에서 燒却토록 하고, 不燃性 쓰레기는 쓰레기 埋立場으로 운반하여 매립토록 한다. 연탄재 등은 파수원이나 저습답의 보토로 활용한다. 再生可能 쓰레기는 資源再生公社의 收集機能을 강화하여 수매를 확대토록 하고, 마을단위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빈병, 폐비닐 등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그림 5-13 롤론 박스 교환 방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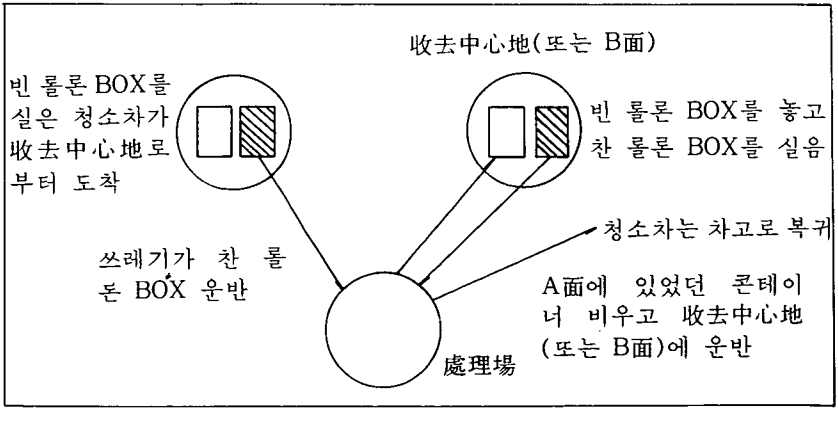

資料: 李正煥, 李政紀, "農村地域의 生活環境(1) : 쓰레기 收去計劃," 「農林地域綜合開發論」 Ⅱ, 研究團/敎育-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p. 14.

그림 5－14 쓰레기 分離收去處理 體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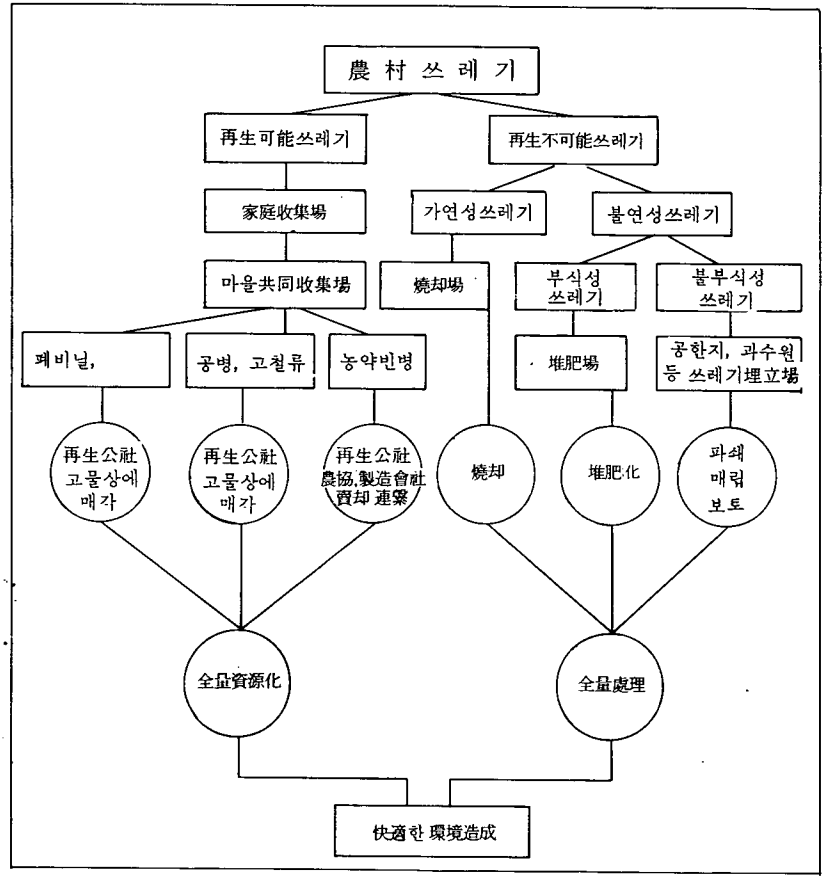

마. 生活便益施設

1 展望과 課題

離村向都型의 農村人口移動이 계속된다면 農村地域의 絶對人口도 지속적으로 減少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農村地域에서의 商品 및 서비스 施設에 대한 需要基盤의 약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機能의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臨界人口(threshold population)가 미달되는 施設들은 폐쇄되거나 서비스 내용이 부실해질 것이며, 각종

서비스 機能이 입지해 있는 農村中心地의 機能 또한 쇠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農村人口의 移出에 따른 老齡化와 婦女化 現狀은 農村住民의 消費性向과 需要의 質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農村中心地에서 거래되는 財貨와 서비스의 類型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金仁, 1987, p. 17.).

全般的인 道路交通與件의 改善과 自動車 大衆化에 따른 接近性의 向上은 農村住民의 生活行動圈域을 더욱 크게 擴大할 것이다. 특히 自動車의 利用度가 높은 靑壯年層의 行動範圍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娛樂, 通勤, 購買 등 生活의 全分野에 걸쳐 廣域化될 것이다. 한편 老人, 婦女子, 어린이 등과 같이 活動性이 낮은 層의 生活行動範圍는 여전히 마을 範

그림 5－15 農村地域의 生活便益施設의 惡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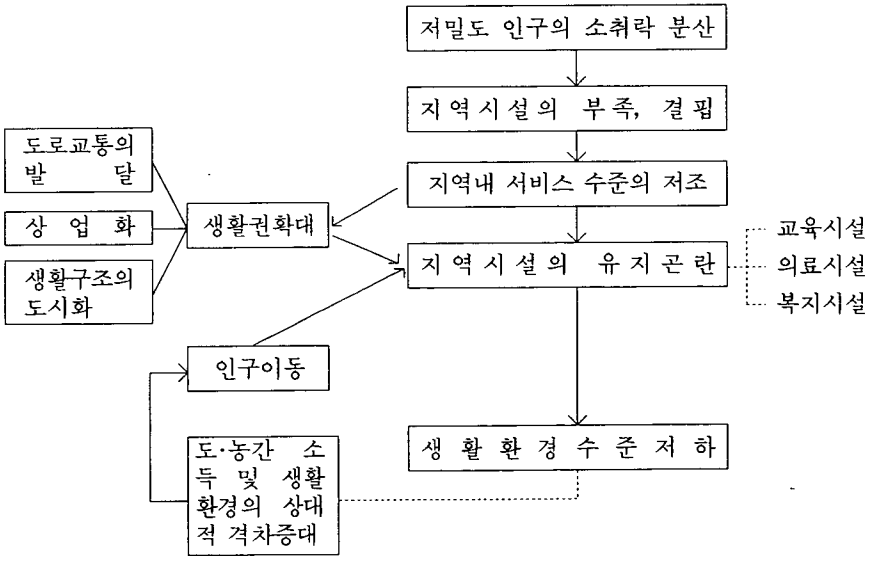

* 崔洋夫, 鄭喆謨, 前揭書, p. 65의 내용을 修正補完했음.

域 정도로 한정되어 生活圈域의 擴大傾向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며, 적절한 施設改善이 없을 경우 施設移用에 대한 不滿이 커질 것이다.

매스컴의 발달과 같은 情報化의 진행과 함께 전기, 전화, T. V. 수상기, 가전제품의 普及이 普遍化됨으로써 農村住民의 生活樣式과 生活의 質이 보다 都市的이 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農村住民들의 購買行態를 都市로 전환할 가능성을 크게 하여 農村中心地와 上位都市를 더욱 심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할 것이다.

결국 農村人口의 減少와 老齡化·婦女化, 接近性의 向上에 따른 生活圈의 擴大, 農村住民의 意識과 生活構造의 都市化는 農村施設의 維持를 어렵게 할 것이다〈그림 5－16〉.

따라서 向後 農村地域의 生活便益施設의 配置는 各級 中心地의 機能維持에 적합하고 運營과 利用面에서 効率性과 便宜性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16 中心地 階層別 機能分擔 槪念圖

주기능	부기능	구 분
H	h	주 거
E	e	고 용
S	s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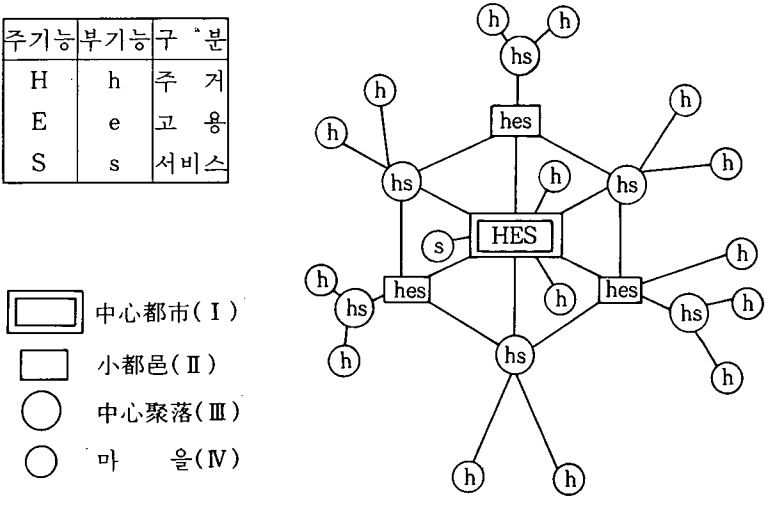

2 開發方向

生活環境施設은 그것이 設置되는 地域의 空間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① 그 地域의 定住體系와 各 定住單位의 機能分擔, ② 施設運營의 效率性을 위해 定住單位別로 그 數와 規模 및 內容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 ③ 施設과 그것을 利用하는 住民間의 接近性 向上, ④ 施設을 利用하는 住民의 特性, ⑤ 空間變化에 대한 適應性과 伸縮性을 고려해서 配置計劃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生活便益施設의 配置問題에 있어서는 ①, ②, ④, ⑤의 원칙 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이러한 原則과 관련해서 開發方向을 設定하고자 한다.

1) 定住單位別 適正機能 配置

農村定住生活圈 構想은 都市와 農村의 機能을 連繫하여 相互依存할 수 있도록 體系化하는데 있다. 즉 農村中心地는 農村에서 바라는 就業의 機會와 敎育, 文化, 醫療, 都市的인 生活便益서비스를 제공하고 農村은 都市民이 바라는 良質의 食糧, 自然과 空間, 地域의 生活文化 機能을 제공함으로써 一體的 社會生活圈을 형성한다는 것이다(朴炳柱 外 1981, p. 13.).

그리고 都市와 農村이 效果的으로 連繫되기 위해서는 中心地 階層體系가 잘 짜여야 하고, 각각의 位階上에 있는 中心地(定住單位)가 제 機能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生活便益施設의 種類와 規模, 機能內容은 그 施設을 利用하고 있는 圈域의 範圍, 즉 中心地의 位階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各級 農村中心地의 機能分擔과 必要施設에 대한 提案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李正煥 外 1989, pp. 98～100.)〈그림 5－17〉.

첫째, 農村定住生活圈의 最上位中心地로서 人口規模 2万에서 10万未滿의 市 또는 邑級 都市에 해당하는 農村中心都市는 ① 定住生活圈內의

經濟·社會·文化·行政의 中樞機能을 수행하고, ② 地域住民의 生産·生活活動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機能을 完結하며, ③ 上位都市와 地域內의 下位中心地間의 連繫機能을 수행한다.

둘째, 人口規模 2万 미만의 邑 또는 面級 所在地로서 定住區 中心地인 小都邑은 ① 定住區單位의 住民生活과 관련된 基本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부분적으로 中心都市의 機能을 일부 分擔하며, ② 中心都市와 下位의 中心聚落 또는 背後農村間의 相互 連擊機能을 수행한다.

셋째, 人口規模 1000名 內外의 中心聚落은 ① 포섭하고 있는 5~10개 마을에 거주하는 住民의 生活에 필요한 基礎 서비스의 제공과 上位中心地의 應急補助的 機能을 수행하고, ② 生活活動과 관련된 協同圈과 擴大된 마을 共同體 및 居住와 生産活動의 基本空間으로서 가져야 할 役割을 수행한다.

넷째, 最末端의 居住單位로서 自然部落은 良質의 居住空間과 共同施設 및 능률적인 生産基盤施設을 확보하게 하고 中心地와의 連繫를 강화한다.

2) 施設內容의 專門性과 複合性

中心都市와 小都邑 수준에서는 生活便益서비스를 제공하는 施設의 專門化가 필요하지만 中心聚落 또는 마을 수준에서는 하나의 施設空間에서 機能의 複合化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上位 定住單位에서는 施設의 運營效率을 높일 수 있고 下位定住單位에서는 利用圈域이 넓은 單一施設 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의 施設을 다양한 目的으로 使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農業生産 및 經營의 改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러한 施設의 專門化와 複合化의 問題는 福祉施設類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以下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첫째로, 마을單位에서는 마을 共同利用施設인 마을會館에 事務室, 會議室, 老人亭 등이 設置되어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협소하며

(주덕면에 있는 마을회관의 평균 건평은 29.6평이다) 事務室과 會議室은 利用率이 매우 낮으며 老人亭은 겨울철 이용이 어렵다. 韓國女性開發에서 마을會館 活性化를 위해 里長들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를 보면 '마을회관의 확장 및 신·개축'이 35%, '예식장, 노인정, 마을구판장, 공동창고 등의 다목적 이용'이 25%, '온돌보일러 사용에 의한 겨울철 이용'이 20%, '운영비 조달 및 지원'이 10%, '관리인 상주로 운영의 전문화'가 5%로 나타나고 있다(朴貞恩 外 1988, p. 116).

따라서 이제까지의 단순한 마을회관 개념보다 종합적인 마을福祉會館으로의 개념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부지를 추가확보하여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탁아소, 문화 및 오락시설, 공부방, 목욕탕, 이발소, 마을구판장 등 住民의 基礎生活需要를 충족할 수 있는 機能空間을 주민의 合意아래 설치하되 가급적 모든 기능은 복합화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共同生活空間은 마을 共同倉庫, 共同作業場 등의 共同生産空間과의 연계성이 높도록 고려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邑·面 福祉會館은 小都邑을 중심으로 건설하되 規模와 運營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都市地域을 中心으로 주로 都市零細民들의 福祉增進과 社會敎育 등을 실시하고 있는 地域社會福祉館(community walfare center) 정도의 機能을 하는 施設을 中心都市에 設置할 필요가 있다〈표 5-25〉.

3) 住民 特性과 施設 類型

農村施設의 配置는 空間構成의 效率性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利用하는 住民들이 滿足할 수 있도록 life cycle을 고려해야 한다.

幼兒들의 行動範圍는 마을 居住區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놀이터로서는 마을의 생활중심공간, 수목, bench, 양지 바른 곳 등이 필요하다. 幼兒園은 中心聚落 정도가 적당하다. 兒童들도 生活行爲의 주류는 스포츠, 娛樂, 敎育이지만 그 기본은 모두 놀이에 귀착하고 있다.

표 5－28 地域社會福祉館의 事業分野別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비 고
아동복지	· 상담서비스 · 서클지도 · 독서실제공 · 유아원제공 · 특수아동 지도 · 학비보조 · 교육활동 · 캠 프	①도시영세지역인 경우는 유아원이 부설되어 있어 아동복지의 주류를 이루고, 동시에 독서실 제공으로 문고이용. ②클럽활동을 이용 집단지도사업과 학습의욕고취, 취미생활을 통한 협동심·공동체의식 함양
청소년 지 도	· 상담서비스 · 집단활동 · 야간학교 운영 · 도서실 제공 ·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가출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 캠프서비스	①일반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제아동, 학습부진, 미진아 등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이탈되거나 낙오된 청소년의 사회복귀, 사전예방, 치료적 접근방법 ②근로청소년의 야학으로 향학심 고취
가 정 복 지	· 상담서비스 · 생활자금 지원 · 미혼모사업 · 가정재활사업 · 가족계획 · 생활교육 · 직업지도, 의뢰, 알선 · 파출사업 · 취미활동 · 자모활동운영(어머니교실)	①영세가정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자녀의 취업지도, 진학·직업알선 ②직업훈련교실 운영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실시 ③영세가정의 가정재활사업으로 직접적 서비스제공
지 역 복 지	· 지역실태 및 욕구조사 · 정보교환 ·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사회개발사업 · 국내후원자사업 · 자원봉사자교육 · 훈련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 · 주민교육－교양, 취미, 봉사 · 시설제공－예식장, 회의실	①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이들을 동원 활용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 ②지역영세민 또는 일반주택을 상대로 지역사회교육을 실시, 자립촉진 ③자립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와 건전오락, 취미생활 제공

	프로그램 내용	비 고
의료복지	· 제1차 보건진료사업 · 진료사업 · 의료상담	①개별진료 및 집단진료를 통한 의료보호 ②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상담
노 인 복 지	· 노인문제 상담서비스 · 경노행사 · 노인정, 노인교실운영 · 노인대학운영 · 생보자 후원사업	①지역의 영세노인으로 65세이상인 자 ②상담, 결연, 후원금지급을 통한 사회봉사

資料:中央大學校 附設 社會福祉館 硏究部,「零細民을 위한 社會福祉 事業模型에 관한 硏究」, 保健社會部, 1987.

靑年層의 生活行爲의 主流는 스포츠, 娛樂, 生産, 敎育이지만 兒童의 경우는 모두 놀이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靑年의 경우는 行爲의 形態 자체가 內的欲求에서 생긴 것이므로 施設整備의 基準이 된다. 通勤·通學을 주로 하는 靑年은 職場과 學校가 입지하고 있는 小都邑, 中心都市 또는 上位都市가 日常的인 生活空間이 되지만, 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靑年의 경우는 마을~小都邑 수준이 日常的인 生活空間이 된다. 물론 餘暇活動의 경우는 이보다 더 넓어진다.

婦人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購買活動을 제외한 대부분의 生活行動이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교육, 사회조직활동, 스포츠 등의 활동이 늘어난다고 보면 生活行動의 많은 부분이 小都邑이나 中心都市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老人의 경우는 日常生活圈이 넓어야 行政部落單位까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老人들에 대한 醫療서비스, 娛樂, 가벼운 生活活動 등의 機會가 쉽게 제공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네트워크의 整備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住民들의 特性과 空間效率性을 고려했을 때의 施設設置의 方向은 〈표 5-29〉와 같다.

표 5－29 中心地 階層別 施設配置

시 설	마 을	중심마을	소도읍	중심도시
교육시설		국민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의료시설	이동진료소	보건진료소, 약방	보건지소, 의원, 병원(치과, 내과, 외과), 약국	보건소, 종합대학(치과, 내과, 과), 약국
문화시설	마을회관, 어린이공부방	지역사회센터, 이동도서관	다목적문화관(小) 도서관(小)	다목적문화관(大) 도서관(大)
복지시설	노인정	보육소, 탁아소, 노인정	지구복지센타,	지역사회복지관
상업시설	소규모 상점	일용식료품점 일용잡화점 공동구판장	신변장신구류, 전문상점, 연쇄점, 수퍼마켓	연쇄점, 수퍼마켓, 백화점, 전문상가
위락·여가시설	어린이놀이터	체육관 및 운동장(국민학교 구내) 어린이놀이터	체육관 및 운동장(중학교 구내) 지구공원, 다방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군민공원, 극장
영농관련시 설	마을창고, 농기계보관창고	지구단위저장시설 수협농기구수리소	집하시설, 농기구 및 영농자재 판매소, 대형농기구수리소	저장 및 가공시설, 전문수리 및 정비소, 농기구 및 영농자재 도매상
산업시설 금 융	가내수공업 작업장 비공식 신용	소규모 공예품공장 예금취급소	부업단지 농·수·축협 단위조합	농촌공업단지 은행, 농·수축협 조합
교통통신	마을도로(사리도 및 시멘트 간이 포장도록), 우체통, 가로등	지구도로(시멘트 간이포장도로), 버스정류장, 우편취급소, 공중전화	정주구도로(아스팔트포장 및 시멘트 간이포장도로), 버스터미널, 단위우체국, 영농정보센터지소	정주생활권 간선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종합버스터미널(자동차수리시설), 우체국, 전화국, 영농정보센터

第 6 章
定住圈 開發政策의 評價와 改善方向

1. 開發政策의 評價

가. 開發圈域上의 問題点

定住生活圈上에서 面單位가 갖는 位相은 그 속에 담겨질 구체적인 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行政的인 便宜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대상지역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面單位는 基礎自治團體로서 郡이 수행하는 行政業務를 補助하는 行政區域이다. 동시에 面單位는 地域에 따라 특성이나 여건이 상이하고 定住生活圈內의 定住體系上에서 갖는 위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面所在地가 中心機能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보다는 中心機能을 갖지 못한 채 行政서비스機能만을 수행하는 곳이 現實的으로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面單位를 定住圈開發의 지역단위로 선택하는 것은 첫째 面單位가 國土空間上의 최하위에 속한 定住體系를 형성함으로써 가장 農村的인 地域單位가 될 수 있고, 둘째 行政區域과 不一致되는 경

우 開發事業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며, 셋째 面單位內에는 대체로 2~3個의 中心聚落과 그에 포섭되는 30~50個 自然部落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기동성의 증대로 時間距離가 크게 단축되더라도 營農의 協同圈이나 通勤圈의 範圍는 中心聚落圈의 範圍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農林水產業의 構造改善과 聚落整備 및 基礎的 生活環境과 下部構造整備를 위한 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面單位는 行政區域이기 때문에 住民의 生產 및 生活圈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定住圈開發事業에 있어서도 規模나 性格에 따라 面單位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定住生活圈上에서 차지하는 定住體系의 位相과 地域이 갖는 特性이나 與件에 따라 신중하게 接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面單位 定住圈開發政策의 開發圈域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개발대상이 되는 面이 定住生活圈上에서 차지하는 位相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空間再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定住體系와 空間構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面單位가 定住生活圈上에서 차지하는 位相에서 보면 두가지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는 데 그 첫째로는 面所在地가 인접한 面까지를 포함하여 中心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定住區單位의 中心地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로는 面所在地가 전혀 中心機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해당 面所在地가 차지하는 位相에 따라 施設과 機能의 種類 및 規模가 다르게 제공되어야 하며 開發事業의 範圍나 性格도 차이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政策은 무차별적인 적용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面單位內의 下位定住體系를 面所在地－中心聚落－自然部落으로 이어지는 3段階를 그대로 받아들여 定住圈開發의 1段階 事業期間(1990~2000年)에 面所在地와 中心聚落 3個所, 自然部落 8個所를 開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面單位에서 모두 3階層의 定住體系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며 30戶 미만의 自然部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自然部落을 그대로 둔 채 整備하여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自然部落을 모두 整備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聚落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地域에 따라서는 農業經營規模擴大 등 당면한 問題를 小規模 自然部落을 基本單位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人口가 增加하고 家族生計를 영위해왔던 農業構造下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구조화된 오늘날의 農村空間은 인구가 감소하고 상업적 기계화영농이 정착되어 가는 産業社會의 새로운 農村生活을 능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限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農村空間을 그대로 수용하여 開發圈域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나. 開發 推進體系上의 問題点

面單位 定住圈開發이 갖는 推進體系上의 問題点은 우선 農林水産部와 內務部로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1990년 현재 전국에는 1,260個面이 있는 데 이중 內務部는 奧地開發對象 403個面과 島嶼開發對象 53個面의 開發을 추진하고 나머지 804個面중 無人面 10個面을 제외한 794個面을 農林水産部가 定住圈開發 對象地域으로 지정하여 開發을 推進하고 있다〈표 6－1〉.

표 6－1 定住圈開發 對象面의 分布現況

구 분	계(면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면 수	1,260,	155	97	92	150	147	199	215	200	5
정주생활권개발	794	129	40	55	103	92	86	139	147	3
오 지 개 발	403	11	51	37	47	53	80	74	50	－
도 서 개 발	53	11	－	－	－	2	33	2	3	2
주 민 미 거 주	10	4	6	6	－	－	－	－	－	－

그림 6-1 定住圈開發事業 推進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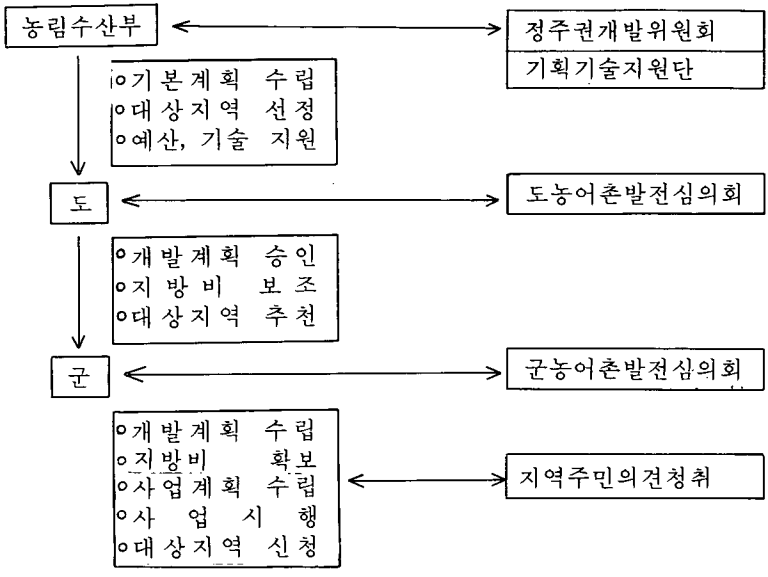

이처럼 面單位를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내용의 定住圈開發事業이 定住圈開發事業, 奧地開發事業, 島嶼開發事業 등으로 명칭지워지면서 주관하는 부처가 다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法的 體系도 달라 開發目標의 設定과 事業의 추진방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各 事業에 대한 住民의 理解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住民의 參與度가 다르고 事業間의 投資優先順位 決定方式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源調達方式과 國庫補助率이 상호간에 차이를 보여 동일 郡內의 面單位 地域住民의 混亂加重은 물론 不和感마저 조성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定住圈開發事業의 對象圈域이 面이고 面은 다시 그 下位體系에 속한 마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事業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데 開發의 全過程을 통해 面과 마을單位가 主體的인 役割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定住圈開發의 推進體系上에서 보면 地域住民이 할 수 있는 役割은 住民公聽會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

그림 6－2 定住圈開發 關聯事業의 行政組職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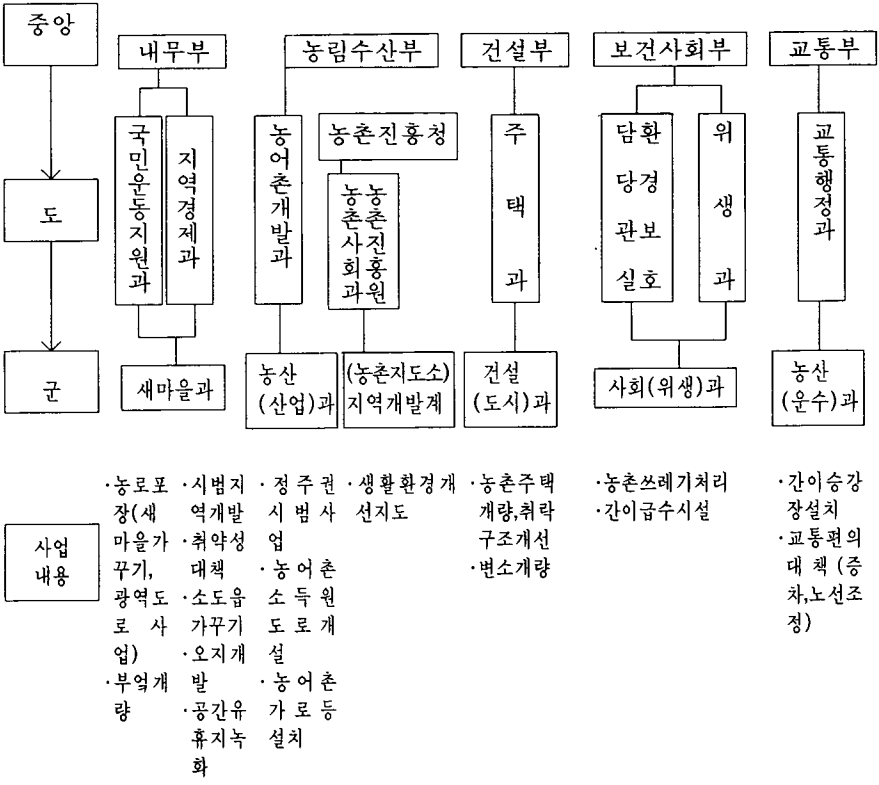

지 않는다〈그림 6－1〉. 그러나 面單位 定住圈開發에서 住民은 受惠對象인동시에 規制對象이 되고 開發事業의 結果는 住民의 財産權 行事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住民의 理解와 協調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事業이다. 따라서 定住圈開發事業의 추진에 있어서 住民은 開發의 對象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開發主體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定住圈開發과 관련된 事業을 집행하는 中央－道－郡에 이르는 行政組職體系가 지나치게 분산다기화되어 있는 점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그림 6－2〉.

農漁村定住圈開發과 關聯된 事業중에서 住宅改善, 聚落構造改善, 便所改良事業은 建設部가 담당하고 道單位에서는 住宅課에서, 郡單位에서는 建設課가 관장하고 있다. 새마을가꾸기사업, 새마을 廣域圈事業 등 새마을 관련사업과 奧地開發, 島嶼開發事業 등은 內務部가 관장하고 道單位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며 郡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定住圈開發과 農漁村 所得源道路 및 가로등事業은 農林水産部가 관장하고 道에서는 農漁村開發課가 郡에서는 農産(産業)課에서 각기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 외에 農村쓰레기處理와 간이급수시설은 保健社會部가 담당하고 道에서는 위생과와 환경보호 담당관실에서 그리고 郡에서는 社會課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간이승강장설치와 교통편의대책으로 증차와 노선조정 등의 업무는 交通部와 道의 交通行政課에서 업무를 맡고 郡에서는 農産(産業)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中央-道-郡에 이르기까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상호 종적인 系線組職 體系를 통해 사업이 집행됨으로써 상향적 개발의 추진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事業決定은 上級官廳에서 할당식으로 정해주는 물량에 맞추어 추진됨으로써 地域住民의 役割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다. 豫算支援上의 問題点

面單位 定住圈開發事業의 추진에 있어 가장 큰 難點은 豫算支援上의 問題라고 생각된다. 面單位 定住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道路, 上·下水道, 下水處理 등 下部構造改善과 마을單位의 聚落構造改善에 필요한 기초적인 基盤整備 등의 事業을 추진하는 데는 최소한 面當 112억원의 財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시범사업지구 16個面과 1991년 사업지구 121個面에 대한 國費支援額이 각각 32억원과 242억원에 그쳐 面當 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6-2〉.

이러한 豫算支援으로는 定住圈開發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住民의 政府不信과 不滿만을 고조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定住圈 開發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面當 최소 5年 以上의 事業期間이 필요하나 單年度 事業으로 그치고 있는 点도 問題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現在 시행되고 있는 補助金의 경우도 國費 50%, 地方費 50%의 水準으로 되어 있으나 現在의 地方費分擔이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融資事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定住圈 關聯事業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따라 支援基金이 각기 상이하며 상환기간도 제각기 다른 형편이다〈표 6-3〉. 또한 현재의 農漁村 住民實情을 감안할 때 融資金의 상환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표 6-2 16個 示範事業 事業費 內譯

사업내용	물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융자[1]
합계 (면당 지원금)	16개소 (1)	백만원 20,800 (1,300)	3,200 (200)	8,000 (500)	9,600 (600)
보조사업	16개소 (1)	6,400 (400)	3,200 (200)	3,200 (200)	— (—)
농어촌용수이용시설[2]	16개소 (1)	9,600 (600)	— (—)	4,800 (300)	4,800 (300)
주민생활여건개선	—	4,800 (300)	— (—)	— (—)	4,800 (300)

1) 융자는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요령에 따라 시행
2)농어촌용수이용시설의 융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임

표 6-3 部處別 定住圈 關聯事業 支援基準

사업명 \ 구분			자금명	금리	융자기간			융자(보조) 한도	융자(보조) 비율	대상자 선정 요건
					계	거치	상환			
내무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국비15%, 지방비 15% 농협20%, 주택기금50%	8%	20	5	15	농가당 1000만원 이내	건축비의 80%	
		취락구조개선	지방비		보조			마을당 4000만원 보조		
		변소개량			〃			동당30만원보조		
농림수산부	정주생활권개발	주민편익시설	농어촌개발기금	5	5	2	3	사업자별 3000만원 이내	소요자금의 50%이내	정주생활권 개발시범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주택개량	〃	5	5	2	3	호당200만원이내	소요자금의 70%이내	
	주민생활여건개선		〃	8	10	3	7	사업자당 3000만원 이내	소요자금의 50%이내	소도읍개발사업지구주민중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 (유통, 편익시설등)
	주거환경개선	부엌개량	〃	8	10	3	7	농가당100만원이내	소요자금의 70%이내	생활개선시범마을실천농가중4개회원, 농어민후계자, 독농가
		목욕탕설치	〃	8	20	5	15	〃		〃

2. 政策 改善方向

가. 合理的인 開發圈域 設定

面單位 定住圈은 郡單位 定住生活圈의 下位地域으로서 面單位를 편의상 住民의 基礎生活圈으로 설정하여 生産 및 生活環境을 동시적으로 整備해 나가는 데 目的을 두며, 上位地域인 郡單位 定住生活圈開發에서 제시한 長期開發方向에 基礎하여 구체적인 開發事業을 담는 開發圈域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따라서 面單位 定住圈은 순수한 農村地域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微視的인 地域單位로서 實踐性이 강한 地域開發事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마을과 聚落構造中心의 居住空間, 農耕地와 生産基盤中心의 生産空間, 生活環境 施設과 道路 등의 下部構造施設中心의 生活空間이 開發의 受惠者인 農漁村住民의 活動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綜合整備되어야 한다. 그리고 地域이 지닌 土地, 물, 천연자원의 保全과 合理的利用을 조화롭게 도모한다는 측면과 무질서한 土地利用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土地利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郡單位 農村地域의 下位定住體系는 지금까지의 硏究結果를 종합해 보면「中心都市 - 中心都邑 - 中心聚落 - 마을」로 이어지는 4段階의 階層體系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郡單位 農村定住生活圈은 中心都市를 中心으로 한 定住生活圈單位와 그 下位의 中心都邑을 中心으로 하는 定住區單位의 小生活圈 및 中心聚落을 중심으로 한 居住區單位의 基礎生活圈으로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수직적인 重層構造를 형성하면서 農村地域의 下位定住體系를 구성하고 있다(李正煥 外 1989, 32~46). 여기서 面單位는 대체로 소재지-중심마을-자연부락으로 연결되는 3段階의 階層體系와 소재지(중심마을)-자연

부락으로 이어지는 2段階의 階層體系를 나타내는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前者는 所在地의 中心機能이 강해 中心都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後者는 所在地의 中心機能이 약해 중심마을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때 먼저 面單位 定住圈開發에서 所在地開發은 해당 面所在地가 갖는 中心機能에 따라 그것에 맞는 開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所在地를 제외한 面單位의 下位地域을 開發對象으로 할 때 그 開發圈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것은 우선 等質地域과 結節地域으로 地域이 나누어진다고 볼 때 開發圈域은 어느 것을 중시하여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聚落과 耕地를 대상으로 하는 居住空間과 生産空間의 整備는 等質地域을 開發圈域으로 삼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階層體系를 갖는 施設이나 機能을 대상으로 하는 開發圈域은 結節地域을 開發圈域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等質地域을 開發圈域으로 삼는 居住空間과 生産空間의 空間的 範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問題와 結節地域을 開發圈域으로 하는 機能空間의 整備에서 階層構造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開發圈域의 設定과 관계된다. 여기서 等質地域의 空間的 範域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自然部落單位와 行政里, 法定里 등의 마을 單位가 대상이 될 수 있고 結節地域의 階層構造는 2段階와 3段階를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等質地域의 空間範域으로 自然部落單位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戶 미만의 小規模 村落이 대부분이고 分散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聚落의 規模經濟나 投資의 効率 및 農業經營 規模擴大 등 모든 條件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行政里는 同一地區內에 몇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몇개의 自然部落이 하나의 行政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같은 營農圈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農業經營規模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 따라서 2~3個의 行政里가 모여 하나의 法定里를 구성하

는 경우는 法定里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에 부적합한 地域이 있다면 地域與件에 맞추어 몇개의 行政里가 연합된 확대된 마을單位를 開發圈域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1)]

다음으로 結節地域의 階層構造는 현재 2段階와 3段階의 둘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交通與件이 호전되고 住民의 機動性이 향상된다면 距離보다는 接近性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階層構造는 單純構造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段階로 축소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結論的으로 開發圈域은 居住空間과 生産空間의 整備에서는 몇개의 行政里를 연합된 확대된 마을을 開發圈域으로 設定하고 階層構造를 갖는 機能空間은 所在地와 마을單位의 2段階 定住體系를 상정하여 住民活動의 接近性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農村空間이 整備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所在地開發은 그것이 갖는 定住生活圈上의 位相에 맞추어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推進體系 改善

面單位 定住圈開發은 上向的이며 內發的 開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面單位 定住圈開發은 農業進興地域의 指定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聚落의 移轉이나 集團化, 그리고 農地의 交換·分合 등이 開發의 推進過程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開發의 受惠者인 동시에 開發의 主體가 住民이기도 하지만 開發事業이 實施되면 住民의 財産權 행사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해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計劃樹立過程에서 부터 開發事業이 실시되는 全過程을 통해 住民의 參與가 보장되어야 한다. 地域住民과 그들의 里洞代表 그리고 住民이 參與하는

---

1) 주덕면의 경우 35개 행정리가 11개의 법정리로 마을수가 축소되어 100~200戶 정도의 마을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취락의 규모경제와 하부구조투자의 효율성 및 농업경영규모확대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農漁民團體 등이 스스로 參與하여 民主的 意思決定過程을 통해 開發意思가 개진되고 需要物量이 제시되도록 하여 開發事業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은 물로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開發過程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秩序속에서 집행되어 가도록 함으로써 地域發展에 대한 住民의 自信感과 自力成長의 신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이루어냈다는 自矜心과 地域에 대한 愛着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통해 面(郡) — 道 — 中央으로 이어지는 上向的 開發過程을 뿌리내리게 하고 地域發展의 에너지가 地域內部에서 스스로 창출될 수 있게 하는 內發的 開發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面單位 定住圈開發은 무엇보다도 住民不便을 해소하고 그들의 生活에 편리한 定住空間을 조성해 나가는 데 目的을 두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開發事業의 計劃段階에서 부터 직접적인 利害當事者이면서 受惠者인 마을單位의 住民意思가 반영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開發事業에 대한 需要調査와 優先順位決定을 마을單位 住民總會의 議決을 거쳐 面과 마을開發委員會의 審議過程을 통해 合意点을 도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事業計劃이 마련되어야 하며 開發事業의 推進過程에서도 住民이 主導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재 內務部와 農林水產部로 양분된 채 추진되고 있는 開發事業의 推進體系가 一元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그것이 바로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開發事業의 範圍와 推進體系를 府處別 協力體制를 통해 합리적으로 定立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定住圈 開發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地方行政組職體系도 실정에 맞추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開發事業의 實際推進은 事業의 種類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더라도 그것을 종합하여 計劃樹立을 하고 開發事業을 통괄하여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지정(例를 들어 企劃室)하여 專門人力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 豫算支援制度 改善

面單位 定住圈開發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農漁村에 획기적인 投資擴大를 하겠다는 政府의 강력한 政策意志와 그것에 대한 國民的 共感帶의 형성이 前提된 가운데 住民의 자발적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定住圈開發에 대한 投資規模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國費支援額을 최소한 農林水産部가 제시하고 있는 面當 標準事業費인 112억원 規模로 擴大해야 한다. 그리고 事業期間도 單年度에서 5年 程度로 늘려 잡아야 한다. 또한 地方費 負擔能力을 감안하여 현재 國庫補助率 50%에서 70%로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地方費負擔能力의 限界로 인해 開發事業의 推進이 불가능해지는 地域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國費補助率을 地域에 따라 差等支援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게 補助金 管理法을 운용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地方財政與件이 모두 다르고 地域發展程度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定住圈開發에서 住宅과 用水開發事業은 融資對象事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住宅改良을 融資로 하겠다는 住民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상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農漁村마을의 集團化를 통해 聚落의 規模化를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融資條件으로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融資期間이 보다 長期的이어야 하고 利子率도 지금보다 낮추어 農漁村住民이 실질적인 受惠者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定住圈開發事業에 대한 財政支援의 現實的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 立地與件이 보다 나은 都市近郊나 工團周邊地域은 民資를 유치하여 시범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地域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빠른 기간내에 전국의 農漁村을 근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第 7 章

要約 및 結論

本 硏究에서는 面單位를 硏究對象地域으로 선정하여 그 實態分析과 그것에 기초한 生活環境整備와 面單位 定住圈開發方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主要硏究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事例地域으로 선정한 忠淸北道 中原郡 周德面의 地域構造的 特性을 살펴보면 定住體系가 面所在地(中心都邑), 中心聚落, 背後마을로 이어지는 3段階의 階層構造를 보이고 있으며 行政里 單位의 마을규모는 60戶未滿이 65%를 차지하고 인구 250人 未滿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機能的 側面에서 본 마을유형은 비농업, 답작, 축산, 과수 및 과수+축산, 채소+특용, 오지전작 마을 등 7個 類型으로 나타나 다양한 特性을 보이고 있다.

住宅實態를 중심으로 본 住居空間은 全體 家口의 52%가 30년 이상된 老朽住宅이며 주택의 便益施設水準이 매우 낮다. 또한 空家發生과 빈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質的 水準은 면소재지와 중심마을, 배후마을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質的改善을 위해서는 마

을의 立地와 家口主의 特性을 고려하여 差別政策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획기적인 投資方案이 동시에 모색되어지지 않고서는 당면한 問題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耕地를 중심으로 본 生産空間은 農家當 平均必地數가 6.4에 이를 만큼 세분화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경지의 正型化와 規模化를 꾀하는 동시에 분산된 필지의 集中化를 통한 農場化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농지의 효율적인 交換·分合의 추진과 地形的 條件에 따른 차별적인 耕地整理 방식이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生活空間은 면소재지와 확대된 마을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는 開發圈域을 開發對象地域으로 설정하여 道路, 上·下水道, 쓰레기·분뇨처리, 下水處理 및 公共福祉施設을 농촌적 下位定住體系에 맞추어 종합정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受惠者가 많은 중심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投資財源에 따라 餘地地域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되 향후 與件變化를 전망하여 農漁村 空間再編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面單位 農漁村空間의 實態와 앞으로의 改善方向을 감안할 때 사례지역의 開發圈域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營農規模와 下部構造에 대한 投資財源을 고려하여 확대된 마을로 볼 수 있는 11개 法定里 單位를 基本單位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모든 마을단위가 100가구, 40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질 수 있어 規模經濟와 空間再編에 유리하고 새로운 政策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空間範域이면서 地域共同體 意識을 결속시켜 나가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앞으로의 與件變化와 接近度 向上을 고려하여 面單位 定住圈開發에 있어 定住體系는 面所在地와 확대된 마을(사례지역의 경우는 법정리 단위)의 2段階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分散多岐化 되어

있는 定住圈開發 關聯事業의 推進體系를 地方化時代에 대비하여 정비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豫算支援制度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定住環境造成을 위한 定住圈開發은 다양한 地域與件과 住民의 共通欲求에 부합되도록 整備되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定住體系와 住民의 生活圈 그리고 주변의 自然環境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地域과 住民이 함께 번영과 발전을 일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重層的인 地域의 空間體系와 그것을 구성하는 點·線·面的인 요소, 고정적인 것과 流動的인 것, 그리고 公的 施設과 私的 施設 등 諸要素가 結合性, 整合性, 連繫性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定住圈開發은 地域的 接近의 上向的 開發, 住民參與와 그들이 중심이 되는 內發的 開發의 接近方法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定住體系에 따라 中心地와 背後地域이 자연스럽게 統合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産業化社會에서 農工이 병존하는 건전한 地域經濟圈을 형성하고 활력있는 農漁村 地域社會를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도 최소한 全人口의 25%이상이 안심하고 農漁村에 살 수 있도록 전원속의 쾌적한 定住空間을 꾸며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權源庸 外, 1986『中部圈 定住生活圈體系研究』, 國土研 86－23,國土開發研究院

_____, 1986『西南圈 定住生活圈體系研究』, 國土研 86－10,國土開發研究院

_____, 1986『東南圈 定住生活圈體系研究』, 國土研 86－25,國土開發研究院

_____, 1987『首都圈 定住生活圈體系研究』, 國土研 86－24,國土開發研究院

_____, 1986『太白圈 定住生活圈體系研究』, 國土研 86－21,國土開發研究院

慶尙北道, 1988,『쓰레기 處理 綜合對策』

_____, 1990,『農漁村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推進方向』

金庚亮 外, 1987,『農村쓰레기 收去處理對策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第18卷, 韓國地方行政研究院.

金京煥, 具本忠, 1988, "農漁村道路 開發類型 및 優先順位 決定",『農村生活環境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제6次 農漁村地域綜合開發 워크숍 報告書－』, 研究團/教育 12, pp. 136～163.

金光益, 1989, "忠南地域의 面中心地 人口와 機能分析－錦山郡을 대상으로－",『國土研究』, 第Ⅶ郡, 國土開發研究院, 1989. 12., pp. 119～137

金安濟, 1979,『環境과 國土－理論과 政策』, 博英社.

김영식 외, 1980,『農業勞動力 減少와 營農機械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金允涉, 1980, 農村中心地의 體系的 開發方向에 관한 硏究 "－全北 高尙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 全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 仁, 1987, 『農村地域 面級都市 機能活性化를 위한 硏究－地方時代를 위한 村落定住 空間－』, 韓國學術振興財團.

農水產部, 1983, 『農地開發事業計劃 設計基準;耕地整理編』.

農業振興公社, 1986, 『所得源道路의 開發優先順位 選定을 위한 計算方法』.

農村整備編輯委員會, 1978, 『農村整備』, 地球社, 東京.

農村統計協會, 1985, 『地域計劃－그 理論과 實驗』.

蘇本信義, 1986, "農村計劃에 있어서 施設調査에 대하여", 『農村計劃技術資料集』, 農村振興公社, pp. 11～18.

朴貞恩 外, 1988, 『農村住居環境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硏究報告 200－3, 韓國女性開發院.

朴炳柱 外, 1981, 『地方定住生活圈의 設定 및 開發에 관한 硏究』, 內務部.

申順浩, 1989, "島嶼地域 生活環境의 實狀과 改善方案", 『島嶼地域의 開發現況과 未來像－韓國 島嶼開發심포지움 報告書－』, 韓國 島嶼硏究 創刊號, 韓國島嶼硏究會, pp. 107～129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989, 『農村小規模 聚落地域 汚水處理 시스템 開發事業』, 環境廳.

柳佑益 外, 1988, 『山村地域 定住體系의 整備方案 硏究』, 農業振興公社.

全羅南道, 1990, 『農漁村住居環境改善事業推進方向』

鄭起煥 外, 1987, 1988, 『農村마을의 空間構造』 韓國農村經濟硏究院

李正煥, 金正淵, 李政紀, 1987, 『農村定住生活圈의 特性比較 硏究』, 硏究報告 145, 韓國農村經濟硏究院.

李正煥, 李政紀, 1986, "農村地域의 生活環境(Ⅰ)－쓰레기 收去 計劃" 『農村地域綜合開發論Ⅱ』, 硏究團/敎育, 韓國農村經濟硏究院, pp. 1～17.

李正煥 外, 1989,『定住體系에 따른 農村 中心地 機能 分析』, 研究報告 18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崔洋夫, 金正淵, 李鎭煥, 1987,『農村道路體系의 設定研究』, 研究報告 14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崔洋夫 外, 1984,『마을 綜合開發의 計劃的 接近』, 研究報告 8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崔鎭昊 外, 1985,『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地域偏差 分析』, 國土開發研究院.

하성규, 윤원근, 1989,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방향"『農村經濟』제12권 제4호.

현공남 외, 1985,『밭利用과 生產基盤 投資의 方向』, 研究報告 9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a,『橫城地域 綜合開發計劃』

_____, 1988b,『靈光地域 綜合開發計劃』

_____, 1989a,『南海地域 綜合開發計劃』

_____, 1989b,『求禮地域 綜合開發計劃』

Gilder, I. M., 1979, Rural Planning Policies : An Economic Appraisal, Progress In Planning, Vol. 11 Part 3.

Lonsdale, R. E. & Gyorgy Enyedi(eds.), 1984, Rural Public Services－International Comparisons, Westview Press : Boulder and London.

Rondinelli, D. A., 1985, Applie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The Spatial Dimensions of Development Policy－, Westview press : Boulder and London.

Weitz, R., 1979,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The Rehovot : Settlement Study Center.

吉阪隆正 外, 1980,『圈域別計劃論 : 新し地域計劃の 視點』東京 : 農村統計協會.

연구보고 213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면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찍은날 1990. 12 펴낸날 1990.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찍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